

2022 지방선거 여성대표성 강화 토론회

2021.12.07(화) 14:00~16:00
@ZOOM/Youtube





2022 지방선거 여성대표성 강화 토론회



2021.12.07(화) 오후 2~4시
줌/유튜브

좌장

· 김은경_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운동 책임위원

인사말

·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 신명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주제 발표

· 박진경_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
2022 지방선거 대비 역대 선거결과를 통해 본
여성대표성 확대방안

지정 토론

· 최선_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장
· 조양민_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반혜영_창원YWCA 사무총장

토론회 참여 방법

1. 줌(ZOOM)을 실행한다.
2. 아이디: 867 4406 3082
비밀번호: YWCA 를 입력한다.

*접속 링크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https://url.kr/8xq1ln>



*토론회가 끝난 후,
한국YWCA연합회 유튜브 채널에서
토론회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

시 간	내 용		페이지
14:00~14:04	여는 인사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운동 책임위원	
14:04~14:10	인사말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신 명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14:10~14:15	좌장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운동 책임위원	
14:15~14:45	주제 발표	박진경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 교수	1~13
14:45~14:50	질의응답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운동 책임위원	
14:50~15:05	지정토론①	최 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여성위원장	14~15
15:05~15:20	지정토론②	조양민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16~19
15:20~15:35	지정토론③	반혜영 창원YWCA 사무총장	20~24
15:15~15:50	자유토론		
15:50~16:00	wrap-up		

주제 발표

“2022 지방선거 대비
역대 선거결과를 통해 본
여성대표성 확대방안”

박진경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

2022지방선거대비 역대 선거결과를 통해 본 여성대표성 확대방안

2021. 12

박진경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

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여성의 무공천제의 실태 및 여성정치참여 확대의 효과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
- ✓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 제안
- ✓ 특히 여성의무공천제 도입이후 3차례의 지방선거결과를 통해 정당 의무공천의 선거구별 이행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 데이터 분석 통해, 향후 공천제도 개선 및 공천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

2

I. 서론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지방선거 여성 참여 현황 및 효과성 검증>

지난 7차례 지방선거 결과의 심층 분석과 여성 30% 의회의 여성정치 참여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 30% 임계치와 여성정치참여의 확대의 정당성 찾기 시도


* 의회별 여성비율에 따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분석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운영 실태분석>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7회까지 지방선거 후보자 명단을 통해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의 운영 실태를 매회별로 분석하고 매회 선거별로 비교분석

<지방의회 여성의원 조사> 여성 지방의원의 설문조사와 심층그룹인터뷰 병행

<국민인식조사> 1000명 ARS조사, 여성기초단체장 확대 필요성 및 적정비율 등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도출 (입법안)

II. 지방선거 여성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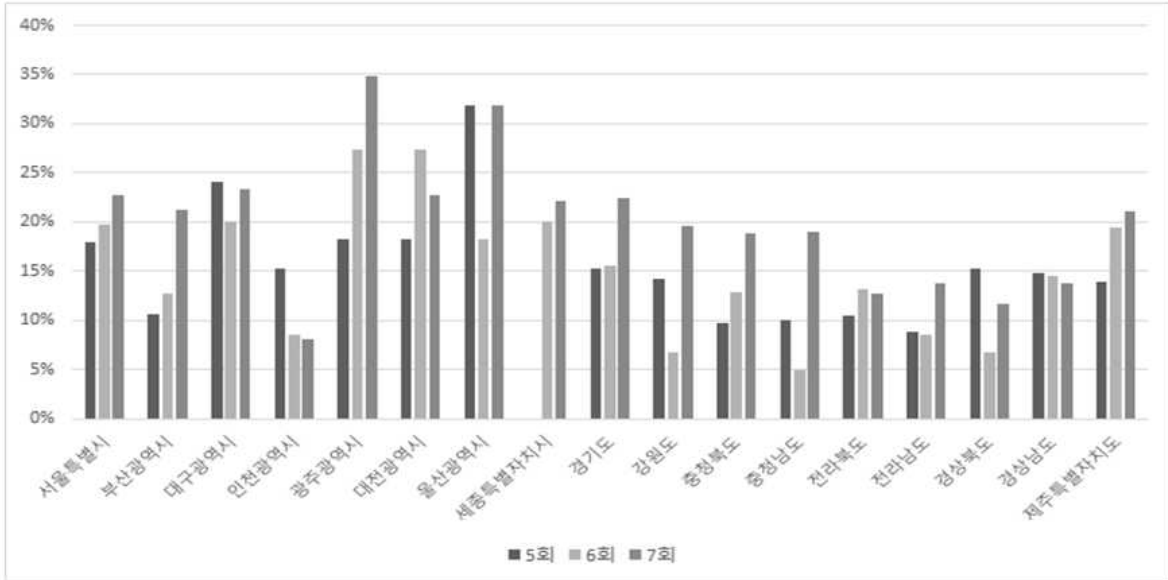
1.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당선자 현황

선거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광역 의회	전체	970	663	682	733	761	789	824
	여성	54	41	63	79	113	113	160
	여성%	5.6%	6.2%	9.2%	10.8%	14.8%	14.3%	19.4%
기초 의회	전체	4,541	3,489	3,485	2,888	2,888	2,898	2,926
	여성	72	56	77	437	626	732	900
	여성%	1.6%	1.6%	2.2%	15.1%	21.7%	25.3%	30.8%
기초 자치 단체 장	전체	230	230	232	230	228	226	226
	여성	1	0	2	3	6	9	8
	여성%	0.4%	0.0%	0.9%	1.3%	2.6%	4.0%	3.5%

II. 지방선거 여성 참여 현황

2. 지방의회 여성당선자 현황

▶ 1) 시·도 광역의회 * 인천 지역당선 0명 (8%), 광주, 울산만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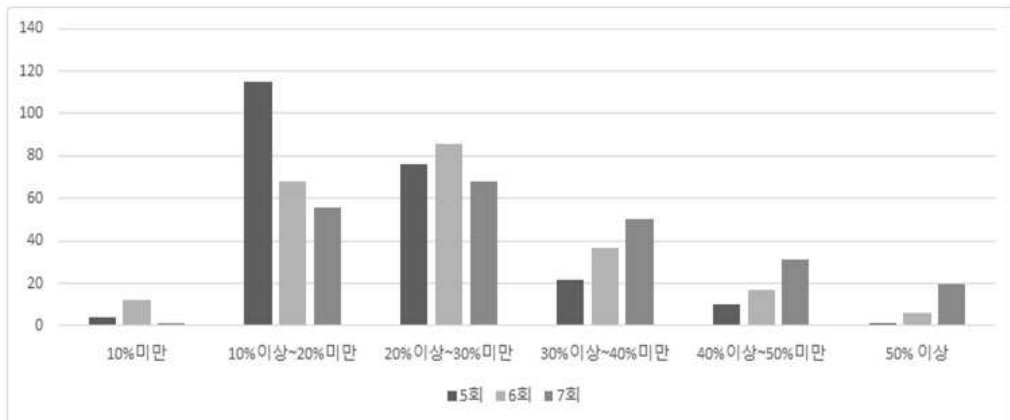
5

II. 지방선거 여성 참여 현황

2. 지방의회 여성당선자 현황

▶ 2) 구·시·군 기초의회

▶ * 제7회 30%이상의회의수가 101개(44.6%) 50% 의회 20개로 증가



6

II. 지방선거 여성 참여 현황

2. 지방의회 여성당선자 현황

▶ 2) 구·시·군 기초의회

▶ *비례대표에만 여성의원이 있는 기초의회 5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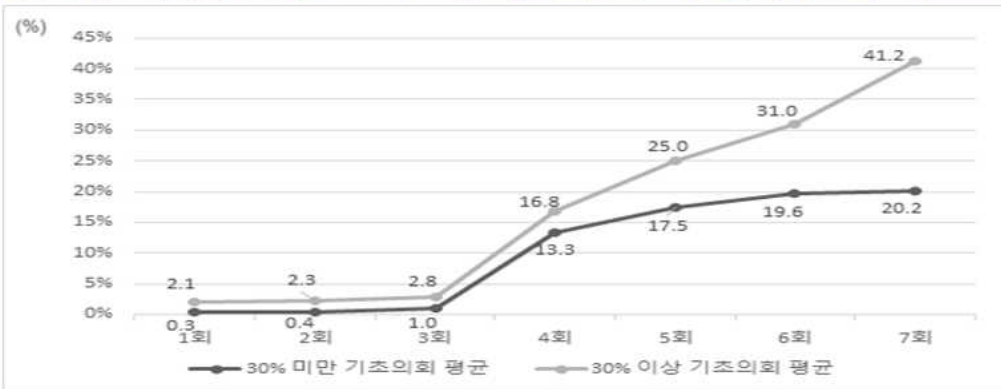
▶ ** 3회 모두 지역당선자 0명 34개 의회

	전체(비율)	구의회	시의회	군의회
5회	103개(45.2%)	12	23	68
6회	72개 (31.9%)	5	12	55
7회	51개(22.6%)	1	7	43

7

II. 지방선거 여성 참여 현황

3. 30% 이상 기초의회의 발전가능성 탐색



구분	당선자 중 여성 비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통계분석(T-값) 결과							
30% 이상 기초의회 평균	2.1%	2.3%	2.8%	16.8%	25.0%	31.0%	41.2%
30% 미만 기초의회 평균	0.3%	0.4%	1.0%	13.3%	17.5%	19.6%	20.2%
T-value	3.305**	3.525**	3.221**	3.686***	6.521***	8.631***	21.301***

p<0.01,*p<0.001

8

Ⅲ.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운영 현황

1. 지방의회 지역구 의무공천제 제도 개요

<공직선거법>

- ▶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 제52조(등록무효)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 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운영 현황

2. 제5회~7회 지방선거 여성공천 및 당선 현황

- ▶ 여성의무공천제가 실시한 이후 세차례의 선거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공천 및 당선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개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분석

*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단위 공천이 이루어지는 정당이여야 하며, 기호에 따른 당선 결과를 함께 보기 위해서는 당선자로 적절한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

Ⅲ.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운영 현황

3. 주요정당의 여성의무공천제 현황 실태분석

자유한국당 여성후보등록자수별 지역구 현황

	5회	6회	7회
0명	47 (19.2%)	38 (15.4%)	56 (22.1%)
1	154(62.9%)	116(47.2%)	99 (39.1%)
2	39(15.9%)	68(27.7%)	59 (23.3%)
3	4(1.6%)	19(7.7%)	25 (9.9%)
4	1(0.4%)	4(1.6%)	8 (3.2%)
5명이상	0(0%)	1(0.4%)	6 (2.4%)
합계	245(100%)	246(100%)	253(100%)

Ⅲ.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운영 현황

3. 주요정당의 여성의무공천제 현황 실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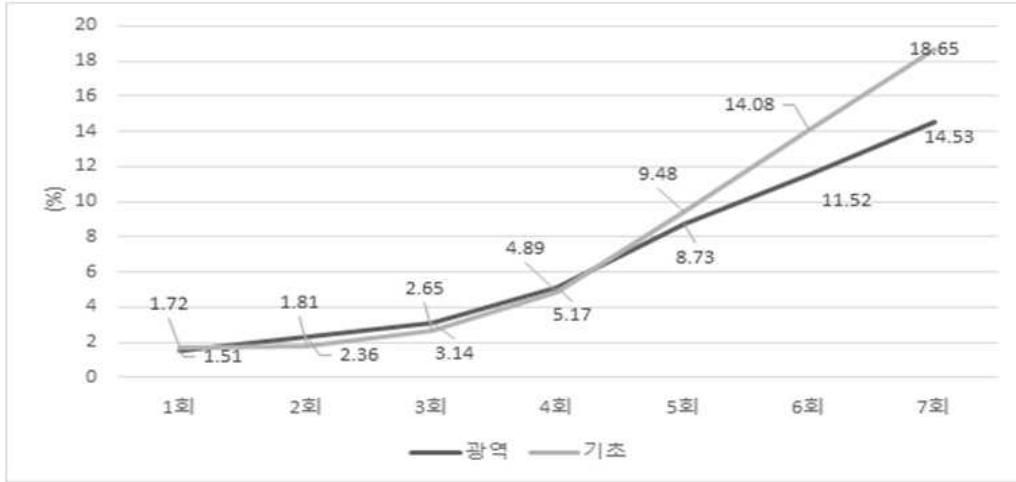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여성후보등록자수별 지역구 현황

	5회	6회	7회
0명	96(39.2%)	58(23.6%)	13 (5.1%)
1	111(45.3%)	109(44.3%)	84 (33.2%)
2	32(13.1%)	57(23.2%)	87 (34.4%)
3	4(1.6%)	18(7.3%)	43 (17.0%)
4	2(0.8%)	4(1.6%)	18 (7.1%)
5명이상	0(0%)	0(0%)	8 (3.2%)
합계	245(100%)	246(100%)	253(100%)

Ⅲ.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운영 현황

3. 주요정당의 여성의무공천제 현황 실태분석

광역·기초의회별 여성후보자비율



Ⅲ.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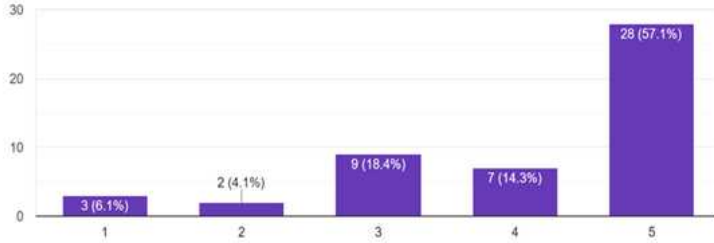
4. 기초의회 주요정당 남녀 기호 배정 현황

기호	1	1-가	1-나	1-다	1-라	합
전체	377	597	597	123	11	1,705
남	287	407	492	112	10	1,308
여	90	190	105	11	1	397
남성비율	76.1%	68.2%	82.4%	91.1%	90.9%	76.7%
여성비율	23.9%	31.8%	17.6%	8.9%	9.1%	23.3%
기호	2	2-가	2-나	2-다	2-라	합
전체	362	506	503	115	6	1,492
남	281	411	421	94	6	1,213
여	81	95	82	21	0	279
남성비율	77.6%	81.2%	83.7%	81.7%	100%	81.3%
여성비율	22.4%	18.8%	16.3%	18.3%	0%	18.7%

IV. 지방의회 여성의원 조사

1. 여성광역의원 설문조사 결과 (49명)

2. 여성의무공천제가 광역의회 여성 확대에 기여하였다
응답 4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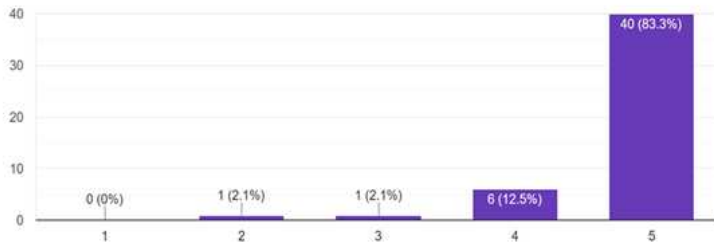


긍정적 인식 전체 93.9%

- 광역의회 71.4%

- 기초의회 95.8%

3. 여성의무공천제가 기초의회 여성 확대에 기여하였다
응답 48개



공천권자 권한 과도 42.8%

광역/기초 각각 1인 필요 91.7%

여성의원 증가와 당선가능성 87.8%

IV. 지방의회 여성의원 조사

2. 여성기초의원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 30%이상 101개 의회 중 정당, 지역, 여성의장, 여성단체장 등 고려

	여성비율 순위	시도단위	의회 (전체/여성)	의원	경력	표시
A	5	경기도	의왕시 7석/4석	윤미근	의장/재선	의원A
	7	서울특별시	광진구 14석/8석	박삼례	의장/4선	의원B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18석/10	홍순옥	의장/재선	의원C
	22	서울특별시	서초구 15석/7	안종숙	의장/3선	의원D
	77	경기도	김포시 12/4	신명순	의장/3선	의원E
B	1	대전광역시	동구 11석/7	이나영	의장/4선	의원F
	92	부산광역시	동래구 13/4	주순희	의장/재선	의원G
	97	광주광역시	북구 20/6	고점례	의장/재선	의원H
C	38	대구광역시	중구 7/3	권경숙	의장/초선	의원I

IV. 지방의회 여성의원 조사

2. 여성기초의원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가. 여성 30% 이상 의회의 변화

- 성평등한 의회 분위기, 자유로운 소통과 내용성있는 토론 등
- 의정활동 더 적극적, 높은 자신감과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
- 여성의원의 위상 및 역할 개선, 의장 기회 많아지고 초선도 활동 역량중심으로 의장 맡음

나. 당선 결과 및 유권자인식에 미치는 영향

- 당선가능성도 높아졌고, 유권자 기대도 높아짐
- 생활밀착형 사업이나 작은 약속도 꼼꼼이 챙기는 모습이 긍정 평가
- 선거과정에서 여성후보 경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다. 여성 공천제도에 대한 평가

- 의무공천제 긍정평가에도 불구하고 시도보다는 시군구의회 쏠림
- 공천권자(국회의원 혹은 지역위원장 등)에게 과도한 권한 인정
- 정당내 여성후보 발굴 및 지원, 교육이나 훈련 등 확대 요구

17

V. 국민인식조사

1. 조사개요

조사 대상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
조사 기간	2021년 10월 13일 ~ 14일 (2일간)
조사 방법	자동전화조사(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조사 기관	㈜우리리서치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참조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단체장 선거 성별에 따른 투표 후보 및 투표 이유 ▪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가 당선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여성 기초단체장 수 인식 및 부족한 이유 ▪ 여성 기초단체장 적정 비율 ▪ 여성 기초단체장 비율 상향 방법 ▪ 지방선거 공천 성별 동등비율 법제화 찬반 인식 및 이유 ▪ 정당의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30% 규정 찬반 인식

18

V. 국민인식조사

2. 조사결과



성별 무관 39.7%/

여성 후보 30.6%(+1.6%p) > 남성 후보 29.0%

동일 성별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여성이 더욱 크게 나타남

사회의 약자 보호와 차별 해소에 앞장 26.0%

>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치 21.0% > 성실한 직무수행 14.2%

> 정치·경제·사회 개혁 의지 높음 12.6%

> 적극적 지역민원 해결 10.7% > 여성의 정치적 능력 뛰어난 8.9%

남성의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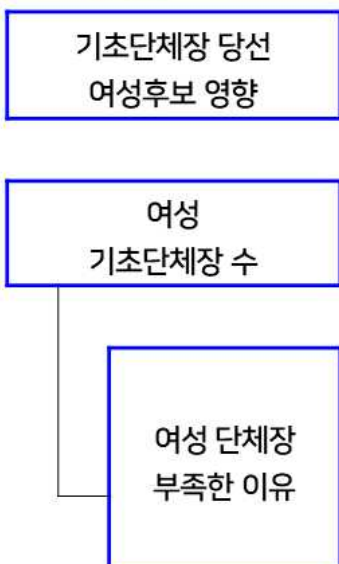
> 적극적 지역 민원 해결 20.4% > 정치·경제·사회 개혁 의지 높음 18.2%

> 성실한 직무수행 8.3% > 약자보호/차별해소 앞장 7.9%

>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치 6.1%

V. 국민인식조사

2. 조사결과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46.6%/

불리하게 작용할 것 29.5%(+14.5%) > 유리하게 작용할 것 15.0%

부족하다 69.1%(+63.8%p) > 많다 5.3% / 적당하다 12.7%

남성 중심적 정치문화 때문에 54.2%

> 여성 정치지망생이 적어서 14.6% > 정당 공천을 받기 어려움 13.4%

> 조직력, 자금 부족 등 선거를 치르기 어려움 8.4%

> 여성은 능력이 부족하므로 2.9%

V. 국민인식조사

2. 조사결과

여성 기초단체장
적정 비율

20~30% 정도 22.7% > 40~50% 이상 18.1%
> 10~20% 정도 18.0% > 30~40% 정도 13.8%
> 10% 미만 12.4%

여성 기초단체장
비율 상향 방법

여성의 경쟁력 강화 33.3%
> 유권자의 인식 변화 24.6% > 정당내부 공천제도 개선 17.0% >
공직선거법 등 법률개정 8.4%

성별 동등비율
공천 법제화 찬반

찬성 53.8%(+16.8%p) > 반대 37.0%

** 정당 30% 의무 규정에 대한 찬성 56.4%로 높게 나타나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
의 우선적 도입이 일반 국민인식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

VI.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1.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

- ▶ 비례대표가 1석에 불과한 10석이하인 의회의 경우 해당의회의 비례의석은 2석이 되도록 조정
 - * 비례에만 여성의원이 있는 51개 의회 중 43개가 전체의석수 10석 이하로 비례대표 의석 한 석에 불과
- ▶ 이 조치는 2명의 여성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함임으로 각 정당은 비례 홀수순번 외에도 여성으로 공천 노력

VI.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2. 지역구 여성의무공천할당제 확대

1안> 30% 의무공천제 +국고삭감

▶ 공직선거법 제47조4항을 권고가 아닌 의무공천으로 개정

*여성 무등록 선거구 자유한국당 56개(22%), 더불어민주당 13개(5%)

▶ 위반시 국고보조금 감액 방식

* 20%에서 50%까지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 삭감 설계

** 선거보조금이나 매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대상

23

VI.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2. 지역구 여성의무공천할당제 확대

2안> 광역과 기초의회 각 1인 이상 의무공천

▶ 공직선거법 제47조5항, 현재 시·도 광역의회나 구·시·군 기초의회 중에 한 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 선거단위별로 각각 1명 이상 공천의무화

* 여성무등록 선거구도 적지 않으며, 시도 여성등록이 저조함

▶ 위반시 등록무효 방식 개선

- 여성후보가 자발적으로 등록 기피하는 경우 등록무효 예외로 보는 조항을 삭제하고 등록마감후에 5일의 유예기간으로 두어 여성발굴 등 여성후보등록 기회를 줌

24

VI.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3.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전략공천 의무

- ▶ 10% 의무공천제
 - 3.5%에 불과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 후보자중 10%로 단계적 비율 규정(공직선거법제47조6항 신설)
- ▶ 위반시 제재는 등록 거부 병행
- ▶ 당선가능성 높은 지역 우선공천
 - 정당이 전임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자치구·시·군에 추천 단서조항 포함

VI.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4. 기타

- 1) 정당별 여성후보자 기호 우선 게재 조항 마련
 - 당선가능성 높은 기호로 여성을 공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병행, 중대선거구제하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고 의무공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충적 제도 마련
- 2) 정당 경선시 여성후보 가산점제의 법제화
 - 현재는 대부분의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가산점의 비율을 10%에서 20%내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이를 공직선거법 명시
- 3) 목적에 맞는 여성정치발전비 사용
 - 정치자금법 제28조2항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보조금은 정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시 근로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여성정책공모 및 정책연구용역, 성별분리당직자 통계개발 등 정책개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여성후보자 선거 지원에 사용하도록 명시
- 4) 정당의 책무 조항 신설
 - 성평등 사회와 정치발전을 위해 성인지적 정당문화 조성 및 운영과 의회내의 여성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 조치 구체화, 여성정치인의 적극적 발굴과 교육, 정당 지원 노력 명시

지정 토론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의 역할”

최 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장

여성의 정치적 참여는 사회적으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회 구성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이 정치적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대표된다는 것은 기회균등과 평등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사회 구성원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회에서의 성 평등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14.3%, 기초의회는 25.3%, 국회는 15.7%로, 사회구성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 수에 비해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는 확연히 적은 것을 보인다.

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의 증가와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의회에 여성의원 비율 증가는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복지 및 여성 관련 분야의 의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성의원은 남성의원과 다른 관심 영역, 주민과의 친밀성, 여성공약 제시, 양성 평등의식 등에서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즉 여성의원의 양적 대표성 증대는 실질적으로 여성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표성을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여성 리더십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과거에 비해 여성 정치인의 수가 늘어났고, 여성들의 정치 참여도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여성정치인의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다. 선거 때 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강조하며 여성할당제, 비례 후보 교호순번제 등 여러 제도를 만들지만, 적당한 여성이 없다, 공천하고 싶지만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정치참여 비율은 제자리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리더십은 기회 속에서 성장한다. 정치 리더십 또한 마찬가지다. 여성에게 성장을 기회를 마련해야 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발돋움판을 만들어줄 때 남성중심 권력구조, 남성 독점적 정치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의 실질적인 정치적 대표성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지방의회에 여성의 참여가 더욱 증가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여성이 선거에 많이 당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당의 입후보자로 공천된 여성후보자도 많아야 한다.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자연스레 여성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당의 입후보자로 공천된 여성후보자가 많도록 실질적인 정치참여자의 수 증가와 직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당들과 법률로 마련된 여성정치인 지원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정당 내에서 자체적인 여성정치

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자구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각종 여성공천 할당 노력 개선과 선거법 및 헌법 등에서도 정책결정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정치적 대의기구인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성이 주로 진입하여 있는 정치권력의 구조에 여성들의 진입이 아직도 어려우며,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 정치적 대표성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들이 여전히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의 토론에서는 여성정치인이 성장하고,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본 위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들을 벌여왔다. 당규를 정정하고 다양한 성평등 교육과 포럼 등을 개최하며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당 자체의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다. 좀 더 발전적이고 다양한 성평등 방향을 당 내부에서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여성에 주목하여 새로운 정치적 세력의 잠재력을 탐색하고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실현을 위한 과제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당규 등의 개선을 통해 청년 여성들의 원내 진입 장벽을 제도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할당제는 선거제도와 정당 간 경쟁, 여성의 조직화 수준 및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발전 수준과 결합도리 때 여성 대표성에 가장 좋은 성과를 만든다.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당의 역할이며, 그 역할로서 정당의 적극적인 할당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지금껏 여성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성과들은 여성 당직자 고용 안정성과 여성당원 교육등을 지원했던 ‘여성정치발전비’, 선출공직에 도전하려는 여성 당원들의 정당 내 불평등한 지위하상을 위해 정당들에게 제공했던 인센티브로서 ‘여성추천보조금’과 선출공직 후보추천 ‘여성할당제’, 각급 단위 의회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자들의 제도 내 진출 보장하는 ‘비례의석 확대’등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여성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욕구가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여성시민의 정치적 권리 보장 및 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한국 제도정치 전반의 대표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참여 방안을 당 차원에서 강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정 토론

“통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전략”

조양민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1. 문제제기

- ① 과연 2022지방선거에서 여성의무할당비율을 높일 수 있을까?
- ② 성평등 헌법개정을 언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2. 냉엄한 현실

- 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공천해야 하는 의무공천제
- ② 50%로 상향조정하려면 선거법 개정이 따라주어야 하는데 가능할 것인가?
- ③ 대선정국에서 지방선거를 위한 제도개선은 아젠다의 후순위로 밀려있는 상태임.
- ④ 도리어 현실은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분노한 청년층을 선동하여 여성혐오와 차별을 조장함.(청년정책에 여성청년정책은 포함된 것인가?)
- 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와 패키지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음

3. 10차 개헌 추진 연혁

- ① 2017년 대선정국에서 헌법개정이 핫이슈로 떠오름
- ②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 ② 10차 개헌논의를 국회에 제안했고
- ③ 국회는 2018년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한다는 목표로
- ④ 2016년 12월 29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1)(위원장 이주영)를 구성하고 1여 년의 활동을 전개했지만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해 결국 개정이 무산됨2)
- ⑤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기에 강력한 동력을 지녔던 문재인 정부도 헌법개정 정부(안)까지 제출하며 국회를 압박했지만 효과가 없었음.
- ⑥ 당시 범여성계는 헌법개정여성연대를 결성3)하고 제15조 신설(4P참조)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지만 끝내 국회(안), 정부(안)에서 배제됨.
- ⑦ 그래서 다음 개헌 논의에는 반드시 성평등 헌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Action Plan이 있어야 함.

1) 제안이유 : 대한민국 헌법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아 1948년 제정되었으며, 1987년 제9차 개정된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고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타파하여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음. 그럼에도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여 기존 헌법 체제 하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 이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개정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가결. (주문 가. 제10차 헌법 개정 필요 논의를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36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16. 12. 29.)

2) 2017년 12월 22일 개헌특위 연장(안)이 무산되면서 활동 종료됨

3) 2017년 여성계는 여성과 성평등 관점의 개헌을 위해 헌법개정여성연대를 결성하고 8개월간 14회의 워크숍과 3회의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어 헌법 전문을 포함해 10장 130조를 세밀하게 검토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성평등과 헌법’ 토론회에서 주제발제자로 나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 ‘여/성평등과 헌법: 쟁점과 대안’ 발표문을 통해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3. 통시적 관점의 New Normal 전략

- ① 향후 성평등 헌법개정을 위한 중·장기 플랜을 마련해야 함.
- ②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을 뛰어넘는 여성계의 연대와 협력,,,그리고 계획!
- ③ 정당, 여성시민사회, 여성직능단체 등을 아울러 여성의무공천비율의 50% 상향, 동수민주주의의 실현을 피력해 우리의 활동을 기록하고 기억하도록 행동해야 함.
- ④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총선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성평등 헌법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고취하고 동수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함
- ⑤ 2026년 대선을 목표로 성평등 헌법개정을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함.

[참고자료]



20171108 성명서

『헌법15조 신설』로 미래지향적인 헌법개정되어야

- 주 최 : 한국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전국여성의정회
- 문 의 : 한여협 공동대표 이선주/의정회 공동대표 조양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이번 헌법개정은 3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민의 뜻과 여망을 담아내는 국민의 의한 헌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헌법개정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상을 잘 담아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개헌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국민의 절반인 여성에게 실질적인 평등의 보장을 명시하는 개헌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세계적으로 독일, 프랑스, 대만, 벨기에 등 양성평등한 헌법을 규정하고 나아가 국가의 차별시정 조치(적극적 조치)를 강제하는 헌법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의무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여성지표에 관한 한 세계적인 하위국가입니다.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 세계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17)’에서 한국은 조사대상국 144개국 중 118위에 머물렀습니다. 2015년 115위, 2016년 116위에서도 계속 퇴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참여와 기회, 정치적 권한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국격에 맞지 않는 수치스러운 한국적 예외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대안은 헌법 15조의 신설입니다.

이에 헌법 15조를 신설해 국가의 실질적 평등의 보장과 적극적 조치를 명시하고 양성평등의 보장영역을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으로 확대하며 특히 공직진출에 동등한 기회보장을 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갈망하고 주권자, 유권자, 납세자로서 여성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함께 호소합니다.

<p>第32條 ④ <u>女子의 勤勞</u>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僱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第34條 ③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第36條 ① 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p> <p>② 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5조 ① <u>국가는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성평등은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u></p> <p>② <u>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u></p> <p>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p> <p>④ 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p>	<p><성평등 조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성평등 실질적 실현 및 현존불이익 개선 적극적 조치 의무 - 성평등의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 명시 - 공직 진출에서 남녀 동등한 참여 촉진 등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 모성보호조항을 개정하여 출산·양육 지원. - 일과 생활 양립 보장. - ③, ④항과 ⑤항은 제36조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있음 → 토론회에서도 같은 지적 있었으나 성평등 조항에 위치하는 것으로 함.
---	---	---

자료 : 김은경(2017) 『헌법개정: 성평등 이슈와 과제』



지정 토론

반혜영

창원YWCA 사무총장

2022 지방선거 여성대표성 강화 토론회

지정토론자 : 반 혜 영 (창원YWCA사무총장)

1.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현황(경남)

선거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광역 의회	전체	970	663	682	733	761	789	824
	여성	54	41	63	79	113	113	160
	여성%	5.6%	6.2%	9.2%	10.8%	14.8%	14.3%	19.4%
		(3.9%)	(4.3%)	(8.0%)	(11.3%)	(14.8%)	(14.5%)	(13.8%)
기초 의회	전체	4,541	3,489	3,485	2,888	2,888	2,898	2,926
	여성	72	56	77	437	626	732	900
	여성%	1.6%	1.6%	2.2%	15.1%	21.7%	25.3%	30.8%
		(0.4%)	(0%)	(0.6%)	(13.5%)	(17.8%)	(21.9%)	(25.8%)

- 경남도의회 여성 의원 비율은 13.8%로 낮은 순위로 5위 (5회~7회 계속하락)
- 56명 의원중 8명 여성 -> 비례대표4명 / 지역구 여성 정치인 당선만 따지면 7.7%
-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전국평균이 30.8% -> 경남은 25.8%
- 지역시민단체로서 간과할 수 없음 (성평등수준이 높은 곳에서 여성의원 비율도 높음)

2. 경남의 여성 정치현실

상임위원회	총인원	남성의원	여성의원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5	4	1	
기획행정위원회	9	8	1	
교육위원회	10	8	2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0	9	1	여성
경제환경위원회	9	8	1	
건설소방위원회	9	8	1	
문화복지위원회	9	8	2	

- 상임위원장 7명 중 여성은 1명 (구색 맞추기 식 끼워 넣기 느낌)
- 경남의 18개 시·군 중 건설소방위원회 등 16곳의 알짜 상임위원장 모두 남성 (아재정치)
여성이 건설 분야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은 고성, 하동 2곳 뿐. (알짜 상임위원장 진입 어려움)

3. 한국정치의 성평등(아직도 기울어져 있다).

- 자치단체장은 남성 전유물, 전국 광역자치단체 '17 대 0', 행정과의 협치는 쉬운 일 아님.
행정의 변화는 기관장의 변화. (경남의 경우 두 사람의 기관장에 따라 도정이 모습이 달랐다)
-> 여성 자치단체장의 필요 이유
- 여성국회의원 비율 여전히 깨질 듯 깨지지 않는 '20%의 벽'에 갇혀 있는 셈. (세계평균 24%)
(여성의 부재=여성의 경험, 인식, 사고의 부재 = 국민 절반인 여성의 입장 대변 어려움)
- 변화는 있으나 아직도 한국정치는 여성의 정치 참여에 한계가 있고,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



- 여성대통령, 여성장관, 여성당대표를 배출하며 나아지고 있다지만, 성평등 정치가 처한 현실이 과연 그런가.
- 기울기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개선해야 함.
- 동수를 위한 전진, 동등한 대표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완전하게 평등한 민주주의 실현)

4. 여성 정치인의 양적증가 필요이유

1) 성평등 정치의 가치 부합을 위해

- 성평등 정치는 모든 성의 요구와 관심에 부응하는 정치, 때문에 정치 주체의 다양성 확보 필요.
- 다양한 정책이 특정 성의 시각으로만 심사·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여성 의원의 양적 증가가 안되면 의사결정면에서 힘이 없고, 성평등한 정치 가치의 부합이 어려움
양적변화=질적변화 (2015년 양성평등기금 폐지 여성의원)

2) 다양하고 새로운 정치시도 가능성을 위해

- 여성의 정치참여는 단지 생물학적 여성의 양적 확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님. 생활정치라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성인지예산에서부터 생태정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더 세심하게 생명과 살림의 정치 가능.
- 양적 증가로 세력화되면 성평등 관련 의제에서 남성의원들의 시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30% 임계점)

5. 현안문제

- 낮은 여성의원 비율은 여성의 삶이 대변 안됨.
- 낮은 비율의 여성정치인들은 남성화 되는 경향 - 여성의제가 주요하지 않다는 생각 깔려 있음
- 의회 내 여성의원들 간의 연대가 쉽지 않다.
- 행정권의 한계 (페미니스트 대통령 약속 있었으나 절실하지 못함),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제시 보다 거대담론으로만 제시 하는 듯.
- 법과 현실의 괴리(성평등 관련 법 제정이 기반이 되지만 실제적인 노력없이 평등한 결과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음)
- 당선가능 지역에서 여성 후보를 적극 추천하지 못함.
- 비례대표 추천시 여성후보 100% 관행에서 남성 편입.
(청년비례, 노동비례 제도를 적극 도입하며 결과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상황이 됨)
- 여성후보가 많이 늘었지만 공심위에서 여성 가점, 신인 가점에 좋은 점수 얻지 못함.

6. 앞으로의 과제

<국가차원>

- 여성할당제 제도적 뒷받침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제 의무화 (그나마 용이한 비례대표제 확대도 방안)
- 여성위원이 정치인으로서 경력을 지속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 공탁금제도의 현실화 (공탁금 지원제), 선거자금 대출제 (진입장벽 완화)

<여성 정치인들 차원>

- 성인지적관점 훈련, 남성 의원들 속에서 생존을 위해 남성화 되지 않도록.
- 여성지방의원들의 네트워크 강화(정치세력화) - 여성의 정치참여가 상징적 참여가 안되도록 .
- 30%가 아닌 50:50을 목표로 연대하라
- 살림의 정치를 위해 발로 뛰는 정치(주거, 일자리, 취업, 승진, 환경, 교통, 도시건축, 문화, 예술 등 구체적인 의제를 발굴해야)

6. 앞으로의 과제

<시민사회단체>

- 젠더 관점의 의정모니터링 및 정책 모니터링 / 젠더이슈(이슈 파이팅) 확산
- 시민사회도 정당 가입이 필요 (한국Y규정 재검토 필요)
- 여성의 임파워먼트 (역량강화, 정보력강화, 지지기반 강화) -> 정당에 추천 압박, 인재 영입 요구
- 정치권의 속성 알고 대응. 정치와 공존을 고민
(사회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파도가 일 때 올라타야 함. 이용하고, 활용하는 지혜 필요.
저항하면 배가 난파)

7. 한국YWCA가 성평등운동의 목적

- 1) 남녀평등의 의미를 뛰어넘어 상실된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고,
- 2) 육아, 복지, 교육, 고용 등의 사회 하위체제 균형 발전과 사회 균형 성장
- 3) 평등을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
- 4) 성평등운동은 생명과 살림의 운동.

「나라를 구하려면 여성을 구하라」

“여성 의원이 30%를 차지하는 때가 여성의 목소리에 힘을 갖게 되는 때”

참고자료

2022년 지방선거대비
역대 선거결과를 통해 본
여성대표성 확대방안 실증연구

2021



책임연구원	박진경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
	황인자 ((사)여성문제연구회 이사)
공동연구원	정하나 (청운대 외래교수)
	이영순 (17대 국회의원)
	김상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연수연구원)

발 간 사

2022년 6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0.9%에 불과했던 지방의회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와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지방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은 매회 증가해 왔습니다. 그 중 괄목할만한 성과는 기초의회에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결과 기초의회내 여성 의원은 30.8%로, 국제사회에서 임계치 목표로 삼아왔던 30%를 드디어 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226개 기초의회별 편차는 크며, 함께 치러진 광역의회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은 19.4%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기초자치단체장은 3.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증가를 보인 기초의회는 경우 1인 이상 여성의무공천제에 따른 결과이지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상당한 영향력이 작용하도록 마련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1인 공천에 그치는 제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광역의회보다는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공천하는 경향으로 인해, 단적인 사례로 인천광역시의회는 비례대표 의석 외에 지역구 여성 당선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초의회는 경우 여전히 비례의석에만 여성이 있는 의회가 226개 중 51개나 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정치환경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전략적 목표로 세운 여성대표성 30%를 넘어 남녀동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임계치로 설정해온 30% 이상 여성위원의 참여가 이루어진 의회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하고 1인 이상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된 이후 3차례의

선거결과를 토대로 그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제도가 개선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연구를 수행해주신 황인자 이사 와 박진경 교수를 비롯하여 정하나 교수, 이영순 17대국회의원, 김상숙 박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인식조사를 맡아주신 ㈜우리리서치에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목 차>

<p>제1장. 서론 1</p> <p>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p> <p>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p> <p>제2장. 지방선거 여성 참여 현황 7</p> <p> 제1절.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당선자 현황 8</p> <p> 제2절. 지방의회 여성당선자 현황 10</p> <p>제3장.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운영 현황 28</p> <p> 제1절. 지방의회 지역구 의무공천제 제도 개요 29</p> <p> 제2절. 제5~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현황 33</p> <p> 제3절. 주요정당의 여성의무공천제 현황 실태분석 41</p> <p> 제4절. 구·시·군 기초의회 주요정당 남녀 기호 배정 현황 72</p> <p>제4장. 지방의회 여성의원 조사 81</p> <p> 제1절. 여성광역의원 설문조사 결과 82</p> <p> 제2절. 여성기초의원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89</p>	<p>제5장. 국민인식조사 109</p> <p> 제1절. 조사개요 110</p> <p> 제2절. 조사결과 112</p> <p>제6장.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137</p> <p> 제1절.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 138</p> <p> 제2절. 지역구 여성의무공천할당제 확대 143</p> <p> 제3절.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전략공천 의무 148</p> <p> 제4절. 위반시 제재 조항 개선 152</p> <p> 제5절. 정당별 여성후보자 기호 우선 게재 조항 마련 158</p> <p> 제6절. 정당 경선시 여성후보 가산점제의 법제화 160</p> <p> 제7절. 목적에 맞는 여성정치발전비 사용 162</p> <p> 제8절. 정당의 책무 조항 신설 164</p> <p><참고문헌>167</p> <p><부록>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후보 등록현황168</p>
--	---

< 표 목차 >

<p><표-1> 지방의회 여성당선자 현황9</p> <p><표-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여성당선자 현황10</p> <p><표-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시·도 광역의회 여성당선자 현황12</p> <p><표-4> 제5-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여성당선자 비율별 기초의회 현황(비례의석 포함)14</p> <p><표-5> 제5-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여성당선자 비율별 기초의회 현황(지역구)15</p> <p><표-6> 제5-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비례대표에만 여성당선자가 있는 구·시·군 기초의회 현황16</p> <p><표-7> 제5-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비례대표에만 여성당선자가 있는 구·시·군 기초의회 목록17</p> <p><표-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이 30% 이상인 구·시·군 기초의회21</p> <p><표-9>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여성 30%이상 101개 기초의회의 역대 선거 여성의원 비율22</p> <p><표-1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30% 기준 분류 집단간 통계분석(T-검) 결과26</p> <p><표-1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시·도 광역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 현황34</p> <p><표-1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시·도 광역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 현황35</p> <p><표-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시·도 광역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 현황36</p> <p><표-14>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시·군·구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 현황37</p> <p><표-15>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시·군·구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 현황38</p> <p><표-1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시·군·구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 현황39</p> <p><표-17> 제7회 동시지방선거 비례의석 정당별 당선자수40</p> <p><표-18>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지역구별 여성후보 등록자수 현황42</p> <p><표-19>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정당의 여성후보 등록현황46</p> <p><표-2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지역구별 여성후보 등록자수 현황47</p> <p><표-21>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정당의 여성후보 등록현황52</p>	<p><표-2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지역구별 여성후보 등록자수 현황53</p> <p><표-2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별 여성후보 등록 현황58</p> <p><표-24> 자유한국당 여성후보등록자수별 지역구 현황61</p> <p><표-25>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여성후보자가 없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역구61</p> <p><표-26> 자유한국당 지역구 여성후보등록 시도별 현황63</p> <p><표-27> 더불어민주당 여성후보등록자수별 지역구 현황65</p> <p><표-28>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여성후보자가 없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65</p> <p><표-29>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성후보등록 시도별 현황(명)68</p> <p><표-30>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70</p> <p><표-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정당의 기호별 당선율73</p> <p><표-3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정당의 기호별 당선율74</p> <p><표-3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정당의 기호별 당선율75</p> <p><표-3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정당의 기호별 당선율76</p> <p><표-3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호별 남녀추천비율현황77</p> <p><표-36>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호별 남녀추천비율현황78</p> <p><표-3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호별 남녀추천비율현황79</p> <p><표-3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호별 남녀추천비율현황80</p> <p><표-39> 심층인터뷰 지역의 여성의원 비율90</p> <p><표-40> 심층인터뷰 대상자94</p> <p><표-41> FGI 실제 참가자 및 표시95</p> <p><표-42> 응답자 특성별 성별에 따른 투표 후보115</p> <p><표-43> 응답자 특성별 여성후보 투표 이유117</p> <p><표-44> 응답자 특성별 남성후보 투표 이유119</p> <p><표-45> 응답자 특성별 여성후보가 당선에 미치는 영향121</p>
---	--

<표-46> 응답자 특성별 여성 기초단체장 수 인식	123
<표-47> 응답자 특성별 여성 기초단체장 부족한 이유	125
<표-48> 응답자 특성별 여성 기초단체장 적정 비율	127
<표-49> 응답자 특성별 여성 기초단체장 비율 상향 방법	128
<표-50> 응답자 특성별 지방선거 성별 동등비율 법제화 인식	130
<표-51> 응답자 특성별 성별 동등비율 공천 법제화 찬성 이유	132
<표-52> 응답자 특성별 성별 동등비율 공천 법제화 반대 이유	134
<표-53> 응답자 특성별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 30% 정당 규정 인식	136
<표-54> 제7회 지방선거 성별 당선율 비교	149
<표-55> 6회 선거결과 정당별 기초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및 당선 현황	150
<표-56> 7회 선거결과 정당별 기초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및 당선 현황	150
<표-57> 제20대 공직선거법 국회 발의내용	153

<그림 목차>

<그림-1> 광역의회 회차별 여성당선자 비율	13
<그림-2> 여성당선자 비율별 기초의회 수	14
<그림-3> 지역구 여성당선자 비율별 기초의회 수	15
<그림-4> 비례대표예만 여성의원이 있는 구사군의의회	17
<그림-5> 지방선거결과 비례대표예만 여성당선자만 있는 시도별 기초의회 비율	20
<그림-6> 30% 기준 여성 당선자 비율 변화 추이	26
<그림-7>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후보 등록자수 현황	45
<그림-8>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별 여성후보 등록자수 현황	51
<그림-9>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별 여성후보 등록자수 현황	57
<그림-10> 자유한국당 지역별 여성후보등록 시도별 현황(광역의회)	64
<그림-11> 자유한국당 지역별 여성후보등록 시도별 현황(기초의회)	64
<그림-12> 더불어민주당 지역별 여성후보등록 시도별 현황(광역의회)	69
<그림-13> 더불어민주당 지역별 여성후보등록 시도별 현황(기초의회)	69
<그림-14> 광역·기초 의회별 여성후보자 비율	71
<그림-15> 심층인터뷰 지역의 여성의원 변화추이	91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목적

- 역대 지방선거 결과 여성의무공천제의 실태 및 여성정치참여 확대의 효과성 분석
 - 제도의 문제점 도출을 위해 여성의무공천제 도입이후 3차례의 지방선거결과를 통해 정당 의무공천의 선거구별 이행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다각적 방법으로 분석, 그 효과성을 밝힘
-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 도출
 - 향후 공천제도 개선 및 공천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함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지방선거 여성 참여 현황 및 효과성 검증
 - 역대 선거 결과의 심층적 분석과 여성 30%의회의 여성정치 참여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임계치와 여성정치참여의 확대의 정당성 찾기를 시도함
 - 의회별 여성의원 비율에 따른 효과성을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분석
-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운영 실태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7회까지 지방선거 후보자 명단을 통해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의 운영 실태를 매회별로 분석하고, 선거별 비교 분석함
 - 각 정당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공천 현황, 후보등록 명부를 통한 실질적 의무공천 현황, 기호별 성차 분석 등 실시함
- 지방의회 여성의원 조사

-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의 실질적 경험자인 여성 지방의원의 인식과 경험을 통해 여성 지방의원의 설문조사와 심층그룹인터뷰 병행
- 국민인식 여론조사
 -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2021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자동전화조사를 실시, 여성정치참여 확대 관련 국민인식을 진단
-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도출 (입법안 포함)

II. 지방선거 여성 참여 현황

1.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당선자 현황

- 여성의무공천조항 신설로 인해 2010년도와 2014년도 2018년도에 치러진 제5회, 제6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06년도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4%에 불과했던 구·시·군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21.7%와 25.3%, 30.8%까지 증가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어 여전히 매우 낮은 한자리 수에 머물러 있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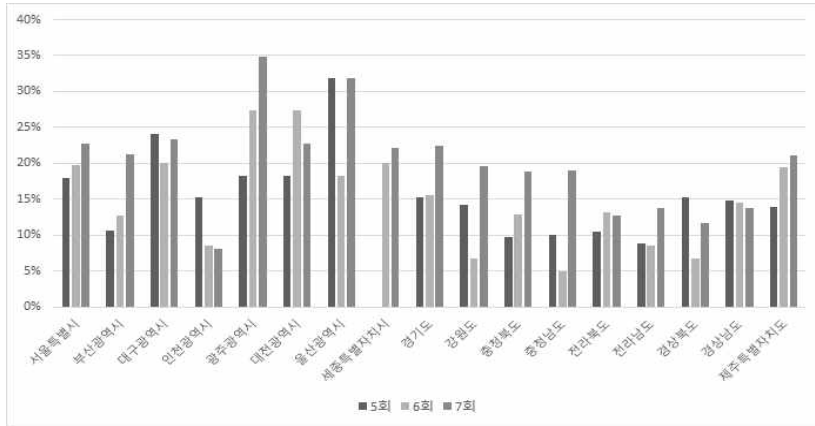
선거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광역의회	전체	970	663	682	733	761	789	824
	여성	54	41	63	79	113	113	160
	여성%	5.6%	6.2%	9.2%	10.8%	14.8%	14.3%	19.4%
기초의회	전체	4,541	3,489	3,485	2,888	2,888	2,898	2,926
	여성	72	56	77	437	626	732	900
	여성%	1.6%	1.6%	2.2%	15.1%	21.7%	25.3%	30.8%
기초단체장	전체	230	230	232	230	228	226	226
	여성	1	0	2	3	6	9	8
	여성%	0.4%	0.0%	0.9%	1.3%	2.6%	4.0%	3.5%

2. 지방의회 여성당선자 현황

- 전국의 17개 시·도 광역의회의 경우 5회 선거에서는 유일하게 울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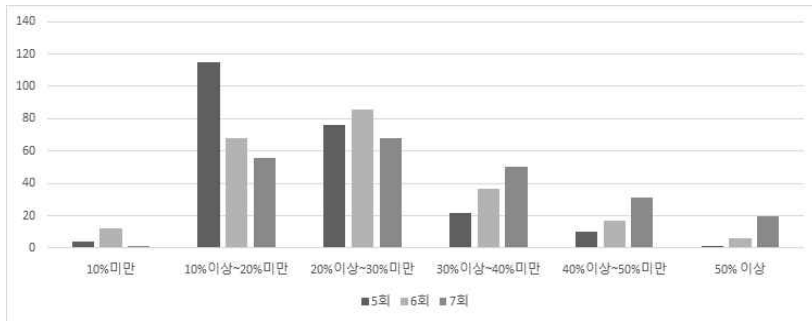
역시가 31.8%로 처음으로 광역의회 여성 30%를 달성. 이후 7회선거에서 울산과 광주 등 2개 의회만이 해당, 인천의 경우 8%에 그치고 비례대표만 여성이 당선됨.

<그림> 광역의회 회차별 여성당선자 비율



- 시·도 광역의회와는 달리 구·시·군 기초의회는 제도의 효과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편이며, 여성의원 비율 30%가 넘는 의회 수도 계속 증가
- 7회 선거의 경우 30%이상 의회수가 101개로 전체의회의 44.6%를 차지

<그림> 여성당선자 비율별 기초의회 수



- 비례에만 여성의원인 있는 의회는 제6회는 총 72개로 전체의 31.9%를 차지하였으며, 제7회는 51개로 22.6%를 차지하고 있고, 제5회부터 제7회까지 한 명의 여성의원도 지역에서 선출되지 않은 지역이 34개나 분석됨

<표> 제5~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비례대표에만 여성당선자가 있는 구·시·군 기초의회 현황

	전체(비율)	구의회	시의회	군의회
5회	103개(45.2%)	12	23	68
6회	72개 (31.9%)	5	12	55
7회	51개(22.6%)	1	7	43

3. 30% 이상 구·시·군 기초의회의 발전가능성 탐색

- 총 구·시·군 기초의회수 226개 중 여성의원 비율이 30%를 넘긴 의회와 30% 미만 의회를 통해 대표성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 임계치인 30% 기준으로 여성정치 참여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SPSS 통계분석을 위해 7회 선거를 기준으로 30%이상 집단과 30%미만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증
- 1회부터 7회까지 각 선거별 두 집단 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거가 반복될수록 통계량인 T-값이 커져, 통계적으로 두 값의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여 향후 선거에서도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을 추정

Ⅲ.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운영 현황

1. 제5회~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후보등록 및 당선 현황

- 여성의무공천제가 실시한 이후 세차례의 선거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공천 및 당선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개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분석
-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단위 공천이 이루어지는

정당이어야 하며, 기호에 따른 당선 결과를 함께 보기 위해서는 당선자로 적절한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

2. 주요정당의 여성무공천제 현황 실태분석

- 자유한국당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한 명의 여성후보도 배출하지 않은 지역구 수가 47개였으나 6회 38개, 7회 56개로 오히려 7회에 증가함.

<표> 자유한국당 여성후보등록자수별 지역구 현황

(명, %)

	5회	6회	7회
0명	47 (19.2%)	38 (15.4%)	56 (22.1%)
1	154(62.9%)	116(47.2%)	99 (39.1%)
2	39(15.9%)	68(27.7%)	59 (23.3%)
3	4(1.6%)	19(7.7%)	25 (9.9%)
4	1(0.4%)	4(1.6%)	8 (3.2%)
5명이상	0(0%)	1(0.4%)	6 (2.4%)
합계	245(100%)	246(100%)	253(100%)

- 더불어민주당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한 명의 여성후보도 배출하지 않은 지역구 수가 96개였으나 6회 58개, 7회 13개로 크게 감소함

<표> 더불어민주당 여성후보등록자수별 지역구 현황

(명, %)

	5회	6회	7회
0명	96(39.2%)	58(23.6%)	13 (5.1%)
1	111(45.3%)	109(44.3%)	84 (33.2%)
2	32(13.1%)	57(23.2%)	87 (34.4%)
3	4(1.6%)	18(7.3%)	43 (17.0%)
4	2(0.8%)	4(1.6%)	18 (7.1%)
5명이상	0(0%)	0(0%)	8 (3.2%)
합계	245(100%)	246(100%)	253(100%)

3. 구·시·군 기초의회 정당별 기호에 따른 당선 현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요정당의 기호별 남녀추천비율을 보면, 당선율 높은 기호인 1번과 1-가번에 여성을 각각 23.9%와 31.8%를 배정, 지난 6회 선거에 비해 2-가의 추천비율인 21.6%와 비교하면 1-가번의 여성추천비율이 꽤 높아짐.
- 또한 2번가 2-가번의 비율이 전체 평균인 23.3%에 비해서도 높아 6회 선거에 이어 당선율이 높은 순번에 여성의 공천율이 다소 상회하고 있음. 2번 22.4%, 2-가 18.8%의 비율로 여성을 공천하여 전체 공천 비율인 18.7%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임

<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호별 남녀추천비율현황

기호	1	1-가	1-나	1-다	1-라	합
전체	377	597	597	123	11	1,705
남	287	407	492	112	10	1,308
여	90	190	105	11	1	397
남성비율	76.1%	68.2%	82.4%	91.1%	90.9%	76.7%
여성비율	23.9%	31.8%	17.6%	8.9%	9.1%	23.3%
기호	2	2-가	2-나	2-다	2-라	합
전체	362	506	503	115	6	1,492
남	281	411	421	94	6	1,213
여	81	95	82	21	0	279
남성비율	77.6%	81.2%	83.7%	81.7%	100%	81.3%
여성비율	22.4%	18.8%	16.3%	18.3%	0%	18.7%

IV. 지방의회 여성의원 조사

1. 여성광역의원 설문조사 결과

- 현 광역의회 의원 중 여성 의원은 160명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조사기법을 활용, 문자메세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 수행, 49명 응답 결과

- 여성 의무공천제가 여성정치참여와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와 여성 의무공천제의 확대 필요성,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공천권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
- o 전체적으로 여성 의무공천제가 지방의회의 여성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으며, 여성 의무공천제를 광역과 기초의회로 나누어 실시할 필요성도 지지.
- 광역의회 여성의원들은 여성 의원이 증가할수록 차기 당선 가능성도 높아질거라 기대

2. 여성기초의원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 o 제7회 선거결과 여성당선자 비율이 30% 이상인 101개의 구·시·군 기초의회 중 상위권에 있는 의회 순으로 선정, 지역 및 정당을 고려하고, 의회 내 변화를 보기 위해 다선 경험이 있는 여성의원 대상 집단 심층인터뷰(FGI)를 실시함
- o 조사결과 소수일때와 다수일때의 의회 변화는 성평등한 의회 분위기, 자유로운 소통과 내용성있는 토론 등 민주적 의사소통과 건강한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 의정활동에도 더 적극적이고, 높은 자신감과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이 커졌고, 의장 기회 많아지고 초선도 활동 역량 중심으로 의장 맡는 등 여성의 위상과 역할이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 내었음
- o 당선 결과 및 유권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당선가능성도 높아졌고, 유권자 기대도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생활밀착형 사업이나 작은 약속도 꼼꼼이 챙기는 모습이 긍정 평가가 많았으나 선거과정에서 여성끼리 경쟁하는 사례를 불편해하기도 하였음
 - 의정 및 정치활동에도 긍정적인 평가속에 경쟁이나 협력을 통해 의회 발전과 정치참여에도 기여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도 등장함
 - 여성구청장이 있어 의회내 여성의 역할에도 긍정적 역할이 확대되고, 유권자 인식과 선거 당선에도 좋은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o 여성공천제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평가가 많았으나, 시도보다는 시군구

의회 쏠림, 공천권자(국회의원 혹은 지역위원장 등)에게 과도한 권한 등 문제를 지적함

- 정당내 여성후보 발굴 및 지원, 교육이나 훈련 등 확대 요구 등 정당 역할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함

V. 국민 인식조사

1. 조사개요

- o 여성정치참여 확대 관련 국민인식을 진단하고자 ㈜우리리서치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
- 본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2021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자동전화조사를 실시
-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성별 투표 의향, 부족한 이유, 성별 적정 비율과 제도적 측면에서 남녀동수 등 공천제도 등에 대한 질문을 추가 조사하여, 최종 1005명의 응답 결과 분석함

2. 조사결과

- o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비율이 매우 적다는 응답이 69%에 이르고, 적정비율로 20~30%를 꼽는 응답이 다수
 -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경력과 능력이 비슷하다면 투표에 있어 성별과 상관없이 응답 39.7%와 여성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30.6%의 응답을 볼 때 여성기초단체장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긍정적 인식 발견
 - 여성은 여성후보에게, 남성은 남성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동일한 성별 후보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여성의 정치 대표성에 대한 의지가 높아졌음
- o 여성공천을 위해 성별 동등비율 공천의 법제화에 대한 찬성(53.8%)과 정당 30% 의무 규정에 대한 찬성 56.4%로 높게 나타나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우선적 도입이 일반 국민인식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임

- 여성 기초단체장을 확대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은 응답으로 “여성의 경쟁력 강화(33.3%)”를 꼽음

VI.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1.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

- o 비례대표가 1석에 불과한 10석이하인 의회의 경우 해당의회의 비례의석은 2석이 되도록 조정
- 비례에만 여성의원인 있는 51개 의회 중 43개가 전체의석수 10석 이하로 비례대표 의석 한 석에 불과
- o 홀수순번 외에도 자율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시 대부분 여성으로 공천

2. 지역구 여성의무공천할당제 확대

- o <1안> 30%의무공천제 + 국고삭감
 - 공직선거법 제47조4항을 권고가 아닌 의무공천으로 개정
 - 위반시 국고보조금 감액 방식으로 20%에서 50%까지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 삭감 설계하되 대상은 선거보조금이나 매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대상 중 결정
- o <2안> 광역과 기초의회 각 1인이상 의무공천
 - 공직선거법 제47조5항을 개정하여, 현재 시·도 광역의회나 구·시·군 기초의회 중에 한 명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 선거단위별로 각각 1명이상 공천의무화
 - 위반시 등록무효조항은 여성후보가 자발적으로 등록 기피하는 경우 등록무효 예외로 보는 조항을 삭제하고 등록마감후에 5일의 유예기간으로 두어 여성발굴 등 여성후보등록 기회를 줌

3.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전략공천 의무

- o 10%의무공천제
 - 3.5%에 불과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여 10%로 별도로 규정(공직선거법제47조6항 신설)
- o 당선가능성 높은 지역 우선공천
 - 이를 위해 정당이 전임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자치구·시·군에 추천단서조항 포함

4. 기타

- o 정당별 여성후보자 기호 우선 게재 조항 마련
 - 당선가능성 높은 기호로 여성을 공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병행, 중대 선거구제하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고 의무공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충적 제도 마련
- o 정당 경선시 여성후보 가산점제의 법제화
 - 현재는 대부분의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가산점의 비율을 10%에서 20%내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이를 공직선거법 명시
- o 목적에 맞는 여성정치발전비 사용
 - 정치자금법 제28조2항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보조금은 정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시 근로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여성정책공모 및 정책연구용역, 성별분리당직자통계개발 등 정책개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여성후보자 선거 지원에 사용하도록 명시
- o 정당의 책무 조항 신설
 - 성평등한 사회와 정치발전을 위해 성인지적 정당문화 조성 및 운영과 의회내의 여성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 조치구체화,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여성정치인의 적극적 발굴과 교육, 지원 노력명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정치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7차례의 선거를 치루면서 비례대표 할당제와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등 제도의 영향으로 지방의회 내 여성의 참여가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단위별로 살펴보면 기초의회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결과 구·시·군 기초의회는 여성의원이 30.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6회 선거결과 25.3%에 비해 5.5% 증가한 것으로, 드디어 국제사회 임계치로 설정한 여성정치참여 수준 30%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반면, 시·도 광역의회의 경우 2014년 14.8%보다 4.6% 증가한 19.4%에 그쳐 임계치 30%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 외에도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여전히 전무하며, 기초자치단체장 역시 226명중 여성은 8명(3.5%)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 6회 선거결과 9명(4%)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가 처참한 수준이다.

이렇듯 4개의 선거단위 중 유독 구·시·군 기초의회에서 두드러진 증가가 나타나는 것은 지역구 의무공천제 도입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4회 선거까지만 해도 구·시·군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은 4.4%로 매우 저조하였으나, 제5회 10.9%, 제6회 14.6%, 제7회 20.7%로 증가하였다. 그 배경에는 제5회 지방선거부터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을 시도 광역의회 혹은 구·시·군 기초의회 후보로 추천하도록 한, 축소된 형태의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도입이 있다.

그러나 본 제도로 인한 여성 지방의원 증가의 효과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양산하였다. 구체적 운영내용을 보면 대부분 광역 혹은 구·시·군 기초의회에 1명만 공천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주로 시·도 광역의회 보단 구·시·군 기초의회에 공천하는 경우가 많다. 심각한 것은 숫자만을 채우기 위해 중대선거구인 구·시·

군 기초의회에 당선가능성이 적은 후순위로 추천하거나 혹은 정당 추천 등록 명부에만 포함 후 해당 여성이 등록을 하지 않아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제6회 지방선거를 실증분석한 연구¹⁾²⁾에서 보듯 226개 구·시·군별 여성비율의 격차가 상당히 크고 여성이 비례대표 1인에 불과하고 지역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던 의회가 72개(32%)나 있을 정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박진경 외(2017)에서 분석한 제6회 지방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여성의무공천제 실시 이후 치러진 제5회에서부터 제7회까지 세 차례의 결과를 선거구별로 전수조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전략적 목표로 세운 여성대표성 30%를 넘어 남녀동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국회 15.7%, 지방의회 10%로 매우 적어 비례대표 할당제만으로는 여성 당선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지역구에 30% 여성의무공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만 30%도 아닌 매우 협소하게 지역구 의무할당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마저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여성의무공천제의 실태 및 여성정치참여 확대의 효과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의무공천제 도입이후 3차례의 지방선거결과를 통해 정당 의무공천의 선거구별 이행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 데이터 축적을 통해, 향후 공천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 박진경 외(2017). 2018지방선거대비 여성대표성 확대 정치환경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 의정.

2) 박진경 외(2017) 연구가 당시 6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지방의회 여성의무공천제의 도입 이후인 5회에서부터 7회까지 세차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함에 따라 연구방법이나 결과 등 많은 부분 박진경 외(2017) 연구를 인용하여 재정리되었음을 미리 밝힘.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장별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2장 <지방선거 여성 참여 현황>에서는 지난 7차례 지방선거 결과의 심층적 분석과 여성의원이 30%를 넘긴 의회의 여성정치 참여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여성정치참여의 확대의 정당성 찾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의회별 여성비율에 따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첫째, 우선 지방선거 여성당선자 현황을 통해 시·도 및 구·시·군 의회의 변화 과정을 개괄하였다. 분석 범위는 제1회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분석하고, 이중 여성의무공천제 이후 변화에 근거한 분석의 경우 제5회에서 제7회로 한정하여 각종 데이터 정리 및 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구·시·군 기초의회 중 여성의원 비율이 30%를 넘긴 의회가 속속 증가하고 있지만 의회별 편차가 심한 현상과 여전히 비례의석만 있는 의회 현황 및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일반적으로 임계치로 삼는 30%를 기준으로 볼 때 여성정치 참여 효과성이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제7회 선거 기준으로 30%이상을 넘긴 의회 현황을 살펴보고 그렇지 못한 의회를 나눠 두 집단의 역대선거 비교를 통한 통계적 유의미성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정치참여의 확대 필요성과 적정성 찾기를 시도하였다.

제3장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운영 현황>에서는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된 후 치러진 선거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7회 까지 지방선거 후보자 명단을 통해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의 운영 실태를 매회별로 분석하고 매회 선거별로 비교분석 하였다.

첫째,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의 내용과 도입 과정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설명하였다.

둘째, 매회별 선관위 등록 후보(당선자 포함) 명단³⁾을 중심으로 각 정당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여성후보공천 및 당선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매회별 주요정당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후보등록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매회별 주요정당의 공천 실태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나누고, 공천자 수별, 시도별, 국회의원선거구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넷째, 구·시·군 기초의회의 경우 정당공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제4회 선거부터 기호에 따른 당선율과 성차를 보기 위해 전체 남녀 공천비율 대비 각 기호별 남녀 공천비율을 비교해보았다. 기호 우선순위 체계의 경우 중대선거구 하에서 여성의무공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함께 병행되어야 할 제도이기 때문이다.

제4장 <지방의회 여성의원 조사>에서는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의 실질적 경험자인 여성 지방의원의 인식과 경험을 통해 본 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그룹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첫째, 광역의회 여성의원 160명 전원을 대상으로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기법을 통해 제도에 대한 무기명 평가를 실시하였다.

둘째, 기초의회내 여성이 다수인 의회를 중심으로 여성의장이나 재선 이상 여성의원 13명을 선정하여 FGI(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직 여성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한 경험적 측면에서의 평가와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제5장 <여성정치참여 확대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치참여 확대 관련 국민인식을 보기위해 ㈜우리리서치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2021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자동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여성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성별 투표 의향, 여성이 부족한 이유, 성별 적정 비율 등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남녀동수 등 공천제도 등에 대한 질

3) 본 자료는 선관위로부터 매회 선거별 후보등록(당선여부 포함)명단을 제공받아 활용함

문을 추가 조사하여, 최종 1005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6장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이상의 데이터 분석 및 실태조사, 여성의원 및 국민 인식조사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와 기존의 논의를 종합해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의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지방선거 여성 참여 현황

제1절.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당선자 현황

제2절. 지방의회 여성당선자 현황

제2장. 지방선거 여성 참여 현황

〈표-1〉 지방의회 여성당선자 현황

제1절.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당선자 현황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비례대표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여성 당선자 중 78.2%가 비례로 당선되었으며, 이후 시·도 광역의회에서 제4회 선거까지 여성당선자 중 비례대표가 70%를 넘을 만큼 지역당선자에 비해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당선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4회 선거 들어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구·시·군 기초의회의 경우 여성당선자 중 87.2%가 비례대표제에 힘입어 당선되었고, 2.2%에 불과했던 여성당선 비율을 15.1%까지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2010년 제5회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인 이상 여성후보를 공천하도록 한 법률적 근거(4)에 의해 지역구에도 여성당선자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5회 선거부터는 지역구 여성 당선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아래 〈표-1〉에서 보듯이 이러한 흐름이 제6회부터는 광역과 기초 모두 지역구 당선자 수가 비례 당선자 수보다 약간씩 상회하게 되었으며, 제7회에 들어서는 더 확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선거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광역 지역	전체	875	616	609	655	680	705	737
	여성	12	14	14	32	55	58	98
	여성%	1.4%	2.3%	2.3%	4.9%	8.1%	8.2%	13.3%
광역 비례	전체	95	47	73	78	81	84	87
	여성	42	27	49	57	58	55	62
	여성%	44.2%	57.4%	67.1%	73.1%	71.6%	65.5%	71.3%
광역 전체	전체	970	663	682	733	761	789	824
	여성	54	41	63	79	113	113	160
	여성%	5.6%	6.2%	9.2%	10.8%	14.8%	14.3%	19.4%
기초 지역	전체	4,541	3,489	3,485	2,513	2,512	2,519	2,541
	여성	72	56	77	110	274	369	526
	여성%	1.6%	1.6%	2.2%	4.4%	10.9%	14.6%	20.7%
기초 비례	전체	-			375	376	379	385
	여성				327	352	363	374
	여성%				87.2	93.6	95.8	97.1%
기초 전체	전체	4,541	3,489	3,485	2,888	2,888	2,898	2,926
	여성	72	56	77	437	626	732	900
	여성%	1.6%	1.6%	2.2%	15.1%	21.7%	25.3%	30.8%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선거통계시스템 참조하여 정리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어 아래 〈표-2〉에서 보듯이 지난 일곱 번의 선거 결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여성당선자는 전무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여전히 매우 낮은 한자리 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4) 공직선거법 제47조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표-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여성당선자 현황

선거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광역자치 단체장	전체	15	15	15	16	16	16	17
	여성	0	0	0	0	0	0	0
	여성%	0.0%	0.0%	0.0%	0.0%	0.0%	0.0%	0.0%
기초자치 단체장	전체	230	230	232	230	228	226	226
	여성	1	0	2	3	6	9	8
	여성%	0.4%	0.0%	0.9%	1.3%	2.6%	4.0%	3.5%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선거통계시스템 참조하여 정리

비례대표제는 여성정치참여 증가에 지배적 영향을 미쳤으나, 비례의석수는 지방의회의 전체 의석수 중 100분의 10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후에도 비례의석 비율을 늘리지 않는 한, 비례제도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적은 의석의 비례대표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의석이 많은 지역구 의석에서 여성정치참여 확대의 가능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47조5항에 국회의원 선거구별 1인 이상 여성후보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의무공천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조항이 신설되었다.

여성의무공천조항 신설로 인해 2010년도와 2014년도 2018년도에 치러진 제5회, 제6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06년도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4%에 불과했던 구·시·군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0.9%와 14.6%, 20.7%까지 증가하였다. 시·도 광역의회의 경우 역시 제4회 기준 4.9%에서 제5회, 8.1%와 제6회, 8.2%로 증가하였으며 제7회는 13.3%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지방선거 결과 여성의원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와 같은 증가율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구 공천 강제가 “1인 이상”으로 매우 적게 설정되어 있어 강제 범위를 높이지 않는 한 지역구를 통한 여성당선자의 비율 증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지방의회 여성당선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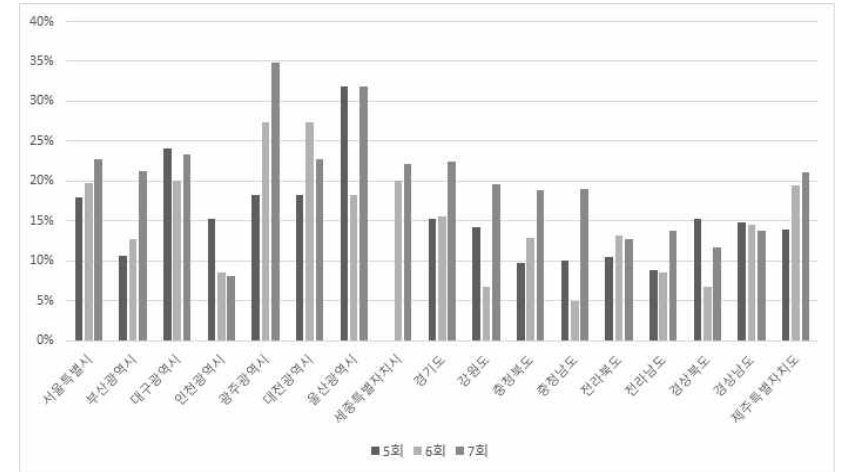
1) 시·도 광역의회

전국의 17개 시·도 광역의회의 경우 아래 <표-3>에서 보듯이 제5회 선거에서는 유일하게 울산광역시가 31.8%를 차지해 최초로 광역의회 여성 30%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제6회 선거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30%에 이른 시·도 광역의회는 없었다. 이후 제7회 선거를 통해 2개 의회에서 여성의원들의 비율이 30%를 넘겼다. 이 중 광주광역시는 지난 제6회 선거에서도 전체 광역의회 중 가장 높은 27.3%를 차지하였으며, 제7회 선거를 통해 여성의원들이 34.8%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제7회 선거에서 여성의원 비율 30%를 넘긴 또 하나의 의회는 울산광역시로 여성의원들의 비율이 다시 31.8%를 차지하였다. 제7회 선거에서의 특이한 점은 8.1%라는 여전히 한자리 수에 머물러 있는 인천광역시의회의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구 여성의원들이 한 명도 없이 전체의석 33명 중 비례의석에만 여성 3명이 당선된 결과이다. 제 7회 선거결과 시·도 광역의회 여성비율 전체 평균은 19.4%로, 지난 제6회 선거의 14.3%에 비해 조금 상승했지만, 임계치로 삼는 3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별 의회 여성 당선자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시·도 광역의회 여성당선자 현황

시도의회	5회 여성 비율	6회 여성 비율	7회 여성 비율	제7회								
				지역구의석			비례대표의석			전체 의석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서울특별시	17.9	19.8	22.7	100	82	18	10	3	7	110	85	25
부산광역시	10.6	12.8	21.3	42	35	7	5	2	3	47	37	10
대구광역시	24.1	20.0	23.3	27	22	5	3	1	2	30	23	7
인천광역시	15.2	8.6	8.1	33	33	0	4	1	3	37	34	3
광주광역시	18.2	27.3	34.8	20	14	6	3	1	2	23	15	8
대전광역시	18.2	27.3	22.7	19	16	3	3	1	2	22	17	5
울산광역시	31.8	18.2	31.8	19	14	5	3	1	2	22	15	7
세종특별자치시	-	20.0	22.2	16	14	2	2	0	2	18	14	4
경기도	15.3	15.6	22.5	129	105	24	13	5	8	142	110	32
강원도	14.3	6.8	19.6	41	37	4	5	0	5	46	37	9
충청북도	9.7	12.9	18.8	29	25	4	3	1	2	32	26	6
충청남도	10	5.0	19.0	38	33	5	4	1	3	42	34	8
전라북도	10.5	13.2	12.8	35	33	2	4	1	3	39	34	5
전라남도	8.8	8.6	13.8	52	49	3	6	1	5	58	50	8
경상북도	15.3	6.7	11.7	54	51	3	6	2	4	60	53	7
경상남도	14.8	14.5	13.8	52	48	4	6	2	4	58	50	8
제주특별자치도	13.9	19.4	21.1	31	28	3	7	2	5	38	30	8
총 합계	14.8%	14.3%	19.4%	737	639	98	87	25	62	824	664	160

<그림-1> 광역의회 회차별 여성당선자 비율



2) 구·시·군 기초의회

앞서 전체 지방선거 당선자 현황에서 보았듯이 시·도 광역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구·시·군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 제1회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까지 여성의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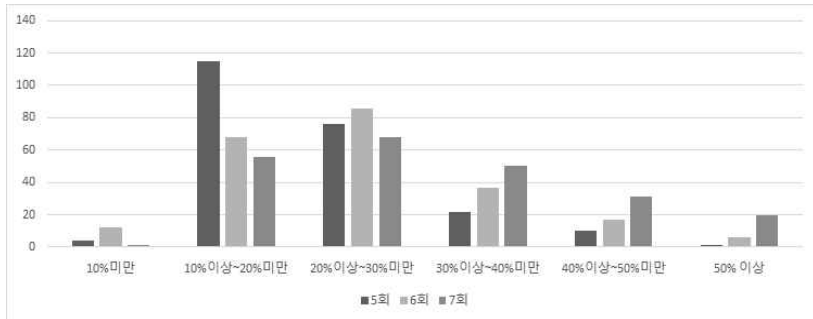
시·도 광역의회와는 달리 구·시·군 기초의회는 제도의 효과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편이며, 여성의원 비율 30%가 넘는 의회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 결과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6회 전국동시선거결과 전국 226개 구·시·군 기초의회 중 비례를 포함한 여성 당선자 비율이 30%를 넘긴 의회는 총 60개로 전체 의회의 26.4%였다, 제7회 선거의 경우는 30%이상의회수가 101개로 전체의회의 44.6%를 차지하였다. 이중 남녀동수 50%를 넘긴 의회 수 역시 6개에서 20개로 증가하였다. (<표-4> 참조)

〈표-4〉 제5~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여성당선자 비율별 구·시·군 기초의회 현황(비례의석 포함)

	여성비율	구·시·군 기초의회 현황(비례의석 포함)						합계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5회	의회수	1	10	22	76	115	4	228
	비율	0.4%	4.4%	9.9%	33.3%	50.4%	1.8%	100%
6회	의회수	6	17	37	86	68	12	226
	비율	2.7%	7.5%	16.4%	38.1%	30.1%	5.3%	100%
7회	의회수	20	31	50	68	56	1	226
	비율	8.8%	13.7%	22.1%	30.1%	24.8%	0.9%	100%

〈그림-2〉 여성당선자 비율별 구·시·군 기초의회 수



〈표-4〉와 〈그림-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6회 선거에는 10% 미만 의회가 12개로 전체의 5.3%를 차지하였으나, 제7회 선거에서는 1개로 0.9%를 차지하였다. 반면 30%이상 40%미만의회는 16.4%에서 22.1%로, 40%이상 50%미만 의회는 7.5%에서 13.7%로, 50%이상 의회는 2.7%에서 8.8%로 점차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은 의회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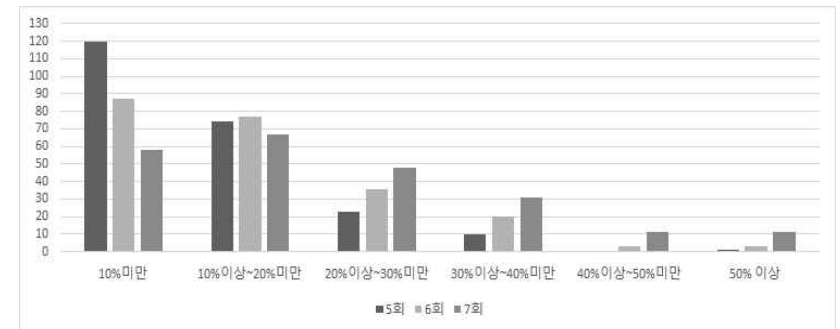
다만 비례의석을 제외한 지역구 의석을 중심으로 여성비율을 분석하면 제6회의 경우, 30%이상인 의회가 226개 의회 중 26개로 나타나 비례대표를 포함했던 비율에서 반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제7회에 들어서도 101개에서 53개로 50% 가까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지방의회별 비례의석이

전체의의석에 10%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비율임에도 여성정치참여에 비례대표제의 효과성이 여성정치 임체치 30%를 달성하는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비례대표를 빼고 지역구만으로도 53개의 의회만이 30% 이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30% 지역구 할당제의 필요성이나 여성정치참여의 효과성을 진단하는 실증적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반대로 제7회 기준으로도 30% 미만 구·시·군 기초의회가 226개 중 125개이며, 여기서 비례의석을 제외하면 다시 173개로 늘어난다는 결과로 문제는 지역구 30% 의무공천제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 해나갈 필요가 있다.

〈표-5〉 제5~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여성당선자 비율별 구·시·군 기초의회 현황(지역구)

	여성비율	구·시·군 기초의회 현황(지역구)						합계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5회	의회수	1	0	10	23	74	120	228
	비율	0.4%	0%	4.4%	10.1%	32.5%	52.6%	100%
6회	의회수	3	3	20	36	77	87	226
	비율	1.3%	1.3%	8.8%	16%	34.1%	38.5%	100%
7회	의회수	11	11	31	48	67	58	226
	비율	4.9%	4.9%	13.7%	21.2%	29.6%	25.7%	100%

〈그림-3〉 지역구 여성당선자 비율별 기초의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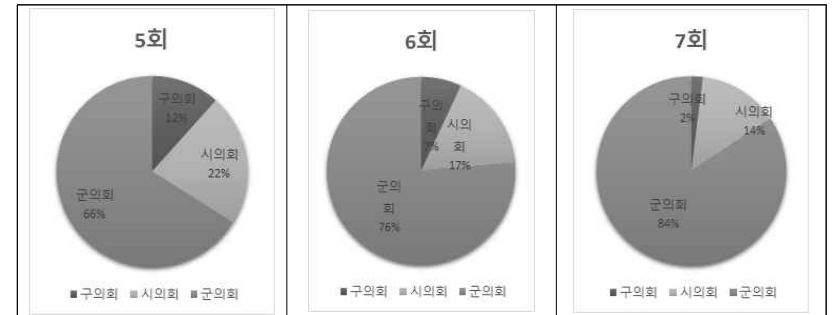
30% 미만 의회의 별도의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아래 <표-6>과 같이 226개 구·시·군 기초의회 중 비례대표에만 여성의원인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비례에만 여성의원인 있는 의회를 분석해본 결과 제5회 선거결과 에서 제6회는 총 72개로 전체의 31.9%를 차지하였으며, 제7회는 51개로 22.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구 여성의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만이 여성들이 지방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초의회의 수가 여전히 많다.

<표-6> 제5~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비례대표에만 여성당선자가 있는 구·시·군 기초의회 현황

	전체(비율)	구의회	시의회	군의회
5회	103개(45.2%)	12	23	68
6회	72개 (31.9%)	5	12	55
7회	51개(22.6%)	1	7	43

<표-6>에서 보듯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여성의원인 1명도 없는 의회는 주로 도 단위에 집중되어 있다. 제6회의 경우 72개 중 55개가 군의회에 해당되며, 제7회 역시 51개 중 43개가 군의회이다. <그림-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시·군의회별 비중을 보면 제6회는 군의회가 75%에 달하며, 제7회는 84.3%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시보다는 도단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4>비례대표에만 여성의원인 있는 구·시·군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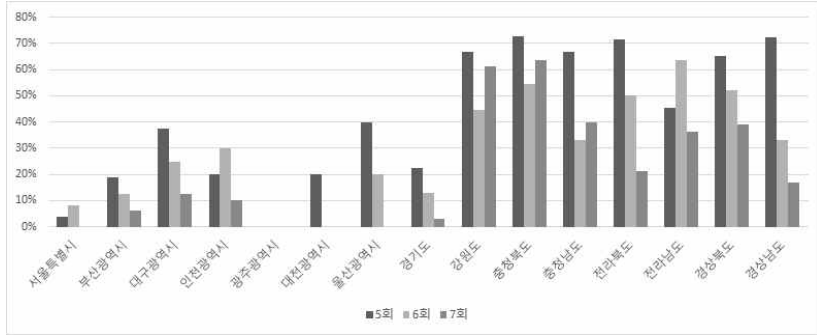
다음 <표-7>은 비례대표에만 여성당선자가 있는 구·시·군 기초의회를 제5회부터 제7회까지 비교한 목록이다. 즉, 지역구 여성당선자가 한 명도 없는 의회를 의미한다. 서울을 비롯하여 광역시, 시 단위에서는 비례대표만으로 여성이 선출되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군 단위에서는 제5회부터 제7회까지 비례대표만으로 여성의원인 선출되는 지역의 수가 여전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내 볼드 처리된 지역의 경우, 제5회부터 제7회까지 한 명의 여성의원도 지역에서 선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지역이 34개에 달한다.

<표-7> 제5~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비례대표에만 여성당선자가 있는 구·시·군 기초의회 목록

시도	전체	5회	의회수	비율	6회	의회수	비율	7회	의회수	비율
서울특별시	25	금천구	1	4.0%	강서구 금천구	2	8.0%	-	0	0.0%
부산광역시	16	기장군 남구 사상구	3	18.8%	동래구 중구	2	12.5%	영도구	1	6.3%
대구광역시	8	남구 달성군 중구	3	37.5%	중구 달성군	2	25.0%	달성군	1	12.5%
인천광역시	10	강화군 옹진군	2	20.0%	강화군 옹진군 중구	3	30.0%	강화군	1	10.0%
광주광역시	5	-	0	0.0%	-	0	0.0%	-	0	0.0%
대전광역시	5	유성구	1	20.0%	-	0	0.0%	-	0	0.0%
울산광역시	5	울주군 중구	2	40.0%	울주군	1	20.0%	-	0	0.0%
세종특별자치시	0	-	-	-	-	-	-	-	-	-
경기도	31	가평군 군포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의왕시	7	22.6%	가평군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4	12.9%	가평군	1	3.2%
강원도	18	강릉시 고성군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12	66.7%	강릉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8	38.9%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11	61.1%
충청북도	11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8	72.7%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6	54.5%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7	63.6%
충청남도	15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예산군 홍성군	10	66.7%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서천군 예산군	5	33.3%	공주시 금산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6	40.0%

시도	전체	5회	의회수	비율	6회	의회수	비율	7회	의회수	비율
전라북도	14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10	71.4%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7	50.0%	고창군 임실군 장수군	3	21.4%
전라남도	22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16	45.5%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화순군	14	63.6%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화순군	8	36.4%
경상북도	23	경주시 고령군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15	65.2%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12	52.2%	경주시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9	39.1%
경상남도	18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3	72.2%	고성군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함양군 합천군	6	33.3%	남해군 밀양시 함양군	3	16.7%
제주도	0	-	-	-	-	-	-	-	-	-
합계	226		103	45.6%		72	31.4%		51	22.6%

〈그림-5〉 비례대표에만 여성당선자가 있는 시도별 기초의회 비율



〈그림-5〉를 통해 그래프로 살펴보면, 시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6회 선거에 비해 7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여성 의원만이 있는 의회의 수가 더 증가하였고, 같은 군단위 의회가 많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30% 이상 구·시·군 기초의회의 발전가능성 탐색

앞서 보았듯이 총 구·시·군 기초의회수 226개 중 여성의원 비율이 30%를 넘긴 의회는 5회 선거에서 33개, 6회 선거 60개, 7회 선거에서는 101개로 나타났다. 제7회 선거결과 50%를 넘긴 의회도 20개가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표성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 임계치인 30%를 기준으로 여성정치 참여 효과성이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미 여성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를 중심으로 여성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분석이 요구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이 30% 이상인 구·시·군 의회는 다음 <표-8>과 같다. 서울과 경기도가 23개로 가장 많고, 부산광역시 12개, 대구, 대전, 인천광역시 5개, 광주광역시 4개 등 광역시 단위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이 30% 이상인 구·시·군 기초의회

지역	시/군/구	여성비율	지역	시/군/구	여성비율
서울특별시 (23)	광진구	57.1%	강원도 (2)	횡성군	42.9%
	성동구	57.1%		춘천시	38.1%
	동작구	52.9%	경기도 (23)	광주시	60.0%
	도봉구	50.0%		의왕시	57.1%
	중랑구	47.1%		연천군	57.1%
	서초구	46.7%		여주시	57.1%
	용산구	46.2%		부평구	55.6%
	성북구	45.5%		하남시	55.6%
	동대문구	44.4%		안양시	55.0%
	영등포구	41.2%		의정부시	53.8%
	관악구	40.9%		용인시	51.7%
	강남구	39.1%		부천시	46.4%
	노원구	38.1%		고양시	45.5%
	구로구	37.5%		과천시	42.9%
	은평구	36.8%		구리시	42.9%
	강동구	33.3%		동두천시	42.9%
	마포구	33.3%		광명시	41.7%
	서대문구	33.3%		화성시	38.1%
	중구	33.3%		수원시	37.8%
	양천구	33.3%		시흥시	35.7%
	강서구	31.8%		파주시	35.7%
	송파구	30.8%		김포시	33.3%
	금천구	30.0%	안산시	33.3%	
광주광역시 (4)	남구	45.5%	이천시	33.3%	
	동구	42.9%	평택시	31.3%	
	서구	30.8%	경상남도 (5)	진주시	42.9%
	북구	30.0%		사천시	41.7%
대구광역시 (5)	남구	50.0%		통영시	38.5%
	중구	42.9%		하동군	36.4%
	동구	37.5%		경상북도 (3)	거창군
	북구	30.0%	군위군		42.9%
수성구	30.0%	경산시	33.3%		
대전광역시 (5)	동구	63.6%	전라남도 (3)	구미시	30.4%
	유성구	50.0%		함평군	42.9%
	중구	41.7%		강진군	37.5%
	대덕구	37.5%	전라북도 (2)	해남군	36.4%
	서구	30.0%		순창군	37.5%
			전주시	32.4%	

지역	시/군/구	여성비율	지역	시/군/구	여성비율
부산광역시 (12)	동구	57.1%	충청남도 (5)	청양군	42.9%
	기장군	50.0%		아산시	37.5%
	금정구	46.2%		천안시	36.0%
	연제구	45.5%		보령시	33.3%
	남구	42.9%		당진시	30.8%
	중구	42.9%	충청북도 (3)	괴산군	37.5%
	사하구	40.0%		충주시	36.8%
	서구	37.5%		제천시	30.8%
	사상구	36.4%	인천광역시 (5)	남동구	52.9%
	북구	35.7%		연수구	50.0%
	해운대구	33.3%		중구	42.9%
	동래구	30.8%		동구	42.9%
울산광역시(1)	북구	37.5%		남구	40.0%

아래 <표-9>는 제7회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여성비율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또한 해당의회의 1회에서 7회 선거까지 역대선거 여성비율을 함께 분석하였다. 7회 선거를 통해 여성위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의회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다. 동구의회는 여성의무공천제가 시작된 5회 선거에서부터 여성의원 비율이 30%를 넘겼으며, 선거를 치루면서 꾸준히 여성의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표성의 임계치로 삼는 30%를 넘긴 의회가 7회까지 이어진 곳은 대전광역시 동구, 경기도 광주시, 부산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2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여성 30%이상 101개 구·시·군 기초의회의
역대 선거 여성의원 비율

No	시도	구·시·군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1	대전광역시	동구	3.4%	0.0%	0.0%	15.4%	33.3%	36.4%	63.6%
2	경기도	광주시	0.0%	0.0%	0.0%	12.5%	37.5%	33.3%	60.0%
3	경기도	여주시	0.0%	0.0%	0.0%	14.3%	14.3%	28.6%	57.1%
4	경기도	연천군	0.0%	0.0%	0.0%	14.3%	14.3%	28.6%	57.1%
5	경기도	의왕시	0.0%	0.0%	0.0%	14.3%	14.3%	28.6%	57.1%
6	부산광역시	동구	0.0%	0.0%	0.0%	33.3%	33.3%	25.0%	57.1%
7	서울특별시	광진구	7.4%	12.5%	12.5%	35.7%	42.9%	35.7%	57.1%
8	서울특별시	성동구	0.0%	0.0%	0.0%	20.0%	28.6%	28.6%	57.1%

No	시도	구·시·군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9	경기도	하남시	0.0%	0.0%	11.1%	42.9%	57.1%	42.9%	55.6%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2.8%	4.8%	9.5%	26.3%	21.1%	21.1%	55.6%
11	경기도	안양시	0.0%	0.0%	0.0%	8.3%	27.3%	40.9%	55.0%
12	경기도	의정부시	0.0%	0.0%	0.0%	23.1%	46.2%	38.5%	53.8%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6.7%	0.0%	0.0%	11.8%	35.3%	23.5%	52.9%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3.2%	6.3%	5.9%	14.3%	28.6%	31.3%	52.9%
15	경기도	용인시	0.0%	0.0%	14.3%	15.0%	20.0%	37.0%	51.7%
16	대구광역시	남구	0.0%	0.0%	7.7%	10.0%	11.1%	44.4%	50.0%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0.0%	0.0%	0.0%	12.5%	10.0%	36.4%	50.0%
18	부산광역시	기장군	0.0%	0.0%	0.0%	14.3%	14.3%	25.0%	50.0%
19	서울특별시	도봉구	11.1%	0.0%	6.7%	21.4%	35.7%	50.0%	50.0%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0.0%	22.2%	0.0%	11.1%	33.3%	20.0%	50.0%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0.0%	0.0%	0.0%	23.5%	41.2%	41.2%	47.1%
22	서울특별시	서초구	17.2%	22.2%	27.8%	20.0%	26.7%	40.0%	46.7%
23	경기도	부천시	6.0%	0.0%	0.0%	10.0%	34.5%	28.6%	46.4%
24	부산광역시	금정구	3.8%	0.0%	0.0%	23.1%	30.8%	46.2%	46.2%
25	서울특별시	용산구	0.0%	0.0%	0.0%	15.4%	30.8%	38.5%	46.2%
26	경기도	고양시	2.6%	9.7%	12.5%	16.1%	36.7%	35.5%	45.5%
27	광주광역시	남구	4.2%	0.0%	6.3%	25.0%	33.3%	36.4%	45.5%
28	부산광역시	연제구	0.0%	0.0%	0.0%	20.0%	20.0%	20.0%	45.5%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0.0%	3.3%	10.3%	31.8%	31.8%	40.9%	45.5%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0.0%	0.0%	0.0%	11.1%	16.7%	22.2%	44.4%
31	강원도	횡성군	0.0%	0.0%	0.0%	14.3%	14.3%	28.6%	42.9%
32	경기도	과천시	42.9%	14.3%	14.3%	14.3%	28.6%	85.7%	42.9%
33	경기도	구리시	0.0%	0.0%	0.0%	14.3%	42.9%	57.1%	42.9%
34	경기도	동두천시	0.0%	0.0%	0.0%	14.3%	28.6%	28.6%	42.9%
35	경상남도	진주시	0.0%	0.0%	0.0%	19.0%	30.0%	30.0%	42.9%
36	경상북도	군위군	0.0%	0.0%	0.0%	14.3%	14.3%	28.6%	42.9%
37	광주광역시	동구	0.0%	0.0%	0.0%	11.1%	33.3%	37.5%	42.9%
38	대구광역시	중구	5.3%	7.7%	0.0%	14.3%	14.3%	14.3%	42.9%
39	부산광역시	남구	0.0%	0.0%	5.3%	26.7%	13.3%	20.0%	42.9%
40	부산광역시	중구	0.0%	0.0%	0.0%	14.3%	28.6%	14.3%	42.9%
41	인천광역시	동구	0.0%	0.0%	0.0%	14.3%	28.6%	57.1%	42.9%
42	인천광역시	중구	0.0%	0.0%	0.0%	0.0%	28.6%	14.3%	42.9%
43	전라남도	함평군	0.0%	0.0%	0.0%	0.0%	14.3%	28.6%	42.9%
44	충청남도	청양군	0.0%	0.0%	0.0%	25.0%	25.0%	37.5%	42.9%
45	경기도	광명시	4.2%	5.9%	5.9%	15.4%	33.3%	38.5%	41.7%
46	경상남도	사천시	0.0%	0.0%	0.0%	16.7%	16.7%	25.0%	41.7%
47	대전광역시	중구	0.0%	0.0%	0.0%	8.3%	25.0%	25.0%	41.7%
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0%	4.5%	4.8%	23.5%	23.5%	41.2%	41.2%
49	서울특별시	관악구	7.1%	14.8%	11.1%	31.8%	27.3%	45.5%	40.9%
50	부산광역시	사하구	0.0%	6.3%	0.0%	20.0%	26.7%	26.7%	40.0%

No	시도	구·시·군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51	인천광역시	남구	0.0%	0.0%	0.0%	17.6%	23.5%	31.3%	40.0%
52	서울특별시	강남구	15.6%	19.2%	11.5%	23.8%	19.0%	38.1%	39.1%
53	경상남도	통영시	0.0%	0.0%	0.0%	15.4%	16.7%	23.1%	38.5%
54	강원도	춘천시	0.0%	0.0%	0.0%	19.0%	28.6%	28.6%	38.1%
55	경기도	화성시	0.0%	0.0%	0.0%	18.2%	29.4%	27.8%	38.1%
56	서울특별시	노원구	9.5%	8.3%	8.3%	9.1%	27.3%	42.9%	38.1%
57	경기도	수원시	4.1%	0.0%	5.0%	11.1%	20.6%	32.4%	37.8%
58	대구광역시	동구	0.0%	0.0%	0.0%	12.5%	25.0%	37.5%	37.5%
59	대전광역시	대덕구	0.0%	0.0%	0.0%	20.0%	22.2%	44.4%	37.5%
60	부산광역시	서구	0.0%	0.0%	0.0%	11.1%	22.2%	22.2%	37.5%
61	서울특별시	구로구	3.2%	0.0%	5.3%	18.8%	31.3%	31.3%	37.5%
62	울산광역시	북구		0.0%	0.0%	28.6%	28.6%	28.6%	37.5%
63	전라남도	강진군	0.0%	0.0%	0.0%	12.5%	25.0%	25.0%	37.5%
64	전라북도	순창군	0.0%	0.0%	0.0%	12.5%	12.5%	25.0%	37.5%
65	충청남도	아산시	0.0%	0.0%	0.0%	14.3%	21.4%	26.7%	37.5%
66	충청북도	괴산군	0.0%	0.0%	0.0%	12.5%	12.5%	25.0%	37.5%
67	서울특별시	은평구	0.0%	0.0%	5.0%	16.7%	22.2%	31.6%	36.8%
68	충청북도	충주시	3.3%	0.0%	4.2%	15.8%	26.3%	25.0%	36.8%
69	경상남도	거창군	0.0%	0.0%	0.0%	10.0%	10.0%	27.3%	36.4%
70	경상남도	하동군	0.0%	0.0%	0.0%	10.0%	10.0%	27.3%	36.4%
71	부산광역시	사상구	4.8%	7.1%	0.0%	16.7%	16.7%	25.0%	36.4%
72	전라남도	해남군	0.0%	0.0%	0.0%	18.2%	18.2%	27.3%	36.4%
73	충청남도	천안시	0.0%	0.0%	0.0%	9.5%	19.0%	22.7%	36.0%
74	경기도	시흥시	0.0%	0.0%	0.0%	23.1%	33.3%	50.0%	35.7%
75	경기도	파주시	0.0%	0.0%	0.0%	10.0%	27.3%	42.9%	35.7%
76	부산광역시	북구	0.0%	0.0%	0.0%	15.4%	23.1%	46.2%	35.7%
77	경기도	김포시	0.0%	0.0%	0.0%	12.5%	25.0%	20.0%	33.3%
78	경기도	안산시	0.0%	0.0%	0.0%	18.2%	23.8%	28.6%	33.3%
79	경기도	이천시	0.0%	0.0%	0.0%	22.2%	22.2%	33.3%	33.3%
80	경상북도	경산시	0.0%	0.0%	0.0%	13.3%	26.7%	20.0%	33.3%
8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0%	0.0%	6.7%	17.6%	23.5%	29.4%	33.3%
82	서울특별시	강동구	0.0%	4.8%	15.0%	22.2%	16.7%	22.2%	33.3%
83	서울특별시	마포구	3.1%	8.3%	8.3%	22.2%	27.8%	27.8%	33.3%
8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0%	0.0%	0.0%	18.8%	26.7%	33.3%	33.3%
85	서울특별시	양천구	8.8%	10.0%	5.0%	16.7%	22.2%	22.2%	33.3%
86	서울특별시	중구	0.0%	0.0%	0.0%	22.2%	22.2%	33.3%	33.3%
87	충청남도	보령시	0.0%	0.0%	0.0%	16.7%	16.7%	33.3%	33.3%
88	전라북도	전주시	4.4%	7.5%	0.0%	14.7%	23.5%	23.5%	32.4%
89	서울특별시	강서구	2.6%	0.0%	0.0%	15.0%	15.0%	10.0%	31.8%
90	경기도	평택시	0.0%	0.0%	4.8%	12.5%	20.0%	25.0%	31.3%
91	광주광역시	서구	5.6%	15.4%	20.0%	46.2%	38.5%	23.1%	30.8%
92	부산광역시	동래구	0.0%	0.0%	0.0%	8.3%	25.0%	16.7%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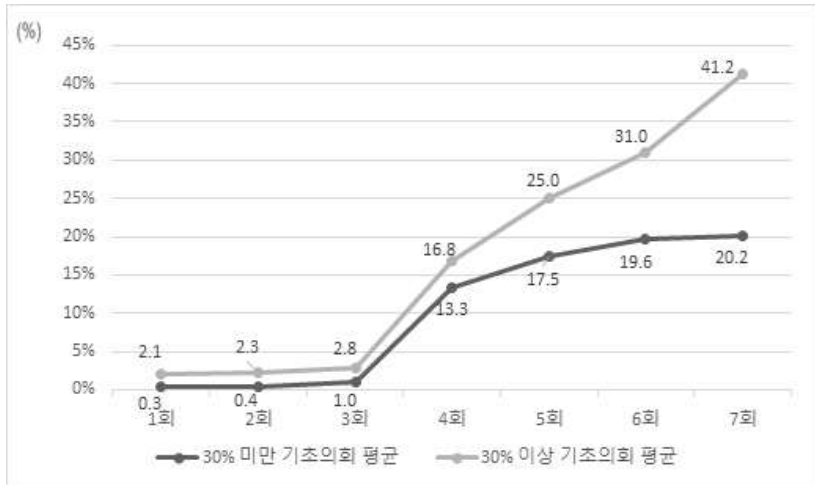
No	시도	구·시·군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93	서울특별시	송파구	2.2%	3.6%	0.0%	12.5%	34.6%	38.5%	30.8%
94	충청남도	당진시	0.0%	0.0%	0.0%	8.3%	16.7%	25.0%	30.8%
95	충청북도	제천시	0.0%	0.0%	0.0%	7.7%	38.5%	38.5%	30.8%
96	경상북도	구미시	0.0%	0.0%	4.2%	17.4%	17.4%	8.7%	30.4%
97	광주광역시	북구	4.9%	8.3%	4.0%	25.0%	25.0%	30.0%	30.0%
98	대구광역시	북구	0.0%	0.0%	0.0%	5.0%	20.0%	20.0%	30.0%
99	대구광역시	수성구	6.5%	0.0%	0.0%	15.8%	25.0%	30.0%	30.0%
100	대전광역시	서구	3.7%	4.8%	4.8%	20.0%	30.0%	25.0%	30.0%
101	서울특별시	금천구	0.0%	0.0%	0.0%	0.0%	10.0%	10.0%	30.0%

이와같이 여성의원이 30% 이상을 차지한 의회에서 여성의원의 증가율이 그렇지 않은 의회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30% 이상 의회의 1회에서 7회까지의 선거결과를 통한 여성비율 증가현황을 전체 의회 평균의 증가율과 비교하였다. 30% 이상 의회만 묶어 평균을 낸 결과는 1회부터 7회까지 여성의원 비율 증가폭이 전체 의회의 증가폭에 비해 가파르게 나타났다.

30%이상 의회의 확대가능성을 보다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여성당선인 비율이 30%이상인 의회와 30%미만인 의회를 둘로 나눠 두 집단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보았다. 즉, 30%이상 의회의 역대선거 여성비율의 증가 현황을 30%미만 의회와의 비교를 통해 여성의원 증가 속도가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SPSS 통계분석을 위해 제7회 선거를 기준으로 30%이상 집단과 30%미만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를 적용하여 전체 선관위 당선자 원데이터 자료를 통해 30%이상 집단과 30%미만 집단의 1회에서 6회차 선거 결과의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을 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그래프 <그림-6>과 같다.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0% 이상 집단과 30% 미만 집단 모두 당선자 중 여성비율이 4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집단의 격차는 4회 이후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에서 3회까지 두 집단 간 차이는 각 1.8%p, 1.9%p, 1.8%p였지만, 4회 3.5%p, 5회 7.5%p, 6회 10.4%p로 점차 증가하다가 7회에서는 21.0%p로 두 집단간 차이가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6> 30%기준 여성당선자 변화 비율 추이



두 집단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그래프로 확인하였지만,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선거별 30% 이상 집단과 30% 미만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10>과 같다. 1회부터 7회까지 각 선거별 두 집단 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선거가 반복될수록 통계량인 T-값이 커진다는 것이다. T-값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두 값의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향후 선거에서도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1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30% 기준 분류 집단간 통계분석(T-값) 결과

구분	당선자 중 여성 비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30% 이상 기초의회 평균	2.1%	2.3%	2.8%	16.8%	25.0%	31.0%	41.2%
30% 미만 기초의회 평균	0.3%	0.4%	1.0%	13.3%	17.5%	19.6%	20.2%
T-value	3.305**	3.525**	3.221**	3.686***	6.521***	8.631***	21.301***

p<0.01, *p<0.001

제3장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운영 현황

- 제1절. 지방의회 지역구 의무공천제 제도 개요
- 제2절. 제5~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현황
- 제3절. 주요 정당의 여성의무공천제 현황 실태분석
- 제4절. 구·시·군 기초의회 주요정당 남녀 기호 배정현황

제3장.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운영 현황

제1절. 지방의회 지역구 의무공천제 제도 개요⁵⁾

1)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에 2010.3.12. 신설된 아래 조항으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본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지역구 의무공천제가 실시되고 있다. 다만 군지역을 제외하고,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 지역도 후보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52조2항의 등록무효 대상에서 해당 지역구의 시·도 및 구·시·군의원정수의 50% 추천을 못하는 경우와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를 제외하는 등의 예외 규정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 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 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52조(등록무효)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박진경 외(2017) p27-30 그대로 인용

2) 제도의 한계

이전까지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 지역구 30% 여성공천 권고 조항⁶⁾이 있음에도 여성공천에 전혀 효과를 보이지 못하자, 여성후보 의무공천을 등록무효와 연동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장되면서, 2010년에 이루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주요 논의과제로 부각되었다.

당시 본 제도를 논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등록무효를 둘러싼 위헌적 요인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여성의무공천과 등록무효 조항을 두고 여성의무공천을 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의 책임 문제임에도 해당 지역구내 기타 후보자 개인의 등록무효로 연결됨으로써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본 제도를 설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를 한 발자국이라도 더 진전시키겠다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정책적 결단에 따라서 출발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관철시키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2010년 2월 5일,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법사위 의원의 위헌 요소 우려에 대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의 답변을 보면 본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적 결단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정당의 책임을 강조하고 강제적 수단으로서의 효과성이 있을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부대의견으로 포함한 의견인 여성후보자가 등록을 포기한 경우, 등록무효화를 제외하는 규정이 이후 본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2010년 본 제도를 다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이 나눈 이야기 과정에 소수의견이 결국 부대의견으로 마련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28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2010.2.5)
 000 위원>
 ...정당이 추천 규정을 위반했는데 후보자의 책임이 아님에도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6) 공직선거법 제47조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 이게 후보자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추천한 주체는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정당이 책임을 추궁해야지요. 정당에 불이익을 주고 정당을 처벌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됩니다.

000 위원

...이것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한 발자국이라도 더 진전시키겠다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정책적 결단에 따라서 출발했다고 볼 때... 국회의원 지역구 내에서 여성 신청자가 1명도 없다면 이 조항은 적용 안한다면 해당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이나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오히려 여성 정치 지망생에게 공천 신청하지 마라, 이러한 식으로 해서 오히려 여성이 정치에 진입하기 더 어렵게 되는 그러한 실태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

000 위원

정당 보조금 삭감 문제도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시점에서 여성 정치참여를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데 조금 방점을 두고 논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등록이 무효 되는 걸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하신 대로 일종의 연좌제가 되는 것 아니냐, 또 과잉 아니냐, 자기책임원리의 관계에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에서는 무효 되는 사례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정당이 이 입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성 공천을 하지 않아서 다른 공천자가 무효 되는 것을 알면서 그런 공천을 하겠느냐, 그래서 입법을 이론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으로서 무효가 되지 않도록—그런 사태가 되지 않도록—현실에서는 공천을 해 낼 것이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했다는 점을,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중략)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본 법률안을 의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포함하는 정도로 합의하고 통과시켰다. 제28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안을 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여성후보자추천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하여 여성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지나치고, 정당이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추천된 후보자의 책임이 아님에도 추천된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추천된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여 결과적으로 피선거권상실로 당선무효시키는 것이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제2절. 제5~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현황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제7회까지 여성 공천 및 당선 현황을 전수 조사하였다. 정당명은 각 선거 때마다 변화가 있었는데 지방선거 당시의 정당명을 기재하기로 하였다. 먼저 시·도 광역의회의 여성 공천 및 당선 현황을 제5회 선거부터 살펴보겠다. 다만 공천 현황의 경우 실제 정당별 공천자 명단과 선관위 후보등록자 간 차이가 있고, 정당이 제출한 공천자 명단은 선관위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아 선관위 후보등록 명부를 중심으로 공천 현황을 볼 수밖에 없다⁷⁾. 따라서 이후 명부에 의한 분석 및 설명의 경우 여성 후보 등록 현황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였다. 다만 본 제도의 취지가 여성후보등록까지의 기대를 반영하여 필요에 따라 ‘공천’을 정당의 후보공천자 명부와 등록까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면서 설명하였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시도의회 선거구는 총 680개로 지역구 의원 정수 680명, 비례의원 정수는 81명이다. 한나라당은 지역구의 경우 572곳에 후보 등록이 이루어졌고, 84.1%에 해당된다. 이 중 여성후보 등록은 53명으로 9.3%에 해당되고, 53명의 여성후보 중 20명 당선되었다. 민주당은 지역구의 경우 450곳에 후보 등록이 이루어졌고, 66.2%에 해당된다. 이 중 여성후보 등록은 41명으로 9.1%에 해당되고 41명 여성후보 중 26명이 당선되었다. 민주노동당은 73명의 후보 등록이 이루어졌고, 이 중 여성후보 19명 등록과 7명이 당선되었다. 그 외 진보신당 5명의 여성후보 등록자 중 1명이 당선되었으며, 미래연합, 자유선진당에서는 3명의 여성이 후보등록을 하였으나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정당별 광역의회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 현황은 <표-11>과 같다.

7) 정당별 공천자 명단은 각 지역 선관위에 접수당시 보관하고 있으나, 이를 지난 박진경 외 (2017) 연구에서도 여성후보 무등록 지역 상황을 선관위에 문의하자, 당시 개인정보침해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음

<표-1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시·도 광역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 현황

정당	전체	의석수 대비 공천(등록)자 비율	전체 등록자수 대비 여성		여성 등록자 대비 여성당선자	
			여성 수	비율	여성당선	비율
한나라당	572	84.1%	53	9.3%	20	37.7%
민주당	450	66.2%	41	9.1%	26	63.4%
진보신당	26	3.8%	5	19.2%	1	20.0%
미래연합	37	5.4%	3	8.1%	-	0.0%
자유선진당	78	11.5%	3	3.8%	-	0.0%
민주노동당	73	10.7%	19	26.0%	7	36.8%
국민참여당	52	7.6%	4	7.7%	-	0.0%
국민중심연합	14	2.1%	1	7.1%	-	0.0%
친박연합	17	2.5%	1	5.9%	-	0.0%
평화민주당	11	1.6%	1	9.1%	-	0.0%
창조한국당	5	0.7%	-	-	-	-
국제녹색당	1	0.1%	-	-	-	-
건국당	1	0.1%	-	-	-	-
무소속	438	64.4%	24	5.5%	1	4.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시·도 광역의회 전체 정수는 지역구 705석이고 비례의석 정수는 84석이다. 새누리당은 지역구의 경우 705석 중 595석에 공천하여 84.4%를 공천하였다. 여성 후보등록은 46명으로 7.7%에 해당된다. 이 중 25명이 당선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의 경우 538석에 후보 등록하여 76.3%에 해당된다. 이 중 여성후보 등록은 67명으로 12.5%에 해당하였다. 이 중 33명이 당선되었다. 그 외 통합진보당이나 노동당이 36명, 22명의 여성후보가 등록하고 무소속으로 22명의 여성이 후보등록 하였으나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였다. 정당별 광역의회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 현황은 <표-12>와 같다.

<표-1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시·도 광역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 현황

정당	전체	의석수 대비 후보등록(등록)자 비율	전체 등록자수 대비 여성		여성 등록자 대비 여성당선자	
			여성 수	비율	여성당선	비율
새누리당	595	84.4%	46	7.7%	25	54.3%
새정치민주연합	538	76.3%	67	12.5%	33	49.3%
통합진보당	114	16.2%	36	31.6%	-	0.0%
정의당	12	1.7%	2	16.7%	-	0.0%
노동당	68	9.6%	22	32.4%	-	0.0%
녹색당	3	0.4%	1	33.3%	-	0.0%
새정치당	5	0.7%	2	40.0%	-	0.0%
한나라당	-	-	-	-	-	-
무소속	384	-	22	5.7%	-	0.0%

* 여성후보등록자 비율은 각 정당 전체 후보등록자 중 비율, 여성당선자 비율은 여성후보등록자 중 당선자 비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관리시스템 참조하여 재정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 광역의회 전체정수는 737석이고, 비례대표는 87석이다. 지역구를 대상으로 정당별 여성후보등록자 및 당선자 현황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은 후보등록 611명 중 여성이 78명으로 12.8%에 해당된다. 이 중 당선은 8명으로 10.3%를 차지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등록 704명 중 105명이 여성이며, 이 중 89명이 당선되어 84.8%라는 높은 당선율을 보였다. 정의당의 경우 17명 중 3명의 여성후보와 이 중 1명이 당선되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전체 후보등록자 중 여성의 비율이 18.3%, 12.1%였으며 이 중 당선인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정당별 광역의회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 현황은 <표-13>과 같다.

<표-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시·도 광역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 현황

정당	전체	의석수 대비 공천(등록)자 비율	전체등록자수 대비 여성		여성 등록자 대비 여성당선자	
			여성 수	비율	여성당선	비율
자유한국당	611	82.9%	78	12.8%	8	10.3%
더불어민주당	704	95.5%	105	14.9%	89	84.8%
바른미래당	208	28.2%	38	18.3%	-	0.0%
정의당	17	2.3%	3	17.6%	1	33.3%
민주평화당	74	10.0%	9	12.1%	-	0.0%
민중당	64	8.7%	23	31.1%	-	0.0%
노동당	6	0.8%	-	0.0%	-	0.0%
대한애국당	5	0.7%	-	0.0%	-	0.0%
국제녹색당	1	0.1%	-	0.0%	-	0.0%
한국국민당	1	0.1%	-	0.0%	-	0.0%
홍익당	1	0.1%	-	0.0%	-	0.0%
무소속	204	27.7%	18	8.8%	-	0.0%

* 여성후보등록자 비율은 각 정당 전체 후보등록자 중 비율, 여성당선자 비율은 여성후보등록자 중 당선자 비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관리시스템 참조하여 재정리

다음은 기초의회 여성후보 공천 및 당선현황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살펴 보겠다. 5회 선거의 구·시·군 선거구는 총 1,039개로 지역구의원은 2,512명, 비례 대표의원은 376명이다. <표-14>를 통해 정당별 시·군·구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및 당선현황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1,905개의 선거구에 후보가 등록하였고, 이 중 194명이 여성으로 10.2%에 해당된다. 여성후보등록자중 당선자는 115명으로 59.3%를 차지하였다. 민주당은 1,293개의 선거구에 후보가 등록하였으며, 이 중 11.8%인 153명이 여성이다. 여성후보 중 당선자인 112명으로 73.2%에 달한다. 그 외 민주노동당이 77명의 여성이 등록하여 26명이 당선되었고, 자유선진당의 14명의 후보 중 5명이 당선되었다. 그 외 진보신당 5명, 친박연합 1명, 창조한국당 1명의 여성이 당선되었다. 정당별 기초의회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현황은 아래의 <표-14>와 같다.

<표-14>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구·시·군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 현황

정당	전체	의석수 대비 공천(등록)자 비율	전체등록자수 대비 여성		여성 등록자 대비 여성당선자	
			여성 수	비율	여성당선	비율
한나라당	1,905	75.8%	194	10.2%	115	59.3%
민주당	1,293	51.5%	153	11.8%	112	73.2%
진보신당	88	3.5%	25	28.4%	5	20.0%
미래연합	87	3.5%	9	10.3%	-	0.0%
자유선진당	243	9.7%	14	5.8%	5	35.7%
민주노동당	224	8.9%	77	34.4%	26	33.8%
국민참여당	145	5.8%	13	9.0%	-	0.0%
국민중심연합	33	1.3%	2	6.1%	-	0.0%
친박연합	47	1.9%	3	6.4%	1	33.3%
평화민주당	29	1.2%	2	6.9	-	0.0%
창조한국당	6	0.2%	1	16.7%	1	100%
사회당	7	0.3%	1	14.3%	-	0.0%
무소속	1743	69.4%	69	4.0%	9	13.0%

* 여성후보등록자 비율은 각 정당 전체 후보등록자 중 비율, 여성당선자 비율은 여성후보등록자 중 당선자 비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관리시스템 참조하여 재정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구·시·군 기초의회는 전체 의원정수 2,898석 중 지역구 2,519석, 비례 379석이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2,519석 중 1,858석에 후보 등록하여 73.8%를 후보 등록하였고, 여성후보 등록자는 278명으로 1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83명이 당선되었다.

세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의 경우 1,356석에 후보 등록하여 53.8%가 후보 등록하였다. 이 중 여성은 221명으로 16.3%가 후보 등록하였고, 157명의 여성이 당선되었다. 그 외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이 98명, 23명을 여성으로 후보 등록하고 무소속으로 130명의 여성이 출마하여, 11명, 5명, 12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였으나 주요 정당을 제외하고는 저조한 실적이다. 정당별 기초의회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현황은 아래의 <표-15>와 같다.

<표-15>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구·시·군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 현황

정당	전체	의석수 대비 공천(등록)자 비율	전체등록자수 대비 여성		여성 등록자 대비 여성당선자	
			여성 수	비율	여성당선	비율
새누리당	1,858	73.8%	278	15.0%	183	65.8%
새정치민주연합	1,356	53.8%	221	16.3%	157	71.0%
통합진보당	225	7.8%	98	43.6%	11	11.2%
정의당	94	3.2%	23	24.5%	5	21.7%
노동당	25	0.9%	5	20.0%	1	20.0%
녹색당	7	0.2%	2	28.6%	-	0.0%
새정치당	11	0.4%	-	0.0%	-	-
한나라당	1	0%	-	0.0%	-	-
무소속	1,770	61.1%	130	7.3%	12	9.2%

* 여성후보등록자 비율은 각 정당 전체 후보등록자 중 비율, 여성당선자 비율은 여성후보등록자 중 당선자 비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관리시스템 참조하여 재정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구·시·군 기초의회의 선거구수는 지역구 1,035개, 비례대표는 226개로 총 1,261개이다. 전체 의원정수는 2,927석으로 이 중 지역구 2,541석, 비례 385석이다.

구·시·군 기초의회의 정당별 여성 공천현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전체 1,492명 중 279명이 여성으로 18.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 당선자는 152명으로 후보 등록자 중 54.2%가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705명의 후보 등록자 중 397명이 여성으로 23.3%의 비율을 보였다. 무엇보다 여성후보등록자 중 352명이 당선되어 88.7%라는 높은 당선율을 보이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바른미래당은 569명의 후보 등록자 중 97명이 여성이었으며, 정의당은 133명 중 32명, 민주평화당은 209명 중 16명이 여성이다. 당선자 바른미래당 2명(2.1%), 정의당 4명(12.5%), 민주평화당 4명(25%)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기초의회 여성 후보 등록 및 당선현황은 아래의 <표-16>과 같다.

<표-1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구·시·군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등록 및 당선 현황

정당	전체	의석수 대비 공천(등록)자 비율	전체등록자수 대비 여성		여성 등록자 대비 여성당선자	
			여성 수	비율	여성당선	비율
자유한국당	1,492	58.7%	279	18.7%	152	54.5%
더불어민주당	1,705	67.1%	397	23.3%	352	88.7%
바른미래당	569	22.4%	97	17.0%	2	2.1%
정의당	133	5.2%	32	24.1%	4	12.5%
민주평화당	209	8.2%	16	7.7%	4	25%
민중당	146	5.7%	62	42.5%	2	3.2%
노동당	8	0.3%	4	50%	-	0.0%
대한애국당	40	1.6%	7	17.5%	-	0.0%
국제녹색당	12	0.5%	6	50%	-	0.0%
우리미래당	5	0.2%	2	40%	-	0.0%
대한당	1	0.04%	-	0.0%	-	0.0%
한국국민당	1	0.04%	-	0.0%	-	0.0%
새누리당	1	0.04%	-	0.0%	-	0.0%
무소속	1,001	39.4%	91	9.1%	10	11%

* 여성후보등록자 비율은 각 정당 전체 후보등록자 중 비율, 여성당선자 비율은 여성후보등록자 중 당선자 비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관리시스템 참조하여 재정리

이상에서 보듯이 여성의무공천제가 실시한 이후 세차례의 선거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공천 및 당선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개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본 제도의 실태를 보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지난 7회 구·시·군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당선 결과는 전체 385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238석으로 61.8%, 자유한국당 133석 34.5%로 두 정당이 96.4%를 차지하고 그 외 정당⁸⁾이 14석을 나눠 가졌다. 이는 구·시·군 기초의회의 비례의석이 대부분 2석 이하라 두 정당의 독식이 제도의 원천적 한계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8) 정의당 9석, 민주평화당 3석, 바른미래당 2석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표-17〉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의석 정당별 당선자수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합
기초의회 비례의석	133명	238	9	3	2	385
	34.5%	61.8%	2.3%	0.8%	0.5%	100%
광역의회 비례의석	24	47	10	2	4	87
	27.6%	54.0%	11.5%	2.3%	4.6%	100%

제3절. 주요정당의 여성 의무공천제 현황 실태분석

본 장에서는 여성 의무공천제가 실시된 이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여성공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10년 제5회, 2014년 제6회,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후보 명단을 통해 주요 정당별 공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주요 정당으로는 5회는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6회는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7회는 당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한정하고, 다른 야당들은 제외하였다. 두 정당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단위 공천이 이루어지는 정당이여야 하며, 기호에 따른 당선 결과를 함께 보기 위해서는 당선자로 적절한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정당은 당시 여당과 제1야당으로 국한하여 분석하는 것이 의미있다는 판단에서이다.

1) 제5회~7회 선거 국회의원 지역구별 여성후보 등록 현황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의무공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지난 제 5회, 제6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전체 명부를 통해, 주요 정당의 여성공천의무제의 실제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 제47조5항에 근거해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국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시도 및 구시군의회 후보 중 여성을 1인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의무공천제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시행 이후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여성후보가 한 명도 발견되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여러 군데 나타났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별 여성후보 수를 파악하기 위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주요 정당을 비교해서 분석해보았다. 〈표-18〉은 5회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 지역구별 여성후보 등록자 수 현황이다. 여성후보 의무공천제 시행 이후 첫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1명도 등록되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한나라당 47곳, 민주당 96곳에 달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6곳(민주당), 부산광역시 14곳(한나라당 2, 민주당 12), 대구광역시 12곳(한나라당 1, 민주당 11), 인천광역시 3곳(한나라당 1, 민주당 2), 광주광역시 9곳(한나라당 8, 민주당 1), 대전광역시 3곳(민주당 3개), 울산광역시 8곳(한나라당 2개, 민주당 6개) 등 광역시 이상 단위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다.

<표-18>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지역구별 여성후보 등록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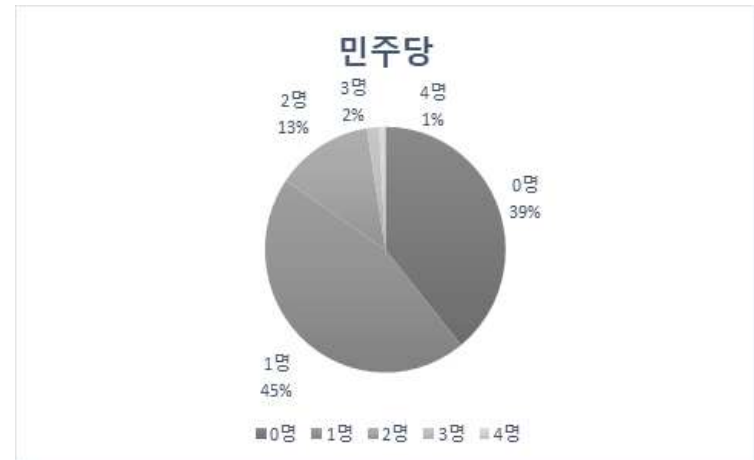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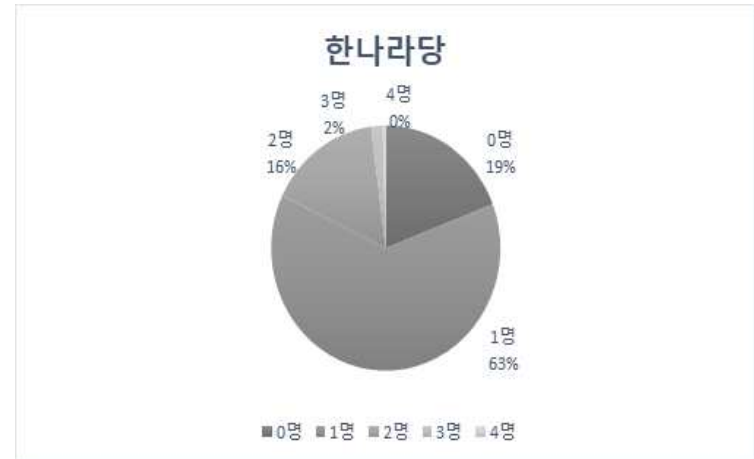
등록자수	한나라당(지역구 수)	민주당(지역구 수)
전국		
0명	47	96
1명	154	111
2명	39	32
3명	4	4
4명	1	2
서울특별시		
0명	-	금천구, 노원병, 동대문갑, 동대문을, 양천을, 영등포을 (6개)
1명	강남갑, 강남을, 강동갑, 강동을, 강북갑, 강북을, 강서갑, 강서를, 광진갑, 광진을, 구로갑, 구로를, 금천, 노원갑, 노원을, 노원병, 도봉을, 동대문갑, 동대문을, 동작갑, 동작을, 마포갑, 마포을, 서대문갑, 서대문을, 서초갑, 중구, 성동갑, 성동을, 성북갑, 성북을, 송파갑, 송파을, 송파병, 양천을, 영등포을, 용산구, 은평갑, 중랑갑 (39개)	강남갑, 강남을, 강동갑, 강북갑, 강북을, 강서갑, 강서를, 관악갑, 광진갑, 광진을, 구로갑, 노원갑, 노원을, 도봉갑, 도봉을, 동작갑, 동작을, 마포을, 서대문갑, 서초을, 중구, 성동갑, 성동을, 송파갑, 송파을, 영등포갑, 용산구, 은평갑, 종로구, 중랑갑 (30개)
2명	관악갑, 관악을, 도봉갑, 서초을, 양천갑, 영등포갑, 은평을, 종로구 (8개)	강동을, 관악을, 구로를, 서대문을, 서초갑, 성북을, 송파병, 양천갑, 은평을, 중랑을 (10개)
3명	-	마포갑 (1개)
4명	중랑을 (1개)	성북갑 (1개)
부산광역시		
0명	남구를, 부산진구를 (2개)	북구강서갑, 남구갑, 남구를, 중구동구, 동래구, 부산진구를, 사하갑, 서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기장갑, 해운대기장을 (12개)
1명	북구강서갑, 북구강서를, 금정, 동래구, 사상구, 사하갑, 서구, 영도구, 해운대기장갑, 해운대기장을 (10개)	북구강서를, 부산진구갑, 사상구, 사하을, 영도구 (5개)
2명	남구갑, 중구동구, 부산진구갑, 사하을, 수영구, 연제구 (6개)	금정구 (1개)
대구광역시		
0명	달서군 (1개)	중구남구, 달서을, 달서병, 달서군, 동구갑, 동구를, 북구갑, 북구를, 서구, 수성갑, 수성을 (11개)
1명	달서갑, 달서을, 동구갑, 동구를, 북구갑, 북구를, 서구, 수성을 (8개)	달서갑 (1개)
2명	중구남구, 달서병 (2개)	-

등록자수	한나라당(지역구 수)	민주당(지역구 수)
3명	수성갑 (1개)	-
인천광역시		
0명	서구강화갑 (1개)	서구강화갑, 남동을 (2개)
1명	서구강화을, 계양갑, 계양을, 남구를, 남동갑, 부평갑, 부평을, 연수구 (8개)	서구강화을, 계양갑, 계양을, 남구갑, 부평갑, 부평을, 연수구 (7개)
2명	남구갑, 남동을, 중구동구용진 (3개)	남구를, 남동갑, 중구동구용진 (3개)
광주광역시		
0명	광산갑, 광산을, 동구, 남구, 북구갑, 북구를, 서구갑, 서구를 (8개)	광산을 (1개)
1명	-	동구, 서구를 (2개)
2명	-	광산갑, 남구, 북구갑, 서구갑 (4개)
3명	-	북구를 (1개)
대전광역시		
0명	-	대덕구, 서구를, 유성구 (3개)
1명	대덕구, 서구를, 중구 (3개)	동구, 중구 (2개)
2명	동구, 서구갑, 유성구 (3개)	서구갑 (1개)
울산광역시		
0명	남구갑, 울주군 (2개)	남구갑, 남구를,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6개)
1명	동구, 북구 (2개)	
2명	남구를, 중구 (2개)	
경기도		
0명	부천소사구, 안산단원을, 여주양평 (3개)	여주양평, 파주, 화성갑 (3개)
1명	고양덕양갑, 고양덕양을, 고양일산동구, 고양일산서구, 과천의왕, 광명갑, 광명을,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갑, 부천오정구, 성남수정구, 성남중원구, 성남분당을, 수원정안, 수원관선, 수원팔달, 시흥을, 안산상록갑, 안산상록을, 안산단원갑, 안성, 안양동안을, 안양만안구, 양주동두천, 포천연천, 오산, 용인처인, 용인기흥, 의정부갑, 의정부을, 이천, 파주, 평택갑, 평택을, 하남, 화성갑, 화성을 (41개)	고양덕양갑, 고양덕양을, 과천의왕, 광명갑, 광명을,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갑, 남양주를, 부천원미갑, 부천원미를, 부천소사구, 부천오정구, 성남수정구, 성남중원구, 수원영통, 시흥갑, 시흥을, 안산상록갑, 안산상록을, 안산단원갑, 안산단원을, 안성, 안양동안갑, 안양동안을, 안양만안구, 양주동두천, 포천연천, 오산, 용인처인, 용인기흥, 평택을, 하남, 화성을 (45개)
2명	남양주를, 부천원미를, 성남분당갑, 수원영통, 시흥갑, 용인수지 (6개)	고양일산서구, 성남분당을 (2개)
3명	부천원미갑 (1개)	고양일산동구 (1개)
강원도		
0명	홍천형성 (1개)	강릉, 동해삼척, 속초고성양양, 철원화천양구인제, 태백영월평창정선 (5개)
1명	강릉, 동해삼척, 속초고성양양, 철원화천양구인제 (4개)	-
2명	춘천, 원주 (2개)	춘천, 홍천형성 (2개)
3명	태백영월평창정선 (1개)	원주 (1개)
충청북도		

등록자수	한나라당(지역구 수)	민주당(지역구 수)
0명	보은옥천영동 (1개)	증평진천괴산음성, 보은옥천영동, 청주상당, 청주흥덕갑, 청원 (5개)
1명	증평진천괴산음성, 제천단양, 청주상당, 청주흥덕갑, 청원 (5개)	-
2명	충주 (1개)	제천단양, 청주흥덕을, 충주 (3개)
3명	청주흥덕을 (1개)	-
충청남도		
0명	부여청양 (1개)	공주연기, 당진, 보령서천, 서산태안 (4개)
1명	공주연기, 논산계룡금산, 당진, 보령서천, 서산태안, 홍성예산, 아산, 천안갑, 천안을 (9개)	부여청양, 논산계룡금산, 홍성예산, 아산, 천안갑, 천안을 (6개)
전라북도		
0명	정읍, 고창부안, 군산, 김제완주, 남원순창, 진안무주장수임실, 익산갑, 익산을, 전주완산갑, 전주완산을, 전주덕진구 (11개)	고창부안, 익산을, 전주완산을, 전주덕진구 (4개)
1명	-	정읍,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3개)
2명	-	군산, 남원순창, 익산갑 (3개)
3명	-	-
4명	-	전주완산갑 (1개)
전라남도		
0명	장흥강진영암, 순천, 담양곡성구례, 광양, 나주화순, 함평영광장성, 목포, 무안신안, 해남완도진도, 여수갑, 여수을 (11개)	고흥보성, 담양곡성구례, 함평영광장성, 무안신안, 해남완도진도, 여수을 (6개)
1명	고흥보성 (1개)	장흥강진영암, 광양, 나주화순 (3개)
2명	-	순천, 목포, 여수갑 (3개)
경상북도		
0명	포항남구울릉 (1개)	경산청도, 영천, 경주, 고령성주칠곡, 구미갑, 구미를, 상주, 김천, 영주, 문경예천, 안동, 영양영덕봉화울진, 포항북구, 포항남구울릉 (14개)
1명	경산청도, 영천, 고령성주칠곡, 구미갑, 구미을, 상주, 영주, 문경예천, 안동, 영양영덕봉화울진 (10개)	군위의성청송 (1개)
2명	경주, 군위의성청송, 김천, 포항북구 (4개)	-
경상남도		
0명	김해을, 산천함양거창, 의령함안합천, 진주을 (4개)	거제, 통영고성, 김해을, 밀양창녕, 사천, 남해하동, 의령함안합천, 양산, 진주갑, 진주을, 창원갑, 창원을, 마산갑, 마산을 (14개)
1명	거제, 통영고성, 밀양창녕, 사천, 남해하동, 양산, 창원갑, 창원을, 마산갑, 마산을, 진해 (11개)	김해갑, 산천함양거창, 진해 (3개)
2명	김해갑, 진주갑 (2개)	-
제주도		
0명	-	-
1명	제주갑, 제주을, 서귀포 (3개)	제주갑, 제주을, 서귀포 (3개)

주요정당이 여성후보를 몇 명 공천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으로 나타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많게는 4명까지 공천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그림을 보면 한나라당(63%), 민주당(45%) 1명 공천을 한 선거구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7>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지역구별 여성후보 등록자수 현황



여성후보 중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여성후보 공천자 수의 지역별 현황을 아래 <표-19> 와 같이 구분해 보았다. 한나라당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에만 한 명의 여성후보도 공천하지 않았으며, 민주당은 울산광역시에 한 명의 여성후보도 공천하지 않았다. 광역후보가 아닌 기초의회후보에만 여성을 공천한 지역의 경우 한나라당은 전라남도, 민주당은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세 곳이었다.

<표-19>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정당의 여성후보 등록현황

시도	지역구 수	한나라당(광역/기초)	민주당(광역/기초)
서울특별시	48	11/48	14/43
부산광역시	18	2/20	1/6
대구광역시	12	5/10	0/1
인천광역시	12	2/12	2/11
광주광역시	8	0/0	1/12
대전광역시	6	3/6	1/3
울산광역시	6	2/4	0/0
경기도	51	15/41	14/38
강원도	8	2/9	2/5
충청북도	8	1/9	1/5
충청남도	10	1/8	1/5
전라북도	11	0/0	0/13
전라남도	12	0/1	1/8
경상북도	15	4/14	0/1
경상남도	17	3/12	1/2
제주도	3	3/0	3/0
합계	245	54/194	42/153

다음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후보 등록자수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새누리당은 38곳, 새정치민주연합은 58곳의 지역구에서 여성후보를

한 명도 공천하지 않았다. 5회와 마찬가지로 광역시 단위로만 살펴보면, 여성후보가 한 명도 없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서울특별시 3곳(새누리당 1, 새정치민주연합 2), 부산광역시 5곳(새정치민주연합 5), 대구광역시 10곳(새누리당 1, 새정치민주연합 9), 인천광역시 7곳(새누리당 3, 새정치민주연합 4), 광주광역시 8곳(새누리당 8), 울산광역시 6곳(새누리당 2, 새정치민주연합 4)등 광역시 단위에서만 39개로 나타났다. <표-20>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상당수의 지역구에서 여성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고 있다. 또한 3명 이상을 공천한 지역구는 매우 적게 분포하고 있어 대다수의 지역구에서 1, 2명을 공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지역구별 여성후보 등록자수 현황

등록자수	새누리당(지역구 수)	새정치민주연합(지역구 수)
전국		
0명	38	58
1명	116	109
2명	68	57
3명	19	18
4명	4	4
5명이상	1	0
서울특별시		
0명	종량갑 (1개)	동대문갑, 동대문을 (2개)
1명	성동갑, 성동을, 동대문을, 강북을, 도봉갑, 노원갑, 노원병, 은평갑, 서대문을, 양천갑, 강서을, 구로을, 금천, 영등포을, 동작갑, 동작을, 관악을, 서초을, 송파병, 강동갑, 강동을 (21개)	중구, 성동갑, 광진갑, 광진을, 종량을, 성북을, 강북을, 도봉갑, 노원병, 서대문을, 마포갑, 마포을, 양천갑, 양천을, 강서갑, 구로갑, 구로을, 영등포을, 강남을, 송파갑, 강동갑, 강동을 (22개)
2명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갑, 종량을, 성북갑, 성북을, 도봉을, 노원을, 서대문갑, 양천을, 마포갑, 마포을, 강서갑, 구로갑, 영등포갑, 관악갑, 서초갑, 강남갑, 강남을, 송파갑, 송파을 (22개)	종로구, 용산, 성동을, 종량갑, 강북갑, 도봉을, 노원갑, 노원을, 은평갑, 서대문갑, 강서을, 금천, 영등포갑, 동작갑, 동작을, 관악을, 서초갑, 강남갑, 송파을 (19개)
3명	광진을, 동대문갑, 강북갑, 은평을 (4개)	은평을, 서초을, 송파병 (3개)
4명	-	성북갑, 관악갑 (2개)
부산광역시		
0명	-	중구동구, 동래구, 해운대지장을, 사하갑, 연제구 (5개)
1명	서구, 부산진구를, 동래구, 남구갑, 남구을, 북구, 강서갑, 사하갑, 사하을, 금정구 (9개)	남구갑, 남구을,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를, 북구, 강서갑, 해운대지장갑, 사하을, 수영구 (9개)
2명	영도구, 부산진구갑, 북구강서을, 해운대지장갑,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7개)	부산진구갑, 사상구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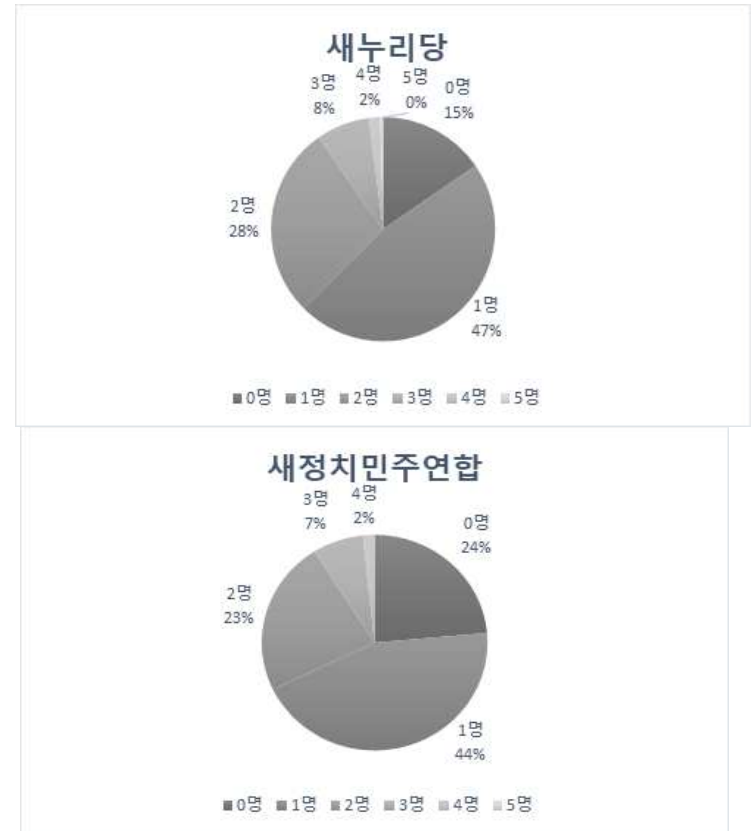
등록자수	새누리당(지역구 수)	새정치민주연합(지역구 수)
3명	중구동구 (1개)	북구강서을, 금정구 (2개)
4명	해운대기장을 (1개)	-
대구광역시		
0명	달성군 (1개)	중구남구, 동구갑, 동구을, 서구, 북구갑, 북구을, 수성을, 달서을, 달성군 (9개)
1명	중구남구, 북구갑, 달서갑, 달서을 (4개)	수성갑, 달서갑, 달서병 (3개)
2명	동구갑, 동구을, 서구, 북구을 (4개)	-
3명	수성갑, 수성을, 달서병 (3개)	-
인천광역시		
0명	계양갑, 계양을, 서구강화을 (3개)	남구갑, 남동을, 부평을, 서구강화을 (4개)
1명	중구동구용진, 남구갑, 남구을, 연수구, 남동갑, 남동을, 부평갑, 부평을 (8개)	부평갑, 계양갑, 계양을, 서구강화갑 (4개)
2명	서구강화갑 (1개)	남구을, 연수구, 남동갑 (3개)
3명	-	중구동구용진 (1개)
광주광역시		
0명	동구, 서구갑, 서구을, 남구,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갑, 광산구을 (8개)	-
1명	-	서구갑, 서구을 (2개)
2명	-	동구, 남구, 북구갑, 북구을 (4개)
3명	-	광산갑, 광산을 (2개)
대전광역시		
0명	-	-
1명	동구, 중구, 서구갑, 서구을, 유성구 (5개)	중구, 대덕구 (2개)
2명	대덕구 (1개)	동구, 서구을, 유성구 (3개)
3명	-	서구갑 (1개)
울산광역시		
0명	북구, 울주군 (2개)	중구, 남구갑, 남구을, 울주군 (4개)
1명	남구갑, 남구을 (2개)	동구, 북구 (2개)
2명	동구, 중구 (2개)	-
세종특별자치시		
0명	-	-
1명	세종 (1개)	-
2명	-	세종 (1개)
경기도		
0명	안산상록갑 (1개)	여주양평, 포천연천 (2개)

등록자수	새누리당(지역구 수)	새정치민주연합(지역구 수)
1명	수원을, 수원병, 성남수정구, 성남분당갑, 고양덕양을, 고양일산동구, 고양일산서구, 용인갑, 부천원미갑, 부천오정구, 안산상록을, 안산단원갑, 안산단원을, 안양동안갑, 안양동안을, 남양주갑, 남양주를, 화성갑, 평택갑, 평택을, 의정부을, 시흥갑, 시흥을, 군포, 파주갑, 파주을, 광명갑, 광명을, 광주, 오산, 김포, 안성, 하남, 양주동두천 (34개)	수원갑, 수원병, 성남수정구, 성남중원구, 성남분당갑, 고양덕양갑, 용인갑, 부천원미갑, 부천소사구, 부천오정구, 안산상록갑, 안산상록을, 안산단원갑, 안양동안갑, 안양동안을, 화성갑, 화성을, 평택갑, 평택을, 의정부갑, 의정부을, 시흥을, 파주갑, 파주을, 광명갑, 광명을, 김포, 광주, 오산, 구리, 안성, 하남, 이천, 양주동두천 (34개)
2명	수원정, 성남중원구, 고양덕양갑, 부천원미을, 부천소사구, 안양만안구, 화성을, 의정부갑, 이천, 구리, 여주양평, 포천연천 (12개)	수원을, 수원정, 고양덕양을, 고양일산서구, 용인을, 용인병, 부천원미을, 안산단원을, 남양주갑, 남양주을, 시흥갑, 군포, 과천의왕, 성남분당을 (14개)
3명	수원갑, 성남분당을, 용인을, 과천의왕 (4개)	고양일산동구 (1개)
4명	용인병 (1개)	안양만안구 (1개)
강원도		
0명	-	속초고성양양 (1개)
1명	원주를, 강릉, 홍천횡성 (3개)	원주를, 강릉, 동해삼척, 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 (5개)
2명	원주갑, 속초고성양양 (2개)	춘천, 원주갑, 태백영월평창정선 (3개)
3명	동해삼척, 태백영월평창정선, 철원화천양구인제 (3개)	-
4명	-	-
5명	춘천 (1개)	-
충청북도		
0명	-	청주상당구, 청주흥덕을, 청원 (3개)
1명	청주상당구, 청주흥덕갑, 보은옥천영동, 진천괴산증평음성, 청원 (5개)	청주흥덕갑, 보은옥천영동 (2개)
2명	청주흥덕을, 충주 (2개)	진천괴산증평음성 (1개)
3명	-	충주, 제천단양 (2개)
4명	제천단양 (1개)	-
충청남도		
0명	홍성예산 (1개)	공주, 부여청양, 당진 (3개)
1명	천안갑, 공주, 아산, 논산계룡금산, 당진 (5개)	천안을, 아산, 서산태안, 논산계룡금산, 보령서천, 홍성예산 (6개)
2명	천안을, 서산태안 (2개)	천안갑 (1개)
3명	보령서천, 부여청양 (2개)	-
전라북도		
0명	전주완산갑, 전주완산을, 군산시, 익산갑, 익산을, 정읍, 남원순창,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 (10개)	-
1명	전주덕진구 (1개)	전주완산갑, 익산갑, 정읍, 진안무주장수임실 (4개)
2명	-	익산을, 김제완주 (2개)
3명	-	전주완산을, 전주덕진구, 고창부안, 남원순창 (4개)
4명	-	군산시 (1개)

등록자수	새누리당(지역구 수)	새정치민주연합(지역구 수)
전라남도		
0명	목포, 여수갑, 여수를, 순천곡성, 나주화순, 광양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해남진도완도, 무안신안 (11개)	무안신안 (1개)
1명	-	여수갑, 여수를, 순천곡성, 나주화순, 광양구례 (5개)
2명	-	고흥보성, 해남완도진도, 담양함평영광장성 (3개)
3명	-	목포, 장흥강진영암 (2개)
경상북도		
0명	-	포항울릉, 포항북구남구,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예천, 경산청도, 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고령성주칠곡 (13개)
1명	포항울릉, 포항북구남구, 김천, 구미갑, 구미을, 영주, 경산청도, 군위의성청송 (8개)	구미갑, 구미을 (2개)
2명	경주, 안동, 영천, 문경예천, 고령성주칠곡 (5개)	-
3명	상주, 영양영덕봉화울진 (2개)	-
경상남도		
0명	-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마산합포구, 창원마산회원구, 창원진해구, 김해갑, 밀양창녕, 거제, 양산 (8개)
1명	창원의창구, 창원마산합포구, 창원마산회원구, 창원진해구, 김해갑, 밀양창녕, 거제, 양산 (8개)	김해갑, 김해을, 밀양창녕, 거제, 양산 (5개)
2명	창원성산구, 진주갑, 진주을, 통영고성, 김해을, 의령함안합천, 산청함양거창 (7개)	-
3명	-	-
4명	사천남해하동 (1개)	-
제주도		
0명	-	-
1명	제주갑, 제주을 (2개)	제주를, 서귀포 (2개)
2명	서귀포 (1개)	제주갑 (1개)

이를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두 정당 모두 1명을 공천한 지역구가 절반에 가까운 정도로 가장 많다(<그림-8> 참조)

<그림-8>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지역구별 여성후보 등록자수 현황



지역구 여성 후보 중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여성후보 등록자 수의 지역별 현황을 아래 <표-21>과 같이 구분해 보았다. 한나라당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도 한 명의 여성후보도 공천하지 않았으며, 민주당은 울산광역시에도 한 명의 여성후보도 공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전라북도에 광역후보가 아닌 기초후보에만 여성을 공천하였으며, 민주당은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단

한 곳에서도 광역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1〉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정당의 여성후보 등록현황

시도	지역구 수	새누리당(광역/기초)	새정치민주연합(광역/기초)
서울특별시	48	8/69	19/58
부산광역시	18	2/28	6/13
대구광역시	12	4/17	0/3
인천광역시	12	1/9	3/10
광주광역시	8	0/0	4/12
대전광역시	6	0/7	3/8
울산광역시	6	2/4	0/2
세종특별자치시	1	1/0	2/0
경기도	52	13/61	18/51
강원도	9	3/18	4/7
충청북도	8	2/11	0/10
충청남도	10	1/14	1/7
전라북도	11	0/1	2/22
전라남도	11	0/0	1/16
경상북도	15	1/23	0/2
경상남도	16	4/22	2/3
제주도	3	4/0	4/0
합계	246	46/284	69/224

다음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후보 등록자수 현황을 파악하였다. 〈표-22〉를 통해 5회, 6회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단위 여성후보 공천 수를 파악해 보았다. 여성후보를 한 명도 공천하지 않은 지역구 수는 자유한국당 56곳, 더불어민주당 13곳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단위로 여성후보가 한 명도 없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보면, 서울특별시 6곳(자유한국당 6), 부산광역시 2곳(자유한국당 2), 대구광역시 5곳(자유한국당 1, 더불어민주당 4), 인천광역시 4곳(자유한국당 4), 광주광역시 8(자유한국당 8), 울산광역시 2곳(자유한국당 2) 등 광역시 단위에서 27개로 6회에 비교해서 12곳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여성후보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2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지역구별 여성후보 등록자수 현황

등록자수	자유한국당(지역구 수)	더불어민주당(지역구 수)
전국		
0명	56	13
1명	99	84
2명	59	87
3명	25	43
4명	8	18
5명 이상	6	8
서울특별시		
0명	강동을, 강서갑, 광진갑, 노원을, 은평을, 중랑갑 (6개)	-
1명	강남갑, 강남을, 강동갑, 강북갑, 강북을, 강서을, 강서병, 구로갑, 금천, 노원갑, 노원병, 도봉갑, 동작갑, 마포갑, 마포을, 서대문갑, 서초갑, 중구성동을, 성북을, 송파갑, 양천갑, 양천을, 영등포갑, 영등포을, 은평갑 (25개)	강남병, 강북갑, 강북을, 강서갑, 강서병 ⁹⁾ , 구로갑, 구로을, 금천, 도봉갑, 동대문갑, 마포갑, 서대문을, 송파을, 양천갑, 영등포을, 중랑을 (16개)
2명	강남병, 관악갑, 구로을, 도봉을, 동대문갑, 동대문을, 서대문을, 서초을, 성북갑, 송파을, 송파병, 종로구 (12개)	강남갑, 강남을, 강서을, 관악갑, 광진갑, 노원병, 도봉을, 동대문을, 동작을, 마포을, 서대문갑, 서초을, 중구성동을, 성북을, 송파갑, 송파병, 양천을, 용산, 종로 (19개)
3명	광진을, 동작을, 용산, 중랑을 (4개)	강동갑, 강동을, 관악을, 광진을, 노원을, 동작갑, 영등포갑, 은평갑, 은평을 (9개)
4명	중구성동갑 (1개) ¹⁰⁾	노원갑, 서초갑, 중랑갑 (3개)
5명	관악을 (1개)	중구성동갑 ¹⁾ , 성북갑 (2개)
부산광역시		
0명	북구강서갑, 해운대을 (2개)	-
1명	금정, 남구갑, 부산진구를, 사상, 사하을, 수영, 연제 (7개)	북구강서갑, 남구갑, 남구을, 중구영도구, 동래구, 부산진구갑, 부산진구를, 사상, 사하을, 해운대을 (10개)
2명	남구을, 중구영도, 동래, 부산진구갑, 사하갑, 서구동구, 기장 (7개)	사하갑, 수영, 연제 (3개)
3명	-	-
4명	북구강서을, 해운대갑 (2개)	북구강서을, 금정, 기장, 해운대갑 (4개)
5명	-	서구동구 (1개)
대구광역시		
0명	달성군 (1개)	달서갑, 달성군, 동구갑, 서구 (4개)
1명	달서을, 동구을, 북구갑, 서구 (4개)	수성갑, 수성을 (2개)
2명	달서병, 동구갑, 북구을, 수성갑 (4개)	중구남구, 달서을, 달서병, 북구갑 (4개)
3명	달서갑, 수성을 (2개)	동구을, 북구을 (2개)

등록자수	자유한국당(지역구 수)	더불어민주당(지역구 수)
4명	-	-
5명	중구남구 (1개)	-
인천광역시		
0명	서구를, 계양을, 남구갑, 연수갑 (4개)	-
1명	계양갑, 남구를, 남동갑, 부평갑, 연수을 (5개)	서구갑, 서구를, 계양갑, 계양을, 남구을 (5개)
2명	남동을, 부평을 (2개)	남구갑, 남동갑, 연수갑 (3개)
3명	중구동구강화옹진 (1개)	남동을, 부평갑, 부평을, 연수을 (4개)
4명	서구갑 (1개)	중구동구강화옹진 (1개)
광주광역시		
0명	광산갑, 광산을, 동구남구갑, 동구남구을, 북구갑, 북구을, 서구갑, 서구을 (8개)	-
1명	-	광산갑, 서구갑 (2개)
2명	-	동구남구을, 북구을, 서구을 (3개)
3명	-	광산을, 북구갑 (2개)
4명	-	-
5명	-	동구남구갑 (1개)
대전광역시		
0명	-	-
1명	대덕, 서구를, 유성갑, 유성을 (4개)	-
2명	동구, 서구갑 (2개)	대덕구, 서구를, 유성갑, 유성을, 중구 (5개)
3명	중구 (1개)	동구 (1개)
4명	-	서구갑 (1개)
울산광역시		
0명	남구를, 울주군 (2개)	-
1명	북구, 중구 (2개)	북구, 울주군 (2개)
2명	남구갑, 중구 (2개)	남구갑, 남구을, 중구, 북구 (4개)
세종특별자치시		
0명	-	-
1명	-	-
2명	세종 (1개)	세종 (1개)
경기도		
0명	광명갑, 광명을, 남양주병, 안산단원갑, 안산단원을, 안성, 포천가평, 이천 (8개)	남양주병 (1개)

9) 7회 지방선거 20대 국회의원 지역구 강서병 생김

10) 7회 지방선거 20대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으로 중구성동갑으로 선거구 축소됨, 중구 2명 성동갑 2명 중 4명이 여성후보임.

11) 중구 3명, 성동갑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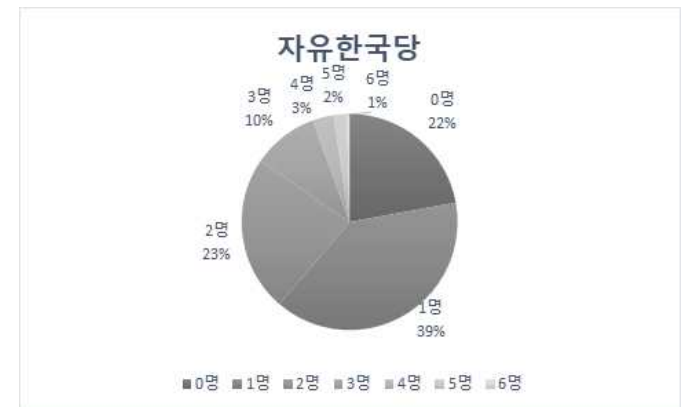
등록자수	자유한국당(지역구 수)	더불어민주당(지역구 수)
1명	고양을, 고양병, 군포을, 김포갑, 김포을, 남양주갑, 남양주을, 부천원미갑, 부천소사구, 부천오정구, 성남수정구, 성남중원구, 성남분당갑, 수원병, 수원정, 수원무, 시흥을, 안산상록갑, 안산상록을, 안양동안갑, 안양동안을, 안산민안, 양주, 오산, 용인을, 의정부갑, 파주갑, 파주을, 평택갑, 화성갑, 화성병 (31개)	고양을, 광명을, 광주을, 군포을, 김포을, 성남수정구, 성남중원구, 성남분당갑, 성남분당을, 수원병, 시흥을, 안산상록갑, 안산상록을, 안산단원갑, 안성, 양주, 포천가평, 오산, 용인병, 파주갑, 파주을, 평택갑, 화성병 (23개)
2명	광주갑, 구리, 군포갑, 부천원미을, 성남분당을, 수원갑, 수원을, 시흥갑, 용인갑, 용인정, 의정부을, 평택을, 하남, 화성을 (14개)	광명갑, 광주갑, 구리, 군포갑, 김포갑, 부천원미갑, 수원갑, 수원을, 수원정, 시흥갑, 안산단원을, 안양동안갑, 동두천연천, 여주양평, 용인갑, 용인정, 의정부갑, 의정부을, 이천, 화성을 (20개)
3명	고양갑, 고양정, 의왕과천, 광주을, 용인병 (5개)	고양갑, 고양정, 남양주갑, 남양주을, 부천소사구, 부천오정구, 수원무, 안양동안을, 안산민안, 용인을, 평택을, 하남, 화성갑 (13개)
4명	여주양평 (1개)	고양병, 의왕과천, 부천원미을 (3개)
5명	동두천연천 (1개)	-
강원도		
0명	속초고성양양 (1개)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1개)
1명	강릉, 원주갑 (2개)	강릉, 동해삼척, 원주갑 (3개)
2명	동해삼척, 원주을 (2개)	속초고성양양 (1개)
3명	춘천,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2개)	원주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2개)
4명	-	-
5명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1개)	-
6명	-	-
7명	-	춘천 (1개)
충청북도		
0명	청주상당구 (1개)	증평진천음성, 청주청원구 (2개)
1명	-	제천단양 (1개)
2명	보은옥천영동괴산, 청주서원구, 청주홍덕구, 청주청원구, 충주 (5개)	보은옥천영동괴산, 청주상당구, 청주홍덕구 (3개)
3명	증평진천음성, 제천단양 (2개)	청주서원구 (1개)
4명	-	충주 (1개)
충청남도		
0명	-	-
1명	홍성예산, 아산을, 천안갑, 천안병 (4개)	서산태안 (1개)
2명	당진, 서산태안, 아산갑, 천안을 (4개)	논산계룡금산, 당진, 보령서천, 홍성예산, 아산갑, 아산을 (6개)
3명	논산계룡금산 (1개)	천안갑, 천안을, 천안병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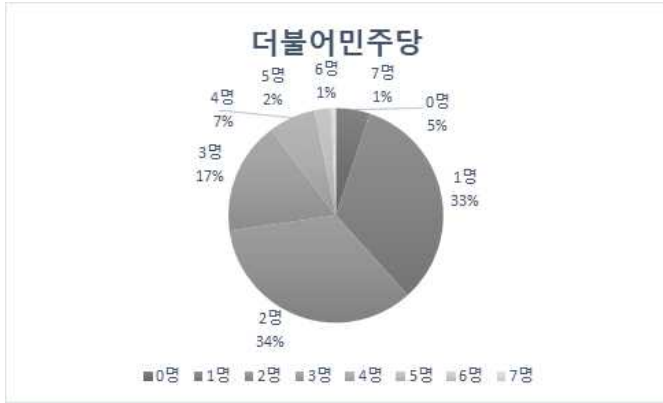
등록자수	자유한국당(지역구 수)	더불어민주당(지역구 수)
4명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2개)	공주부여청양 (1개)
전라북도		
0명	정읍고창, 군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장수, 익산갑, 익산을, 전주갑, 전주를, 전주병 (10개)	-
1명	-	익산갑, 전주갑 (2개)
2명	-	군산, 김제부안, 익산을, 전주병 (4개)
3명	-	정읍고창 (1개)
4명	-	남원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장수 (2개)
5명	-	-
6명	-	전주를 (1개)
전라남도		
0명	고흥보성장흥강진, 순천, 광양곡성구례,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목포, 영암무안신안, 해남완도진도, 여수갑, 여수를 (10개)	-
1명	-	나주화순, 목포, 영암무안신안, 여수를 (4개)
2명	-	-
3명	-	담양함평영광장성, 여수갑 (2개)
4명	-	고흥보성장흥강진, 광양곡성구례 (2개)
5명	-	순천, 해남완도진도 (2개)
경상북도		
0명	구미을 (1개)	경산, 영천청도, 경주, 영양영덕봉화울진, 포항남울릉 (5개)
1명	영주문경예천, 영천청도, 고령성주칠곡, 구미갑, 김천, 포항남울릉 (6개)	고령성주칠곡, 상주군위의성청송, 김천, 영주문경예천, 안동, 포항북 (6개)
2명	안동 (1개)	구미갑, 구미을 (2개)
3명	경산, 경주, 포항북 (3개)	-
4명	-	-
5명	영양영덕봉화울진 (1개)	-
6명	상주군위의성청송 (1개)	-
경상남도		
0명	김해을 (1개)	-
1명	거제, 김해갑, 양산갑, 양산을, 창원성산, 창원마산합포, 창원진해(7개)	김해갑, 산청함양거창합천, 양산을, 진주를, 창원성산, 창원진해 (6개)
2명	진주를, 창원의창, 창원마산합포 (3개)	거제, 통영고성, 김해을, 밀양의령함안창녕, 양산갑, 창원의창, 창원마산합포, 창원마산회원 (8개)

등록자수	자유한국당(지역구 수)	더불어민주당(지역구 수)
3명	통영고성, 밀양의령함안창녕, 산청함양거창합천, 진주갑 (4개)	사천남해하동, 진주갑 (2개)
4명	사천남해하동 (1개)	-
제주도		
0명	서귀포 (1개)	-
1명	제주갑, 제주를 (2개)	서귀포 (1개)
2명	-	제주갑 (1개)
3명	-	제주를 (1개)

정당별로 지방의회 여성후보를 몇 명이나 공천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림-9>와 같이 그래프로 도식화 해 보았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1명의 여성후보를 공천한 국회의원 지역구 수(39%)가 가장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명(33%), 2명(34%)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최저 기준인 1명 공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림-9>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지역구별 여성후보 등록자수 현황





다음 <표-23>은 두 정당의 시도별 여성후보 공천현황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지역적 열세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한 명의 여성후보도 공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지역에 광역과 기초에 여성후보를 공천하였으나, 인천광역시에서 기초의회만 여성후보를 공천하였을 뿐 광역후보를 한 명도 공천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표-2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별 여성후보 등록 현황

시도	지역구 수	자유한국당(광역/기초)	민주당(광역/기초)
서울특별시	49	14/56	18/85
부산광역시	18	2/28	8/29
대구광역시	12	4/19	4/12
인천광역시	13	4/12	0/27
광주광역시	8	0/0	6/13
대전광역시	7	2/9	3/14
울산광역시	6	2/4	6/4
세종특별자치시	1	2/0	2/0
경기도	60	30/54	24/90
강원도	8	2/15	4/14
충청북도	8	3/13	4/10
충청남도	11	4/19	6/20

전라북도	10	0/0	3/24
전라남도	10	0/0	2/27
경상북도	13	2/26	3/7
경상남도	16	5/24	6/21
제주도	3	2/0	6/0
합계	253	78/279	105/397

제5회 선거부터 제7회 선거까지 두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상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지역구에 한 명의 여성후보도 없는 경우도 있으며, 공천을 하더라도 1명에 그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후보를 공천하더라도 시·도 광역의회보다는 구·시·군 기초의회에 공천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47조5항을 지키기 위해 각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공천하더라도 시·도 광역의회 보다는 구·시·군 기초의회에 공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행 규정을 자세히 보면 1명 이상 여성의무공천 적용에 있어 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후보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광역시에서도 여성후보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52조2항의 등록무효 대상에서 해당지역구의 시도 및 구·시·군의원정수의 50% 추천을 못하는 경우와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를 제외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러한 예외규정이 여성의무공천제의 원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공천현황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52조(등록무효)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요정당의 여성의무공천제 운영 특성

주요 정당의 여성의무공천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제5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제7회 동시지방선거까지 정당별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주요 정당의 여성 등록자 수를 살펴보고 한 명의 여성후보도 등록하지 않은 지역을 보여 주었다. 정당명은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하였다.

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한 명의 여성후보도 배출하지 않은 지역구 수가 47개였으나 6회 38개, 7회 56개로 오히려 7회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분당, 탈당 등을 통해 여러 정당으로 나뉜 것이 후보자 수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 5명 이상을 공천한 지역구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표-24> 자유한국당 여성후보등록자수별 지역구 현황

(명, %)

	5회	6회	7회
0명	47 (19.2%)	38 (15.4%)	56 (22.1%)
1	154(62.9%)	116(47.2%)	99 (39.1%)
2	39(15.9%)	68(27.7%)	59 (23.3%)
3	4(1.6%)	19(7.7%)	25 (9.9%)
4	1(0.4%)	4(1.6%)	8 (3.2%)
5명이상	0(0%)	1(0.4%)	6 (2.4%)
합계	245(100%)	246(100%)	253(100%)

<표-25>를 통해 여성후보자가 없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역구를 살펴보았다. 지역적 약세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에 여성후보자가 없는 지역구 수가 가장 많다. 그 외 지역 중 5회에서 7회까지 모두 여성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곳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으로 나타났다.

<표-25>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여성후보자가 없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	한나라당(5회)	새누리당(6회)	자유한국당(7회)
서울특별시	-	중랑갑 (1개)	강동을, 강서갑, 광진갑, 노원을, 은평을, 중랑갑(6개)
부산광역시	남구를 부산진구를 (2개)	-	북구강서갑, 해운대을(2개)
대구광역시	달성군 (1개)	달성군 (1개)	달성군 (1개)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갑 (1개)	계양갑, 계양을, 서구강화을 (3개)	서구를, 계양을, 남구갑, 연수갑(4개)
광주광역시	광산갑, 광산을, 동구, 남구, 북구갑, 북구를, 서구갑, 서구를 (8개)	광산갑, 광산을, 동구, 남구, 북구갑, 북구를, 서구갑, 서구를 (8개)	광산갑, 광산을, 동구남구갑, 동구남구를, 북구갑, 북구를, 서구갑, 서구를(8개)
대전광역시	-	-	-
울산광역시	남구갑 울주군 (2개)	북구, 울주군 (2개)	남구를, 울주군(2개)
세종특별자치시	-	-	-
경기도	부천시사 안산단원을 여주양평 (3개)	안산상록갑 (1개)	광명갑, 광명을, 남양주병, 안산단원갑, 안산단원을, 안성, 포천가평, 이천(8개)

시도	한나라당(5회)	새누리당(6회)	자유한국당(7회)
강원도	홍천형성 (1개)	-	속초고성양양(1개)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 (1개)	-	청주상당구(1개)
충청남도	부여청양 (1개)	홍성예산 (1개)	-
전라북도	정읍 고창부안 군산시 김제완주 남원순창 진안무주장수임실 익산갑 익산을 전주완산갑 전주완산을 전주덕진구 (11개)	전주완산갑, 전주완산을, 군산시, 익산갑, 익산을, 정읍, 남원순창,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 (10개)	정읍고창, 군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장수, 익산갑, 익산을, 전주갑, 전주를, 전주병(10개)
전라남도	장흥강진영암 순천 담양곡성구례 광양 나주화순 함평영광장성 목포 무안신안 해남완도진도 여수갑 여수을 (11개)	목포, 여수갑, 여수을, 순천곡성, 나주화순, 광양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해남완도진도, 무안신안(11개)	고흥보성장흥강진, 순천, 광양곡성구례,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목포, 영암무안신안, 해남완도진도, 여수갑, 여수을(10개)
경상북도	포항남구울릉 (1개)	-	구미을(1개)
경상남도	김해을 산청함양거창 의령함안합천 진주을 (4개)	-	김해을(1개)
제주특별자치도	-	-	서귀포 (1개)
합계	47	38	56

<표-26>을 통해 시·도별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여성후보 등록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나누어 그 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안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지역선거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의회별 후보등록 수로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제7회 기준으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전체 지역구 의석을 비례적으로 보면 광역 737석에 비해 기초 2541석으로 3.5배정도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6회 선거를 제외하고는 두자리수의 여성을 광역의회에 공천하였다. 인천광역시는 6회 선거에서는 1명만 광역의회에 공천하였는데 7회는 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기도는 5회 15명, 6회 13명에 비해 7회에는 30명의 여성이 광역의회의 후보로 공천되어 그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5회에 비해 6회 여성공천이 높아지고

있으며, 7회의 경우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와 경상남·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소폭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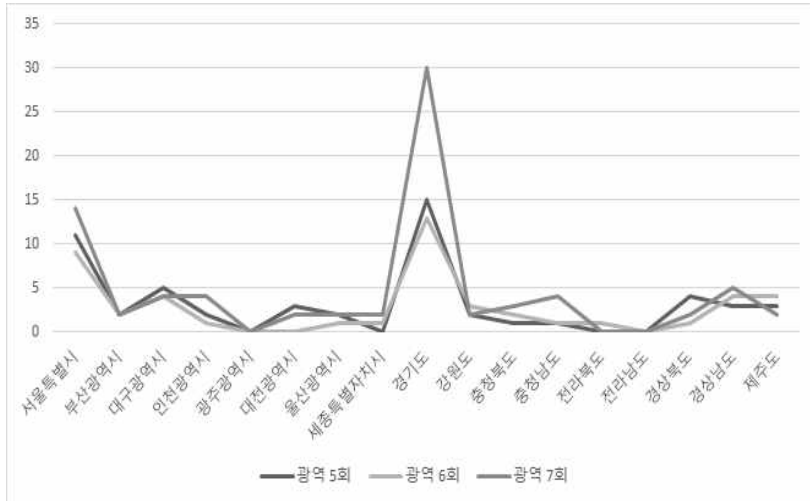
<표-26> 자유한국당 지역구 여성후보등록 시도별 현황

시도	5회		6회		7회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서울특별시	11	48	9	68	14	56
부산광역시	2	20	2	28	2	28
대구광역시	5	10	4	17	4	19
인천광역시	2	12	1	9	4	12
광주광역시	0	0	0	0	0	0
대전광역시	3	6	0	7	2	9
울산광역시	2	4	1	4	2	4
세종특별자치시	-	-	1	-	2	-
경기도	15	41	13	61	30	54
강원도	2	9	3	18	2	15
충청북도	1	9	2	11	3	13
충청남도	1	8	1	14	4	19
전라북도	0	0	1	1	0	0
전라남도	0	1	0	0	0	0
경상북도	4	14	1	23	2	26
경상남도	3	12	4	22	5	24
제주특별자치도	3	-	4	-	2	-
합계	54	194	47	283	78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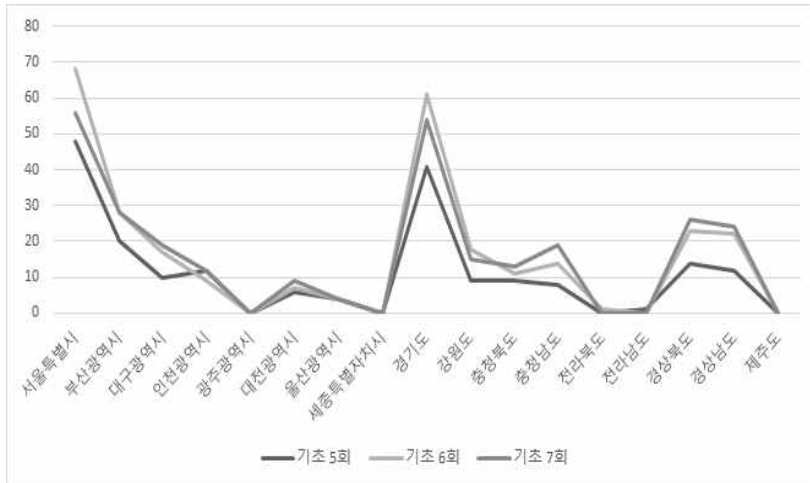
자유한국당의 제7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비례적 현황은 3.6배로 의석 비례인 3.5배보다 다소 많게 나타났다.

지역별, 회차별 추이를 파악해 보기 위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나누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다음 <그림-10>, <그림-11> 과 같다.

<그림-10> 자유한국당 지역별 여성후보등록 시도별 현황(광역의회)



<그림-11> 자유한국당 지역별 여성후보등록 시도별 현황(기초의회)



②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한 명의 여성후보도 배출하지 않은 지역구 수가 96개였으나 6회 58개, 7회 13개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1명을 공천한 지역구의 수도 111개에서 84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2명이상을 공천하는 지역구의 수는 계속 증가추세이다. 특히 7회 선거에는 5명 이상을 공천한 지역구가 8곳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였다. (<표-27>참조)

<표-27> 더불어민주당 여성후보등록자수별 지역구 현황

(명, %)

	5회	6회	7회
0명	96(39.2%)	58(23.6%)	13 (5.1%)
1	111(45.3%)	109(44.3%)	84 (33.2%)
2	32(13.1%)	57(23.2%)	87 (34.4%)
3	4(1.6%)	18(7.3%)	43 (17.0%)
4	2(0.8%)	4(1.6%)	18 (7.1%)
5명이상	0(0%)	0(0%)	8 (3.2%)
합계	245(100%)	246(100%)	253(100%)

<표-28>을 통해 여성후보자가 없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를 살펴보았다. 지역적 약세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여성후보자가 없는 지역구 수가 가장 많은 편이지만 5회에서 7회까지 선거를 통해 점차 여성후보가 없는 지역구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연속적으로 여성후보가 없는 지역이 나오고 있지 않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로 보여진다.

<표-28>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여성후보자가 없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금천 노원병 동대문갑 동대문을 양천을	동대문갑, 동대문을 (2개)	-

시도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6개)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갑 남구갑 남구를 중구동구 동래구 부산진구를 사하갑 서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기장갑 (12개)	중구동구, 동래구, 해운대기장을, 사하갑, 연제구 (5개)	-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달서을 달서병 달성군 동구갑 동구를 북구갑 북구를 서구 수성갑 수성을 (11개)	중구남구, 동구갑, 동구를, 서구, 북구갑, 북구를, 수성을, 달서을, 달성군 (9개)	달서갑 달성군, 동구갑, 서구(4개)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갑 남동을 (2개)	남구갑, 남동을, 부평을, 서구강화를 (4개)	-
광주광역시	광산을 (1개)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서구를 유성구 (3개)	-	-
울산광역시	남구갑 남구를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6개)	중구, 남구갑, 남구를, 울주군 (4개)	-
세종특별자치시	-	-	-
경기도	여주양평 파주 화성갑 (3개)	여주양평, 포천연천 (2개)	남양주병(1개)
강원도	강릉 동해삼척 속초고성양양 춘천 철원화천양구인제 태백영월평창정선 (5개)	속초고성양양 (1개)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1개)
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 보은옥천영동 청주상당구 청주흥덕갑 청원 (5개)	청주상당구, 청주흥덕을, 청원 (3개)	증평진천음성, 청주청원구(2개)
충청남도	공주연기 당진 보령서천 서산태안 (4개)	공주, 부여청양, 당진 (3개)	-
전라북도	고창부안 익산을 전주완산을 전주덕진구 (4개)	-	-
전라남도	고흥보성 담양곡성구례 함평영광장성 무안신안 해남완도진도 여수을 (6개)	무안신안 (1개)	-
경상북도	경산청도 영천 경주 고령성주칠곡 구미갑 구미를 상주 김천 영주	포항울릉, 포항북구남구,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예천,	경산, 영천청도, 경주, 영양영덕봉화울진, 포항남구울릉(5개)

시도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문경예천 안동 영양영덕봉화울진 포항북구 포항남구울릉 (14개)	경산청도, 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고령성주칠곡 (13개)	
경상남도	거제 통영고성 김해을 밀양창녕 사천 남해하동 의령함안합천 양산 진주갑 진주를 창원갑 창원을 마산갑 마산을 (14개)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마산합포구, 창원마산회원구, 창원진해구, 진주갑, 진주를, 통영고성, 사천남해하동, 의령함안합천, 산청함양거창 (11개)	-
제주특별자치도	-	-	-
합계	96	58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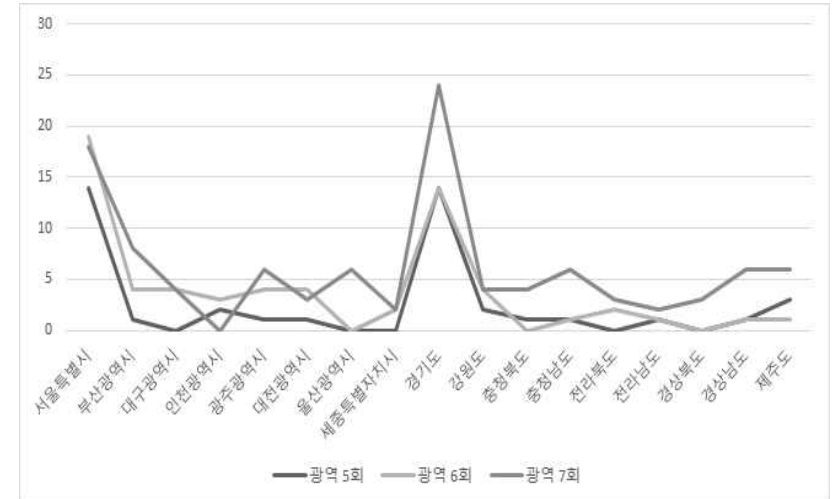
<표-29>를 통해 시·도별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역구 여성후보 등록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나누어 그 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제7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비례적 현황은 3.8배로 의석 비례인 3.5배보다 많게 나타나 기초의회 쏠림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 점차 여성후보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다만 인천광역시의 광역의회에서 7회에 한명의 후보도 공천하지 않았고 제6회 선거에는 기초의회도 5회에 비해 여성후보 공천자의 수가 줄어들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이점으로 보여진다.

<표-29>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성후보등록 시도별 현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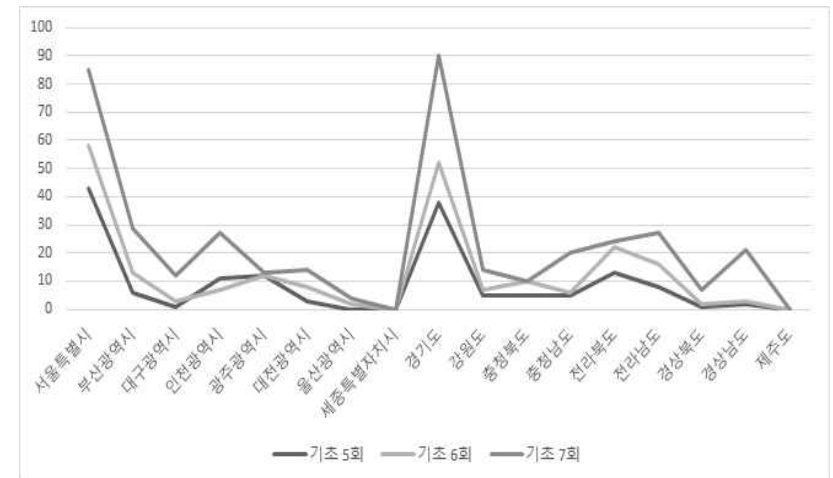
시도	5회		6회		7회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서울특별시	14	43	19	58	18	85
부산광역시	1	6	4	13	8	29
대구광역시	0	1	4	3	4	12
인천광역시	2	11	3	7	0	27
광주광역시	1	12	4	12	6	13
대전광역시	1	3	4	8	3	14
울산광역시	0	0	0	2	6	4
세종특별자치시	-	-	2	-	2	-
경기도	14	38	14	52	24	90
강원도	2	5	4	7	4	14
충청북도	1	5	0	10	4	10
충청남도	1	5	1	6	6	20
전라북도	0	13	2	22	3	24
전라남도	1	8	1	16	2	27
경상북도	0	1	0	2	3	7
경상남도	1	2	1	3	6	21
제주도	3	-	1	-	6	-
합계	42	153	64	221	105	397

지역별, 회차별 추이를 파악해 보기 위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나누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다음 <그림-12>, <그림-13>과 같다.

<그림-12> 더불어민주당 지역별 여성후보등록 시도별 현황(광역의회)



<그림-13> 더불어민주당 지역별 여성후보등록 시도별 현황(기초의회)



3) 의무공천제에 따른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여성후보수 비교

앞서 지방의회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된 제5회 선거이후 아래 <표-30>에서 보듯이 구·시·군 기초의회는 여성의원 비율의 증가가 가시적 효과를 보인 반면, 시도 광역의회는 구·시·군 기초의회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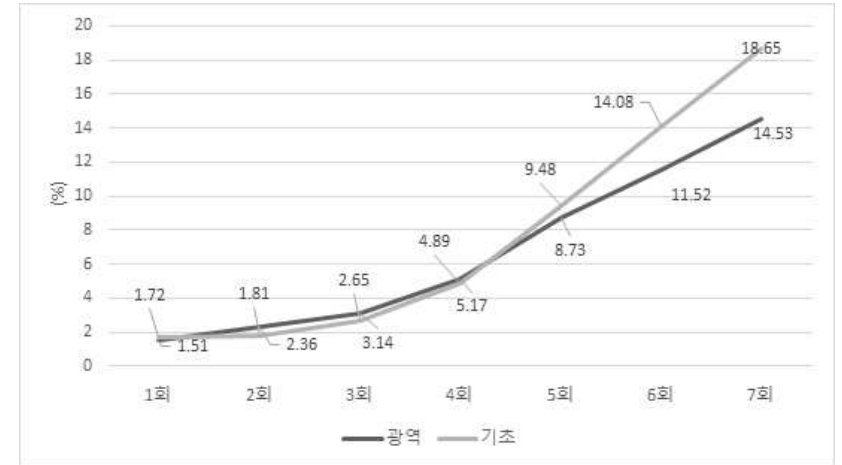
<표-30>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광역 의회	후 보 자	전체	2,445	1,571	1,531	2,068	1,765	1,719	1,886
		여성	37	37	48	107	154	198	274
		%	1.51	2.36	3.14	5.17	8.73	11.52	14.53
	당 선 인	전체	875	616	609	655	680	705	737
		여성	12	14	14	32	55	58	98
		%	1.37	2.27	2.3	4.89	8.09	8.23	13.30
기 초 의 회	후 보 자	전체	11,862	7,754	8,373	7,995	5,823	5,377	5,318
		여성	204	140	222	391	552	757	992
		%	1.72	1.81	2.65	4.89	9.48	14.08	18.65
	당 선 인	전체	4,541	3,489	3,485	2,513	2,512	2,519	2,541
		여성	72	56	77	110	274	369	526
		%	1.59	1.61	2.21	4.38	10.91	14.65	20.7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광역과 기초의회의 여성후보자 비율을 비교해보기 위해 1회 선거부터 7회까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그림-14>와 같다.

<그림-14>광역·기초의회별 여성후보자 비율



앞서 각 정당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후보등록에서도 보았듯이 의석수 비례하여 두당 모두 기초의회 공천 쏠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비율별로 보더라도 기초의회에서 여성후보 공천비율의 증가폭이 광역의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47조5항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시·도 또는 구·시·군 의회에 1명이상이라는 규정 때문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결국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광역과 기초 어디라도 여성후보를 1명만 공천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여성을 시·도 광역의회보다는 구·시·군 기초의회에 공천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앞 그래프<그림-14>에서 보듯이 통계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다.

제4절. 구·시·군 기초의회 주요정당 남녀 기호 배정 현황¹²⁾

1) 기호별 당선 효과

한편 구·시·군 기초의회의 경우 정당공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4회 선거부터 기호에 따른 당선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같은 정당이라고 해도 기호순번에 따라 당선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시·군 기초의회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표-21>에서 보듯이 기호1번을 받은 열린우리당 후보 중 543명이, 기호2번을 받은 한나라당이 1,401명이 당선되었다. 그 외 기타 정당 및 무소속이 22.6%를 차지하였다. 기호 1번과 2번의 당선율은 전체 의석 중 77.4%에 달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기호별 당선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중선거구제에 따라 선거구별 2인에서 4인까지 선출함에도 두 정당이 기호1번과 기호2번으로 단독 후보를 낸 경우와 두명 이상을 내더라도 기호 “1-가”, “2-가”와 같이 순번이 앞설수록 당선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중선거구제임에도 한 정당이 1명의 후보를 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역적으로 해당 정당이 열세지역인 경우가 많아 후보발굴이 용이하지 않거나, 전략적으로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표분산을 막기 위한 경우로 보여진다.

단독후보로 당선된 비율을 보면 기호1-가번이나 기호2-가번보다는 적으나 이 역시 열린우리당 45%와 한나라당 75.9% 등 적지 않은 당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단독후보가 아닌 경우 열린우리당 기호1-가번의 당선율은 65%이고 한나라당 기호2-가번 당선율은 91.4%로 당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기호 2-가번의 경우 91.4%로 매우 높은 당선율을 보이고 있어 공천시 기호의 배정이 사실상 당선을 좌우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번이상의 기호 후보의 당선율은 12%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12) 본 분석은 앞서 박진경 외(2017)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7회결과를 추가하여 재정리 하였음

<표-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정당의 기호별 당선율

정당	기호	당선	낙선	합계	기호별당선율
열린 우리당	1	277	338	615	45.0%
	1-가	193	104	297	65.0%
	1-나	53	244	297	17.8%
	1-다	18	64	82	22.0%
	1-라	2	10	12	16.7%
	1번 합	543	760	1,303	-
한나라 당	2	44	14	58	75.9%
	2-가	730	69	799	91.4%
	2-나	492	307	799	61.6%
	2-다	126	144	270	46.7%
	2-라	9	9	18	50.0%
	2번 합	1,401	542	1,944	-
기타	3번 이상	569	4,153	4,722	12.0%
총 합계		2,513	5,455	7,968	-

제5회 전국동시선거에서는 기호순서가 한나라당이 기호1번, 민주당이 기호2번을 받았다. 해당 선거에서 기호별 당선율은 <표-32>와 같다.

전체 의석 2,513명 중 두 정당이 1,958석을 차지해 77.9%로 4회 77.4%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그 외 정당 및 무소속인 3번 이상은 569석으로 22.6%였다. 기호별 당선율은 한나라당 1번과 1-가번이 67.9%와 89.5%로 나타났고, 민주당 2번과 2-가번의 당선율이 82%와 86.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번이상의 기호에서는 21%로, 4회선거보다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1번과 2번, 1-가번과 2-가번의 당선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3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정당의 기호별 당선율

정당	기호	당선	낙선	합	기호별 당선율
한나라당	1	51	25	76	67.1%
	1-가	707	83	790	89.5%
	1-나	241	546	787	30.6%
	1-다	82	154	236	34.7%
	1-라	4	6	10	40.0%
	합	1,085	814	1,899	-
민주당	2	233	51	284	82.0%
	2-가	389	59	448	86.8%
	2-나	207	236	443	46.7%
	2-다	38	60	98	38.8%
	2-라	4	8	12	33.3%
	합	871	414	1,285	-
기타	3번이상	556	2,082	2,638	21.1%
총합계		2,512	3,310	5,822	43.1%

이러한 기호별 당선율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 큰 비율로 증가한다. 1번 기호를 받은 새누리당, 2번 기호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이 2,519석 중 2,167석으로 84.8%의 의석을 차지하고, 그 외 정당 및 무소속이 382석으로 15.2%를 차지하면서 두 정당의 당선율이 4회 및 5회 선거에서보다 더욱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두 정당의 기호별 당선율을 보면 1번과 1-가, 2번과 2-가번의 당선율이 84.6%에서 97.2%까지 당선율을 보이고 있어 앞 번호의 배정이 사실상 당선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번 이상의 기호 후보의 당선율은 17.2%로 여전히 저조하였다. (<표-33> 참조)

<표-3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정당의 기호별 당선율

정당	기호	당선	낙선	합	기호별 당선율
새누리당	1	66	12	78	84.6%
	1-가	741	21	762	97.2%

정당	기호	당선	낙선	합	기호별 당선율
	1-나	271	488	759	35.7%
	1-다	83	123	206	40.3%
	1-라	4	8	12	33.3%
	합	1,165	652	1,858	-
새정치민주연합	2	291	49	340	85.6%
	2-가	393	56	449	87.5%
	2-나	250	200	450	55.6%
	2-다	33	57	90	36.7%
	2-라	5	5	10	50.0%
	합	972	367	1,356	-
기타	3번이상	382	1,839	2,221	17.2%
총합계		2,519	2,858	5,377	-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번 기호를 자유한국당이 2번 기호를 받았는데 전체 2,541석 중 2,276석으로 89.6%를 차지하여 두 정당의 당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번 이상의 후보 중 당선자는 265명으로 전체 의석의 10.4%에 불과했다. 두 정당의 기호별 당선율을 보면 1번 92.6%, 1-가번 99.2%, 2번 80.0% 2-가번 82.6%로 앞 번호의 배정이 사실상 당선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결국 두 정당의 당선율이 선거가 진행될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4>참조)

〈표-3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정당의 기호별 당선율

정당	기호	당선	낙선	합	기호별 당선율
더불어 민주당	1	349	28	377	92.6%
	1-가	592	5	597	99.2%
	1-나	403	194	597	67.5%
	1-다	52	71	123	42.3%
	1-라	4	7	11	36.4%
	합	1,400	305	1,705	-
자유 한국당	2	297	65	362	80.0%
	2-가	418	88	506	82.6%
	2-나	120	383	503	23.9%
	2-다	37	78	115	32.2%
	2-라	4	2	6	66.7%
	합	876	616	1,492	-
기타	3번이상	265	1,856	2,121	12.5%
	총합계	2,541	2,777	5,318	-

이상의 정당공천제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구·시·군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3차례의 선거결과에서 보듯이 기호별 당선효과성은 “1-가”, “2-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1”, “2”처럼 단독후보인 경우가 높게 나타나, 주요정당의 공천이나 기호순번에 따른 당선율의 상관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과 기호에 따른 당선가능성의 차이가 극심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선거구별 1인 이상의 여성후보공천의무제의 현황을 기호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기호별 남녀 추천 현황

기호별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 남녀 공천비율 대비 각 기호별 남녀 공천비율을 비교해보았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요정당의 기호별 남성과 여성 추천비율을 보면, 열린우리당은 당선율 높은 기호인 “1”번과 “1-가”번에 각각 4.1%와 3.7%를 배정하였다. 이는 정당의 여성 전체 추천비율인 4.1%에 비해 같거나 낮게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당선율 높은 기호2번과 2-가에 6.9%와 5.8%를 배정하여, 전체 여성 공천 평균인 4.6%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두 정당 모두 전체 공천 중 여성 4.1%, 4.6%라는 매우 저조한 공천을 고려하면, 당선가능성이 높은 기호에 여성을 배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4회 선거 기호별 남녀 공천비율현황은 아래 〈표-35〉와 같다.

〈표-3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호별 남녀추천비율현황

기호	1	1-가	1-나	1-다	1-라	합
전체	615	297	297	82	12	1,303
남	590	286	286	77	11	1,250
여	25	11	11	5	1	53
남성비율	95.9%	96.3%	96.3%	93.9%	91.7%	95.9%
여성비율	4.1%	3.7%	3.7%	6.1%	8.3%	4.1%
기호	2	2-가	2-나	2-다	2-라	합
전체	58	799	799	270	18	1,944
남	54	753	765	265	17	1,854
여	4	46	34	5	1	90
남성비율	93.1%	94.2%	95.7%	98.1%	94.4%	95.4%
여성비율	6.9%	5.8%	4.3%	1.9%	5.6%	4.6%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요정당의 기호별 남녀추천비율을 보면, 한나라당은 당선율 높은 기호인 1번과 1-가번에 각각 5.3%와 16.1%를 배정하였다. 이는 정당의 전체 추천비율인 10.2%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다소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은 2번과 2-가에 13.3%와 18.3%를 배정하여, 전체 평균인 11.8%에 비해 다소 높게 공천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여성 공천비율이 지난 4회선거 4%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5회 선거에서 한나라당 10.2%와 민주당 11.8%로 여성 공천이 증가한 배경에는 지역구 의무공천제가 반영된 데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무공천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를 겨우 넘겨 여성을 공천하였다는 점이나, 당선가능성 순번에 여성공천 현황을 볼 때 정당의 적극적 공천이 실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제5회 선거 기호별 남녀공천비율현황은 아래 <표-36>과 같다.

<표-36>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호별 남녀추천비율현황

기호	1	1-가	1-나	1-다	1-라	합
전체	76	790	790	237	10	1,903
남	72	663	746	219	9	1,709
여	4	127	44	18	1	194
남성비율	94.7%	83.9%	94.4%	92.4%	90.0%	89.8%
여성비율	5.3%	16.1%	5.6%	7.6%	10.0%	10.2%
기호	2	2-가	2-나	2-다	2-라	합
전체	286	448	448	100	12	1,294
남	248	366	419	96	12	1,141
여	38	82	29	4	-	153
남성비율	86.7%	81.7%	93.5%	96.0%	100.0%	88.2%
여성비율	13.3%	18.3%	6.5%	4.0%	0.0%	11.8%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요정당의 기호별 남녀추천비율을 보면, 새누리당은 당선율 높은 기호인 1번과 1-가번에 각각 16.7%와 19.7%를 배정하였다. 이는 정당의 전체 추천비율인 15.4%에 비해 약간씩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호 2번과 2-가에 18.8%와 21.6%를 배정하여, 전체 평균인 16.7%에 비해 다소 높게 공천한 것을 알 수 있다.

<표-3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호별 남녀추천비율현황

기호	1	1-가	1-나	1-다	1-라	합
전체	78	763	763	210	12	1,826
남	65	613	670	186	11	1,545
여	13	150	93	24	1	281
남성비율	83.3%	80.3%	87.8%	88.6%	91.7%	84.6%
여성비율	16.7%	19.7%	12.2%	11.4%	8.3%	15.4%
기호	2	2-가	2-나	2-다	2-라	합
전체	340	450	450	93	10	1,343
남	276	353	401	80	9	1,119
여	64	97	49	13	1	224
남성비율	81.2%	78.4%	89.1%	86.0%	90.0%	83.3%
여성비율	18.8%	21.6%	10.9%	14.0%	10.0%	16.7%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요정당의 기호별 남녀추천비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율 높은 기호인 1번과 1-가번에 여성을 각각 23.9%와 31.8%를 배정하였다. 지난 6회 선거에 비해 2-가의 추천비율인 21.6%와 비교하면 1-가번의 여성추천비율이 꽤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번과 2-가번의 비율이 전체 평균인 23.3%에 비해서도 높아 6회 선거에 이어 당선율이 높은 순번에 여성의 공천율이 다소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공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2번 22.4%, 2-가 18.8%의 비율로 여성을 공천하여 전체 공천 비율인 18.7%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두 정당의 여성공천비율이 10.2%와 11.8%였던 5회선거보다 6회는 15.4%와 16.7%, 7회는 18.7%, 23.3%로 나타나 여성의무공천제의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¹³⁾. 그럼에도 당선가능성 높은 기호에 여성 공천이 다소 상회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자유한국당은 7회 선거에서 2번이었으나 5,6회는 1번이었고, 민주당은 7회 선거에서 1번이었으나 5,6회는 2번이었음. 번호에 따른 설명이 아니라 해당 정당의 비율로 설명하였음을 밝힘.

<표-3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호별 남녀추천비율현황

기호	1	1-가	1-나	1-다	1-라	합
전체	377	597	597	123	11	1,705
남	287	407	492	112	10	1,308
여	90	190	105	11	1	397
남성비율	76.1%	68.2%	82.4%	91.1%	90.9%	76.7%
여성비율	23.9%	31.8%	17.6%	8.9%	9.1%	23.3%
기호	2	2-가	2-나	2-다	2-라	합
전체	362	506	503	115	6	1,492
남	281	411	421	94	6	1,213
여	81	95	82	21	0	279
남성비율	77.6%	81.2%	83.7%	81.7%	100%	81.3%
여성비율	22.4%	18.8%	16.3%	18.3%	0%	18.7%

앞서 보았듯이 구·시·군 기초의회의 경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이후 3차례의 선거를 치루면서 기호에 따라 당선가능성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천과정이 사실상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당선가능성 높은 기호로 여성을 공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4회 선거에 비해 국회의원 선거구별 1인 이상 여성의무공천제가 신설된 5, 6회 선거결과에서 보듯이 4회선거 4%에 머물던 여성공천비율이 10%대로 증가하였으며 7회 선거를 통해서는 20%를 넘긴 정당도 있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4장 지방의회 여성의원 조사

제1절. 여성광역의원 설문조사 결과

제2절. 여성기초의원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제4장. 지방의회 여성의원 조사

제1절. 여성광역의원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3장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제5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실시된 여성의무공천제는 여성의원의 확대를 가져왔으나 그 효과성면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차이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여성 광역의원들을 대상으로 여성의무공천제의 효과성을 진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은 현재 광역의회 의원 중 여성의원은 160명으로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160명 여성의원은 지역구 98명, 비례대표 6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60명에 대한 무선통신정보는 (사)한국여성의정이 확보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였다.

조사방법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구글 설문조사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마련하였고, 각 설문마다 5점 척도로 1(매우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은 여성의무공천제가 여성정치참여와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와 여성의무공천제의 확대 필요성,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공천권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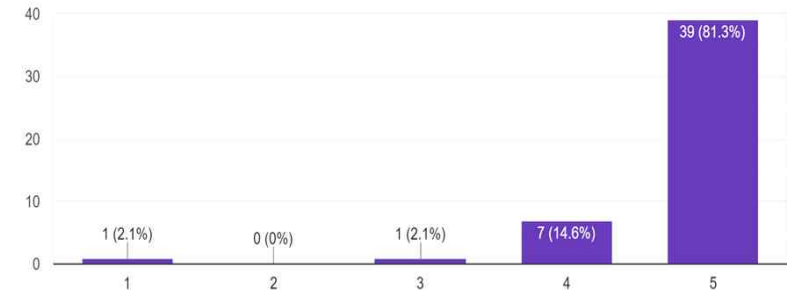
조사는 링크 조사지를 문자메세지에 함께 전송하여 임의로 설문에 참여하는 무기명 방식을 사용하였다. 기간은 2021년 8월 18일부터 3주간 진행되었고 기간내 수차례의 문자메세지 재전송¹⁴⁾으로 최종 49명이 참여하였고 전체 대상 중 30.6%에 해당되어 통계적 분석의 의미를 확보하였다.

14) 문자메세지 전송은 (사)한국여성의정이 내부 웹통신을 활용함

2) 조사결과

문항별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의무공천제가 여성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를 질문했다. 응답자 48명¹⁵⁾ 중 81.3%인 39명이 매우 그렇다로 답하였으며 4점 '그렇다'로 응답한 7명을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93.9%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여성의무공천제가 여성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하였다
응답 4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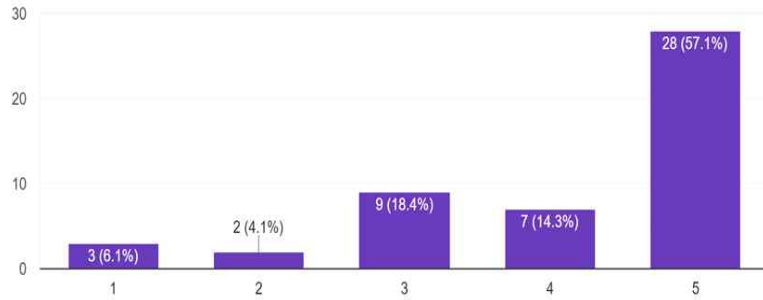
다음은 여성의무공천제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영향에 대한 결과이다. 먼저 광역의회의 경우, 전체 응답자 49명 중 57.1%인 28명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수는 7명으로 71.4%를 차지하였다.

기초의회의 여성확대의 기여 여부를 설문한 결과는 40명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긍정응답을 포함하면 95.8%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연구와 같이 여성의무공천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15) 설문은 전체 49명이 응답하였으나 1번 3번 6번의 응답에서 각각 결측이 발생하여 문항별 응답자 수가 다른 경우가 있음. 특정 설문지의 결측치가 아니어서 제외하지 않고 문항별 응답자 수의 차이로 설명하였음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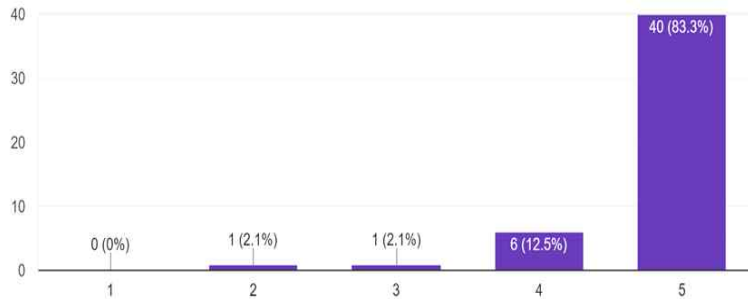
2. 여성의무공천제가 광역의회 여성 확대에 기여하였다

응답 4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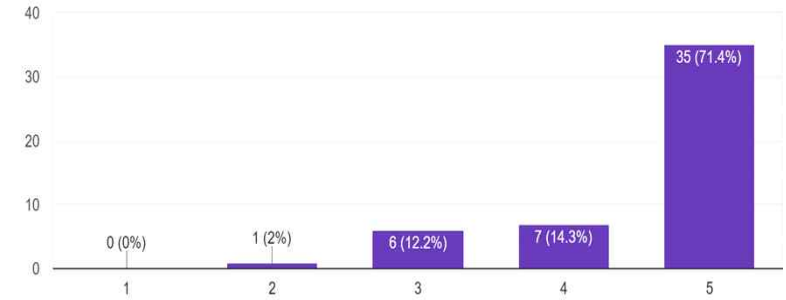
3. 여성의무공천제가 기초의회 여성 확대에 기여하였다

응답 48개



4. 여성의무공천제가 여성의원의 정치나 의정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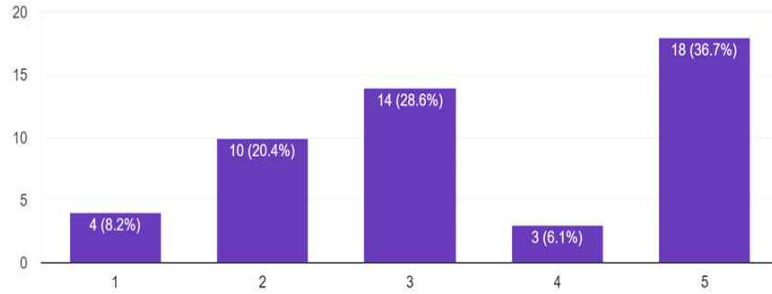
응답 49개



다음은 여성의무공천제가 정치나 의정활동에 미친 영향을 질문하였다.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은 49명 중 35명으로 71.4%를 차지하였으며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을 포함하면 85.7%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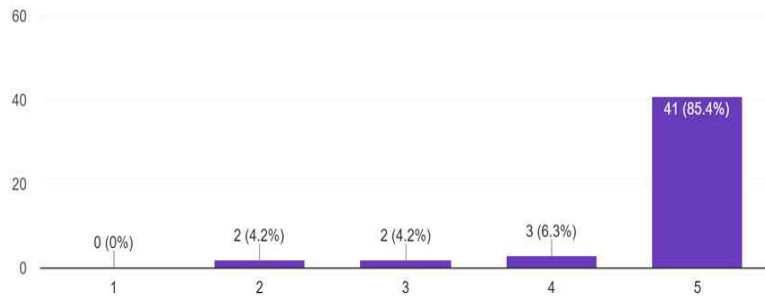
다음으로 의무공천제가 공천권자의 권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공천권자의 권한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전체 49명중 21명으로 42.8%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응답자는 14명으로 28.6%를 나타내 공천권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

5. 여성의무공천제가 공천권자(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 등)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였다
응답 4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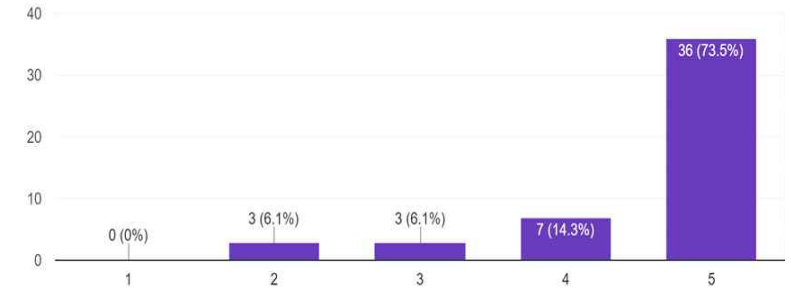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도 중요한 제도 개선으로 제시하는 광역의회 1인, 기초의회 1인의 여성의무공천제 확대에 대한 광역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응답자 48명 중 44명인 91.7%가 여성의무공천제의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여성의무공천제의 1인 이상을 광역과 기초 각각 1인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응답 48개



여성의원의 증가가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49명 중 73.5%인 36명이 '매우 그렇다'로 7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해 87.8%가 여성의원의 증가가 차기 선거의 당선가능성을 높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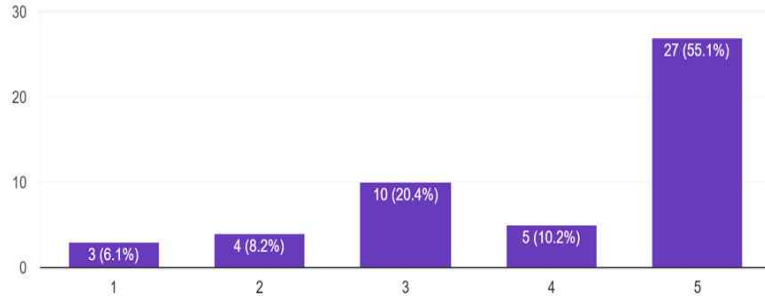
7. 여성의원이 많아질수록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이 늘어나고 차기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응답 49개



마지막으로 현재의 경선방식이 여성후보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질문해 보았다. '그렇다'라는 응답을 포함한 긍정적 답변은 전체 응답자 49명 중 32명이 선택하여 65.3%를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를 포함한 부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는 7명으로 14.3%를 나타냈다.

8. 경선 방식(가산점제 포함)은 여성에게 유리하다

응답 49개



전체적으로 여성의무공천제가 지방의회의 여성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으며, 여성의무공천제를 광역과 기초의회로 나누어 실시할 필요성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 여성의원들은 여성의원인 증가할 수록 차기 당선 가능성도 높아질거라 기대하고 있었다.

제2절. 여성기초의원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1) 조사개요

가.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긍정적 변화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나왔듯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여성당선자 비율이 30%이상인 구·시·군 기초의회가 전체 226개 의회 중 101개(44.7%)로, 지난 6회 선거결과 60개의 회에 비해서도 많은 증가가 있었다. 이들 의회를 통해 여성정치참여의 경험적이고 실증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조사대상 선정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여성당선자 비율이 30%이상인 101개의 구·시·군 기초의회 중 상위권에 있는 의회 순으로 선정하되, 지역 및 정당을 고려하고, 의회 내 변화를 보기 위해 다선 경험이 있는 여성위원을 심층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다선 여성위원이 많아짐에 따라 의장을 맡는 경우도 많아져, 의회 전반의 변화를 의장의 관점에서 폭넓게 평가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의장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의원을 선정하였다.

이런 기준에 의해 1차로 선정한 13개 의회는 여성의원 비율 순위에 따라 대전 동구의회, 경기도 의왕시의회, 서울 광진구의회, 인천 부평구의회 등이며, 비율에 따른 순위로 선정하다보니 상위권에 주로 수도권이나 광역시내 기초의회가 대부분이었고 여기에 더해 여성의장을 고려하니 특정 정당에 쏠려 있었다. 따라서 정당과 비수도권, 군의회 사례를 감안하면서 경남 진주시, 대구 중구, 전남 함평군, 부산 동래구, 경북 구미시, 광주 북구 등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여성정치참여확대 필요성을 실제 경험을 통해 도출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매우 저조한 여성구청장의 확대 필요성을 보기 위해 여성구청장이 함께 활동하고 있

나 활동했던 의회인 서울 서초구와 대구 중구를 포함하였다. 또한 의회 구성 후 전후반기 한사람이 연속해서 의장을 맡고 있는 경기 김포시 사례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 포함하였다.

선정된 13개 의회의 특성을 보면 각각의 의회 현재 의석 중 여성비율은 63.67%에서 30%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1회 선거에서부터 제7회 선거까지 여성 의원 비율은 아래 <표- >에서 보듯이 대부분 비례대표 및 정당공천제 도입전인 제3회선거까지는 서울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여성이 한 명도 없었던 의회가 다수였고, 제4회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에 힘입어 다소 늘었으나, 여전히 1~2명 증가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의무공천제가 마련된 제5회선거에서는 여성의원수의 증가하여 7회까지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39>는 심층인터뷰 대상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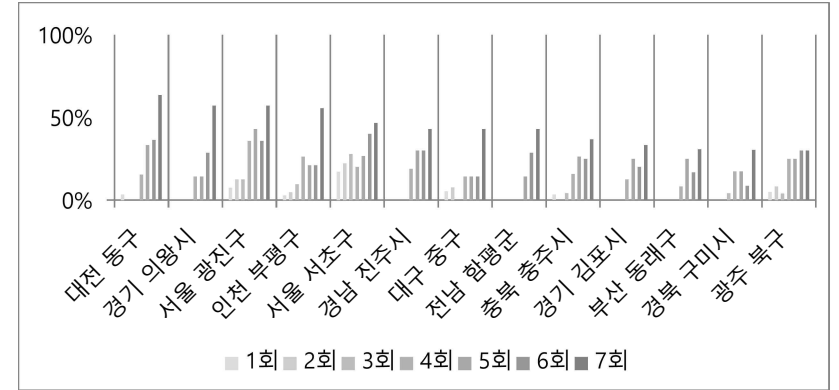
<표-39> 심층인터뷰 지역의 여성의원 비율

NO	순위	시도단위	구·시·군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비고
1	1	대전광역시	동구	3.4%	0.0%	0.0%	15.4%	33.3%	36.4%	63.6%	전후반 여성의원장
2	5	경기도	의왕시	0.0%	0.0%	0.0%	14.3%	14.3%	28.6%	57.1%	전후반 여성의원장
3	7	서울특별시	광진구	7.4%	12.5%	12.5%	35.7%	42.9%	35.7%	57.1%	후반 여성의원장
4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2.8%	4.8%	9.5%	26.3%	21.1%	21.1%	55.6%	후반 여성의원장
5	22	서울특별시	서초구	17.2%	22.2%	27.8%	20.0%	26.7%	40.0%	46.7%	전후반 여성의원장+여성구청장
6	35	경상남도	진주시	0.0%	0.0%	0.0%	19.0%	30.0%	30.0%	42.9%	후반 여성부위원장, 국힘
7	38	대구광역시	중구	5.3%	7.7%	0.0%	14.3%	14.3%	14.3%	42.9%	조선 여성의원장
8	43	전라남도	함평군	0.0%	0.0%	0.0%	0.0%	14.3%	28.6%	42.9%	후반 여성부위원장
9	68	충청북도	충주시	3.3%	0.0%	4.2%	15.8%	26.3%	25.0%	36.8%	3선
10	77	경기도	김포시	0.0%	0.0%	0.0%	12.5%	25.0%	20.0%	33.3%	전후반 여성의원장
11	92	부산광역시	동래구	0.0%	0.0%	0.0%	8.3%	25.0%	16.7%	30.8%	후반 여성의원장
12	96	경상북도	구미시	0.0%	0.0%	4.2%	17.4%	17.4%	8.7%	30.4%	재선
13	97	광주광역시	북구	4.9%	8.3%	4.0%	25.0%	25.0%	30.0%	30.0%	후반 여성의원장

* 전체 의석은 2018년 제7회 선거 결과 기준

이들 지역의 회기별 여성의원 수 증가율을 파악하기 위해 막대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

<그림-15> 심층인터뷰 지역의 여성의원 변화추이



나. 내용 구성

본 연구는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변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 및 여성정치필요성의 정당성 등을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 의회내 변화>

- Q1. 여성 의원이 소수일 때와 다수일 때 의회 내 전반적 변화
- Q2. 과거에 비해 달라진 의회 내 여성 의원의 역할 변화
- Q3. 여성 의원이 다수여서 개별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 당선 및 유권자 영향>

- Q4. 여성 의원이 많았던 의회(지역)에서 차기 선거에서 다시 여성 후보가 나올 때 여성 후보 당선에 미치는 영향 정도
- Q5. 여성 의원이 많은 지방의회 유권자는 여성 의원이 적은 유권자보다
 - 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 ② 여성이 의정활동을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 ③ 여성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여성의원 확대 위한 제도와 공천과정, 정당의 지원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 제도 평가>

- Q6. 지방의회 여성할당제 의무조항에 대하여: 현행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여성 1인 이상 추천하는 의무공천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해야 할 것
- 여성 의무공천제가 공천권자(국회의원 혹은 지역위원장 등)에게 과도한 권한을

준다는 평가에 대해

광역보다는 기초의회 공천 쏠림과 2인 이상 공천이 적은 것에 대해

Q7. 여성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방식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와 그렇게 보는 이유, 경선시 가산점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

Q8. 정당내 여성 후보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평가와 정당의 역할 강제방안

다. 그룹 선정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정당을 구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세 그룹으로 조직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참가자들이 최대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끌어내는 것이다. 숙련된 중재자에 의해 주관되는데 중재자는 토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역할을 갖는다. 따라서 포커스 그룹 구성은 환경이나 경험적 측면에서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여 앞에 선정된 13개의 의회를 A그룹에 수도권에 속한 의회로, B그룹은 비수도권이면서 더불어민주당, C그룹은 비수도권이면서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이 있는 의회로 구성하였다.

다음 <표-40>은 심층인터뷰 대상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표-40> 심층인터뷰 대상자

	여성 비율순위	시도단위	의회 (전체/여성)	의원	경력
A	5	경기도	의왕시 7석/4석	윤미근	의장/재선
	7	서울특별시	광진구 14석/8석	박삼례	의장/4선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18석/10	홍순옥	의장/재선
	22	서울특별시	서초구 15석/7	안종숙	의장/3선
	77	경기도	김포시 12/4	신명순	의장/3선
B	1	대전광역시	동구 11석/7	이나영	의장/4선
	43	전라남도	함평군 7/3	윤영량	부의장/재선
	68	충청북도	충주시 19/7	허영옥	의장/3선
	92	부산광역시	동래구 13/4	주순희	의장/재선
	97	광주광역시	북구 20/6	고점례	의장/재선
C	35	경상남도	진주시 21/9	박금자	부의장/도의원
	38	대구광역시	중구 7/3	권경숙	의장/초선
	96	경상북도	구미시 23/7	김춘남	재선

라. FGI 실제 참가현황

13개 의회중 최종 9개 의회 여성의장 및 여성의원이 참여하였다. 그 외 4명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웠고, 이후 3명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세 그룹으로 나눠 비대면 그룹포커스인터뷰(FGI)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기간은 2021년 8월17일부터 8월19일까지 실시하였고 인터뷰 시간은 각각 1시간에서 2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표-41> FGI 실제 참가자 및 표시

	여성 비율순위	시도단위	의회 (전체/여성)	의원	경력	표시
A	5	경기도	의왕시 7석/4석	윤미근	의장/재선	의원A
	7	서울특별시	광진구 14석/8석	박삼례	의장/4선	의원B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18석/10	홍순옥	의장/재선	의원C
	22	서울특별시	서초구 15석/7	안종숙	의장/3선	의원D
	77	경기도	김포시 12/4	신명순	의장/3선	의원E
B	1	대전광역시	동구 11석/7	이나영	의장/4선	의원F
	92	부산광역시	동래구 13/4	주순희	의장/재선	의원G
	97	광주광역시	북구 20/6	고점례	의장/재선	의원H
C	38	대구광역시	중구 7/3	권경숙	의장/초선	의원I

2) 분석결과

가. 여성 30% 이상 의회의 변화

① 여성의원이 소수일 때와 다수일 때 의회내 전반적 변화

앞 인터뷰 대상자의 의회 특성에서 보았듯이 여성의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가 많이 늘었고, 특히 여성의장도 많아지면서 의회내 어떤 변화가 있는 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많은 경우 과거 남성 중심의 사적 음주문화는 많이 없

어지고 의회내에서 자유로운 소통과 내용성있는 토론 등 차분하게 진행된다는 소
회가 많았다. 성평등한 의회 분위기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분위기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 과반수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음주문화는 많이 없
어졌고... 다른 방식의 단합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찾게 되었다. 여성들의 능
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지방의회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의
견이 많아졌다.”(의원A)

“ 여성의원이 적을 때는 의견이 반영되기도 어려웠으나 의원직을 오래하고
여성의 수가 많아지면서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의견 반영이 잘 되고
있어요. 사전에 문제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임위 도중에 언성이 높아지
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의회가 차분해 지고 있다” (의원A).

“가족친화적인 문화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성희롱 등의 문제 등도 많이 좋아
지고 있다.. 행정감사 시 폭언 등이 많이 줄어들어 문화가 있다.”(의원C)

또하나의 특성은 오히려 여성의원이 연구단체나 공부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의정활동이나 지역에 투영하고 있어 의회 사무국에서도
좋은 평가가 많았다고들 한다. 비회기 중에도 의회에 나와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한다. 특히 여성의원들간의 공통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 여성의원이 의정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민원, 공부 등에서도 적극적이다.
의정활동도 잘한다는 말이 직원들에게서도 나오고 있다.”(의원F)

“여성의원이 활동면에서 적극적이다. 심지어 옥상 도시농업으로 텃밭 가꾸어
서 직원들과 의원들이 나누어서 먹고 있기도 하고, 비회기중에도 여성의원들
은 의회에 나와 조례 준비를 하고 있는 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다. 이러
니 후반기 조례 발의는 모두 여성들이 하고 있다.(의원B)

” 북구 특성상 구도심이어서 보수적인 곳이다. 그러나 여성의원은 생각이 섬
세하고 살림하듯이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여
성의원들이 서로의 생각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
다.“(의원H)

한편 큰 변화는 여성의원이 많아지면서 여성의원이 과거에는 특별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구분을 의식하지 않으면 못 느낄 정도로 다수의
여성의원으로 존재하는 지방의회가 자연스럽게 여겨질 정도라서 스며든 환경하에
비교 평가가 의미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거의 50% 가까운 여성의원 비율이 높아지고, 선수가 높아지는 여성의원이
 많아지면서 여성의원을 특별하게 보지 않고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5명의 의장단 구성에 여성이 3명을 차지하게 되니 여성들의 파워가
 커지고 있는 거고.. 동등한 입장에서 역할, 직무 등이 평가되고 있는 것 같
다.” (의원D)

“ 여성 의원이 (7명중) 3명이 있지만 각자 다 개성이 강하다. (제가) 의장이
 되는 데는 여성 의원이 힘을 합했다고는 볼 수 없고.. (중략)...의회에는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 여성이라서 (여성끼리) 힘을 합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의원I)

② 과거에 비해 의회내 여성의원의 위상 및 역할 변화

의회내 여성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의장단에 여성의원이 다수가 포함되는 등 여
성의원의 위상 및 역할 변화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특히 7회 선거결과 더
불어민주당의 구사군 여성지방의회 의원이 획기적으로 늘었을뿐만 아니라 재선이
상 여성의원도 상당히 많아져 의장을 맡은 경우가 많았다. 소수의석을 가진 김포
시의 경우 3선의원으로서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여성의회장을 맡는 경우도 나타났
다. 실제 FGI에 참가한 인터뷰 대상자 9명 중 모두가 의장을 역임하였거나 의장
을 맡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의장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미 다수가

되어버린 여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의장 선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대구 중구 의회와 같이 초선임에도 의장을 맡을 수 있어 특별히 여성으로 인한 차별을 느낄 수 없었고 여성의원들의 협조를 구할 필요도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6회 인터뷰에서만도 의장 선출과정에 여성들의 화합이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에 비해 다수가 여성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성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과거에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으나 각종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요직을 여성이 맡는 경우가 많아졌다.”(의원B, 의원C, 의원E)

“저희가 의장 선거 할 때는 우리 여성끼리끼리 뭉치자 이런 건 전혀 없었고...여자끼리 뽐뽐 뭉치고 여자끼리 어떻게 하고,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어요. 예전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밖에 없다가 지금은 3명이 됐지만, 이런 것도 의식하지 않았고...”(의원I).

한편 여성의원들끼리 힘을 합쳐 같이 성인지적 의회를 만드는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인지 예산이나 여성, 아동 정책 등을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고, 업무추진비도 줄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의회의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성별로 의사가 달랐을 때 여성의원도 많아지면서 힘을 합칠 수 있었다.”(의원H)

“성인지 예산서를 보다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다. (의원A, 의원D)

“여성, 아동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 재개정 안이 많이 마련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3개나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비회기 중에 다른

구 활동을 보고 오고 이를 반영하려 하는 모습 등을 보이고 있다.”(의원B)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운영.(중략)..업무추진비 줄여서 봉사활동 실시하고..”
(의원D)

③ 여성의회가 다수여서 개별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앞서 여성의회가 증가하면서 변화된 내용들에서 여성의 성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이러한 평가처럼 여성들의 꼼꼼함, 의회내 커진 목소리 등이 실제로 의정활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세밀하고 꼼꼼한 성향은 지역구의 사업을 챙기거나 감사를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여성들이 특히 기초의원도 주민을 가장 가깝게 만나기 때문에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있다.”(의원 H)

“여성의회가 재선이 된 게 처음이다. 여성의회가 많아지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다. 꼼꼼함. 전문성, 투명성이 높다. 비례대표는 전문성이 있는 의원이 되면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피드백까지 집행부에 내려주는 좋은 사례가 있었다.”(의원 G)

“그냥 여자가 의장이 된 거에 대해서 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하는 일을 보고 지금은 많이 인정하고 전화도 많고 그런 상황이에요. 열심히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의원 E)

또한 여성의원들이 다수여서 개별적 의정활동에도 높은 자신감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의원들끼리의 긍정적 경쟁은 서로의 발전에도 의회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결에 뚜렷한 변화있었다. 예전에는 비례대표만 있다가 선출직으로도 (여성이) 들어오다 보니 지역현안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고, 여성성이 나름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배경이 반영되어 의정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책결정에서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며 조직문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의원C)

“서로 발전적인 효과를 보인다. 남성에 비해 좀 더 꼼꼼하게 해나가고 있다.”(의원E)

“의회안에서도 여성들끼리 경쟁이 있다. 조례나 5분발언 등에 적극적이어서 경쟁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앞으로 재선을 하는 의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의원G)

한편 제한된 선거구에서 공천과정에 서로 경쟁해야하는 경우가 나타나 비례의원과 지역 여성의원간의 견제도 있을 수 밖에 없으나, 오히려 당내 경선회에 여성후보들이 함께 힘을 합쳐 공동전략을 모색하기도 한 좋은 사례도 있었다.

“비례이후 지역에 가서 공천받는 부분에서 서로 견제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아쉬움이 있다. 여성이 많아지다 보니 여성이 여성을 경쟁상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의원F)

“광주 동구내 여성의원들이 경선 당시 함께 힘을 합쳐 치루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경선에서 이기게 되어서 여성들의 당선으로 연결, 여성의원들의 비율도 높았겠다.”(의원F)

나. 당선 결과 및 유권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① 여성의원들이 많았던 의회(지역)에서 다시 여성후보가 나올 때 여성 후보 당선에 미치는 영향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성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특히 인터뷰를 한 의원들은 재선이상의 경험을 한 경우가 다수라 이들이 의회에서 스스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다시 당선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개인의 영향력도 있었지만 앞선 의회의 여성의원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없었더라면 다음 선거에서 동일한 의회내 여성의원들의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여성의원들이 많았던 지역에서 다시 여성후보가 출마할 경우 남성이 많은 지역에 비해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질문해 보았다.

“여성의원들이 많은 지역에서 다시 후보로 나왔을 때 이전 여성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가 중요한 문제일 듯.. 신뢰성을 위해 여성의원들을 앞세워주는 역할 등이 요구된다. 의장의 역할로 보고 있다...여성은 의정활동을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왜? 과거에 없었기 때문임을 당연하다.”(의원C)

“여성후보가 적을 때보다도 많을 때가 더 당선가능성이 높았다. 긍정적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선거에 임했을 때 주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다.”(의원H)

또한 이번에는 여성구청장들이 함께 있으면서 여성의회 여성의 역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해당 의회에서 나왔다. 물론 여성단체장의 비율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이런 경험이 많지 않고 정당이나 당선 지속성이 적을 경우 후발 여성정치인들에게 함께 공유되고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여성구청장과 여성의원들이 다수인 의회의 긍정적 변화는 매우 중요한 계기임을 알 수 있다.

“서초구는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높은 편이다. (특히) 여성이 단체장을 하니 다른 게 있구나 라는 인식이 높은 편이다. 당의 차이를 크게 보지 않고 필요한 사업은 지지해주는 경향 있다.”(의원 D)

“여성 구청장들도 일을 잘하고 있다, 여성이어서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기존의 정치인들이 잘 하면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있다...축적될수록 더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공천과정에서 경선과정을 통해 본후보가 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다.(의원G)

“(중구의 변화에도) 윤 청장님이 여성분이 하셨잖아요. 그런 여파도 있었다고... 지금 이제 느낌이 조금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제 하는 사업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느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앞서는 남자의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왔지 싶은데 이 변화가 저한테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의원I)

② 유권자의 신뢰성 측면에서 평가

여성의원이 많은 지방의회 유권자 인식의 긍정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질문이다. 여성의원이 많아지다보니 지역내 여성의원이 적을때보다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지방의회 대한 신뢰성이나, 여성이 의정활동을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 여성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에 대해 체감상 변화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대체로 긍정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성에게 기회를 주고 응원해주는 분위기이다. 유권자들에게 여성의원들이 어떻게 보여지는 가를 보면 여성후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의원A)

“다각도의 지역변화를 이끌 수 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더 낫다는 호응있고, 유권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의원 C)

“유권자들은 남성에게 비해 조금 좋게 봐주는 것 같다. 말은 바 일은 열심히 해준다는 인식이 커졌다.”(의원E)

특히 여성들이 지역에서 생활밀착형 사업이나 작은 약속도 꼼꼼이 챙기는 모습이 긍정적 평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역구민은 여성의원에 대한 거부감 없다.”(의원F)

“민원을 해결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 있어 여성들의 영향력있다. 작은 약속이라도 기억하고 안되면 안되는 상황도 진실되게 설명하는 모습에서... 여성들이 의정활동을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의원B)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호응을 받고 있다.”(의원D)

이러한 변화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처음 도전해서 나온 의원의 최근 경험담이 시대적 변화가 뚜렷하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저는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운동을 할 때 전혀 여자가 나왔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똑같이 활동을 했고 운동을 열심히 했고 새벽같이 나와서 하는 그런 모습에서 새벽에 눈을 떠서 나와서 이제 얘기 듣는 것이 처음 봤다. 그래서 부지런한 것 같아서 찍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여성이 왜 나와. 여성 남성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성 남성을 옛날처럼 가리지는 않는 것 같아 한번도 (차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의원I)

반면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의 유형에서 과거 차별적 성별역할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경우도 지적하고 있다.

“과거에는 여성을 의원으로 봐주지 않았다.(행사에 가면) 누구 와이프냐고 물어보던 때도 있었으니). 그렇게 접촉해온 인식은 연말 김장김치 나눔에 여성의원들이 안가면 난리가 나는 상황으로도 나타난다. 유권자의 인식 변화가 있기는 해도 여전히 이런 문화가 보여지고 있다.”(의원E)

한편 여성후보가 많아지면서 공천과정에서 혹은 본 선거과정에서 여성끼리 경쟁하는 사례도 간혹 있다보니 이를 두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선거때 경쟁이 여성과 여성이 경쟁하는 경우도 많아져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하는 걱정이 되기는 한다.”(의원A)

최근 여성 진출이 증가하면서 제한된 선거구에 다수의 여성후보가 등장하는데 이런 우려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아직 여성의 원이 적다는 반증이 아닐까로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남성후보만 있었던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 이를 두고 남성끼리 싸운다거나 남성의 적은 남성이다'를 한번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력 당선 정당에 여성후보끼리 경쟁하는 모습에는 매우 낯설어하면서 '여성끼리 싸운다, 여자의 적은 여자이다'라는 차별적 인식을 생산하면서 이를 방해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여성정치참여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 여성 공천제도에 대한 평가

지방의회 여성할당제 의무조항인 현행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여성1인이상 추천하는 의무공천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해야할 것을 질문하였다.

우선 현행 1인이상 의무공천제가 앞서 비례대표제와 함께 여성지방의회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모두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나의 경우 여성의무공천제와 비례대표의 영향이 컸다. 비례대표로 선출되어 해보니 지역에도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경선시 여성가점제를 통해 이긴 경우가 있었다. 조금더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다. 또한 광주 동구의회의 경우에도, 여성의무공천제와 여성가점제가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본다. (반드시 여성을 공천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이제는) 지역위원장이 인지하고 있고, 기초의회에서 성공했듯이 광역과 국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의원F)

“ 여성의무공천제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인 중 여성비율이 높을 때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의원B)

또한 시도 또는 구시군의의회에 1인이상 공천하도록 되어 있어 시도보다는 구시군의의회 쏠림이 많다는 점에 대해 확대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의무공천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초와 광역 각각 1명씩 못을 박고 시작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다.”(의원D)

“광역, 기초의 선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초는 될 확률이 높으나 광역은 그렇지 않다보니 여성들이 출마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참여가 저조한) 광역의회와 기초 단체장 등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성의 의정활동,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천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때론 할당제나 의무공천제를 여성들이 받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으나 현실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보완조치는 필요하다.”(의원E)

다만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우려를 제시하였다.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필요하다. 공천하고 나번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제대로된 공천을 해서(공천할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 있고, 지역의 긍정적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함) 의무공천제 속에 여성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달라.”(의원C)

“1명의 의무공천제에 대한 것만으로도 남성후보자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기회는 열어두겠지만. 기초 1, 광역1 식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역량있는 여성정치인이 많아지게끔 하는게 중요하다.” (의원A)

“의무공천제의 형식화보다 여성의원들의 시도가 높아지면서 광역단위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의원G).

또한 여성의무공천제가 공천권자(국회의원 혹은 지역위원장 등)에게 과도한 권한을 준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동의하였고, 다양한 노력을 제안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권력 남용이 있을수 있는 제도이다. 국회의원이 지명해 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지명한 것에 대해 정당의 검증이 필요하다.”(의원A)

“실력을 보지 않고 지역위원장의 눈에 드나 안드냐가 중요한 상황도 많은 것 같다.”(의원D)

그 외에도 당선되지도 않을 지역에 던져주듯이 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본 선거보다 공천과정에서 당내 정치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공천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역과 정당별로 경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차별성이 있다. 2018년 선거시 자유한국당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어 광역의원도 많아졌다.”(의원 G)

“여성할당제나, 의무공천제 필요하지만,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차이가 크다.”(의원A)

참여한 의원들은 제도적 보완 의견에 비해 공천에서부터 당선까지 정당과 사회의 역할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 정당내 여성후보 발굴 및 지원 등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의원들은 정당의 교육이나 훈련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공천과정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 정당에서 여성들의 참여 기회를 열어주려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의원A)

“당내에서 지역의 좋은 사람을 가려내는 것도 필요하다.” (의원E)

“여성의 공천이 많아져야 한다고 하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 많다. 정당내 여성후보발굴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의원G)

한편 정당외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 마련에도 의견이 많았다. 특히 지역일수록 기회가 적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지역을 알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분에게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 초선 의원들의 경우,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전체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의원D)

“지역에 부산시 여성가족개발원의 위풍당당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치분야도 있다. 정치에 관심있는 청년이나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일수록 아카데미 등의 교육프로그램 등이 너무 없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의원 G)

또한 여성 정치인들간의 노력에도 중요한 무게를 두고 있다. 선배정치인과 여성들 스스로 서로 배제하지 않고 키워주는 여성네트워크 문화가 여전히 유효한 전략으로 꼽고 있다.

“좋은 여성후보가 많을수록 당이나 지역에서 남성과 겨뤘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좋은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가 아니라... 의원들 스스로가 여성이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후배를 키워보고 싶다는 여성선배정치인의 모습이 필요하다. 여성정치인을 발굴해서 키워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의원H)

여성의원의 수를 늘리고 지방의회에서 그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정당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의원들의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공인된 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받은 자격 있는 여성후보의 발굴, 당선이 된 이후에 아카데미나 캠프 등의 형태로라도 의정활동을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을 정당이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일까?

지난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여성정치참여를 우선적 과제로 논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여성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지원함에 있어 일정정도의 여성을 공직선거에 추천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여성추천보조금”(선거보조금)을 마련하였고,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 10%를 “여성정치발전비”(경상보조금)로 사용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을 함께 마련하였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선거기간에 여성후보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일상적으로는 정당이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과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해 여성정치발전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 제도가 십 수 년 전부터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성의원들이 정당에 기대하는 첫 번째 과제로 정당의 여성정치인 육성에 필요한 교육을 꼽고 있다는 것은 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서 기인한 것이다. 지난 2017년 연구¹⁶⁾에서는 주요정당의 여성정치발전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바 있는데 취지에 맞게 사용된다고 볼 수 없었고, 이후에도 개선되고 있지 못해 이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제5장 국민인식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결과

16) 박진경 외(2017) 2018년 지방선거 대비 여성대표성 확대 정치환경 개선방안 연구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설계

조사 대상	전국 18세 이상 남녀
조사 기간	2021년 10월 13일 ~ 14일 (2일간)
조사 방법	자동전화조사(ARS)
표본 추출	무선 가상번호 100% ※ SKT(15,000), KT(9,000), LGU+(6,000) 가입자 리스트로부터 무작위 추출
표본 수	1,005명 ※ 조사완료는 1,005명을 하였으나 1,000명으로 가중을 주어 결과를 산출함. 공표는 1,005명으로 해야함.
응답률	6.7%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가중값 산출	성/연령/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하여 셀 가중 (2021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조사 기관	(주)우리리서치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단체장 선거 성별에 따른 투표 후보 및 투표 이유 ■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가 당선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여성 기초단체장 수 인식 및 부족한 이유 ■ 여성 기초단체장 적정 비율 ■ 여성 기초단체장 비율 상향 방법 ■ 지방선거 공천 성별 동등비율 법제화 찬반 인식 및 이유 ■ 정당의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30% 규정 찬반 인식

2) 응답자 특성

구분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값 배율 (㉞/㉠)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5	100.0	1,000	100.0	1.00	
성별	남성	406	40.4	498	49.8	1.23
	여성	599	59.6	502	50.2	0.84
연령	만18세~20대	182	18.1	174	17.4	0.96
	30대	184	18.3	152	15.2	0.83
	40대	196	19.5	186	18.6	0.95
	50대	178	17.7	194	19.4	1.09
	60세 이상	265	26.4	294	29.4	1.11
지역	서울	219	21.8	190	19.0	0.87
	경기/인천	332	33.0	315	31.5	0.95
	대전/충청/세종	97	9.7	105	10.5	1.08
	광주/전라	103	10.2	97	9.7	0.94
	대구/경북	85	8.5	98	9.8	1.15
	부산/울산/경남	136	13.5	151	15.1	1.11
직업	강원/제주	33	3.3	44	4.4	1.33
	사무/관리직	181	18.0	170	17.0	0.94
	전문직	227	22.6	217	21.7	0.96
	생산직/기술직	88	8.8	93	9.3	1.06
	서비스/영업직	67	6.7	68	6.8	1.01
	자영업	132	13.1	150	15.0	1.14
	전업주부	163	16.2	149	14.9	0.91
	학생	64	6.4	58	5.8	0.91
	기타/무직	83	8.3	95	9.5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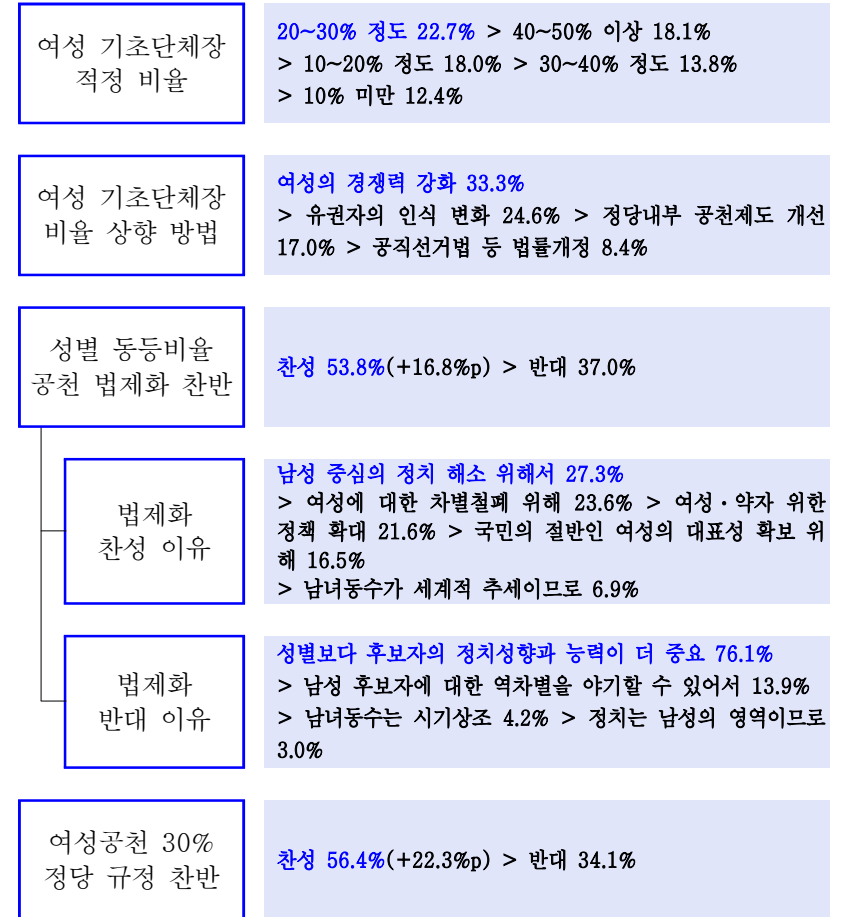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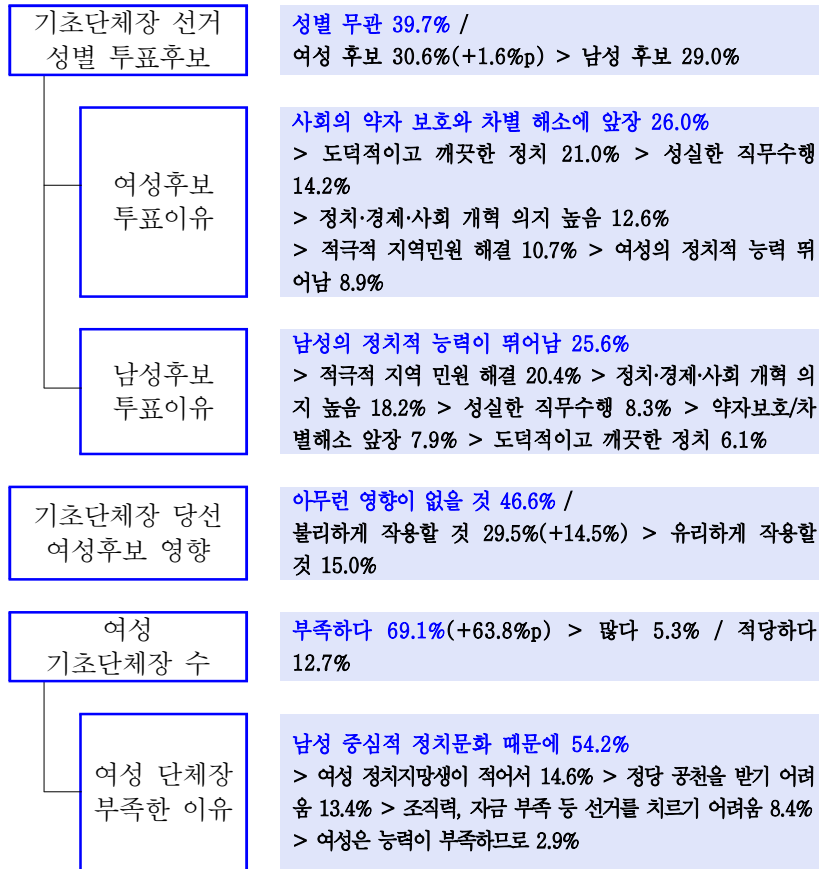
3) 여성 정치참여 확대 국민인식 조사 연혁

조사시기	조사주관	조사기관	표본수	조사방법/표본추출
2018.11.14.~15.	한국여성의정	조원씨앤아이	1,000명	무선 ARS조사
2020.2.12.	한국여성의정	우리리서치	1,000명	ARS조사/ RDD(유선30%, 무선 70%)
2021.10.13.~14.	한국여성의정	우리리서치	1,005명	ARS조사/ 무선가상번호 100%

제2절. 조사결과

1) 조사결과 요약

전체적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2) 세부 결과

문항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성과 남성 후보자의 경력이나 능력이 비슷하다면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 후보가 비슷한 자질이면 ‘성별과 상관없이’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30.6%로 ‘남성 후보에게 투표’(28.9%) 보다 +1.7%p 소폭 높게 나타났다.

① 기초단체장인 구청장, 시장, 군수 선거에 출마한 여성과 남성 후보자의 경력과 능력이 비슷하다면, 여성과 남성 중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를 성별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여성 후보에게 투표’ 38.5%(+13.8%p) > ‘남성 후보에게 투표’ 24.7%, 남성은 ‘남성 후보에게 투표’ 33.2%(+10.6%p) > ‘여성 후보에게 투표’ 22.6%로, 응답자 자신과 동일한 성별의 후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성별과 무관’하다는 응답은 20대 이하(55.1%), 40대(50.3%), 직업별로 학생(65.1%)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42>와 같다.

<표-42> 응답자 특성별 성별에 따른 투표 후보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가중값 적용 사례수	①	편차	②	성별 무관	잘 모름	
			여성후보	(①-②)	남성후보			
	(1005)	(1000)	30.6	+1.6	29.0	39.7	0.8	
성 별	남 성	(406)	(498)	22.6	-10.6	33.2	43.8	0.4
	여 성	(599)	(502)	38.5	+13.8	24.7	35.6	1.2
연 령	만18세~20대	(182)	(174)	25.8	+7.1	18.7	55.1	0.5
	30대	(184)	(152)	27.7	-0.8	28.5	42.4	1.5
	40대	(196)	(186)	24.7	+0.0	24.7	50.3	0.3
	50대	(178)	(194)	34.7	+6.9	27.8	36.7	0.8
	60세 이상	(265)	(294)	36.0	-2.7	38.7	24.4	0.9
지 역	서 울	(219)	(190)	27.6	+0.7	26.9	45.3	0.2
	경기/인천	(332)	(315)	29.5	+6.6	22.9	46.3	1.3
	대전/세종/충청	(97)	(105)	31.2	-1.2	32.4	34.7	1.6
	광주/전라	(103)	(97)	33.2	+1.2	32.0	33.9	0.9
	대구/경북	(85)	(98)	25.6	-9.6	35.2	39.2	
	부산/울산/경남	(136)	(151)	36.4	+3.0	33.4	29.7	0.5
	강원/제주	(33)	(44)	35.9	-0.7	36.6	27.5	
직 업	사무/관리직	(181)	(170)	30.3	+4.1	26.2	42.7	0.7
	전문직	(227)	(217)	29.8	-0.8	30.6	39.1	0.4
	생산직/기술직	(88)	(93)	27.2	-1.3	28.5	44.3	
	서비스/영업직	(67)	(68)	34.5	+0.9	33.6	31.9	
	자영업	(132)	(150)	32.9	-1.5	34.4	31.5	1.1
	전업주부	(163)	(149)	33.5	+4.9	28.6	37.0	1.0
	학 생	(64)	(58)	21.4	+9.2	12.2	65.1	1.4
	기타/무직	(83)	(95)	30.9	+1.4	29.5	37.9	1.8
여성후보당선영향	유리한 작용	(143)	(150)	60.2	+35.9	24.3	14.9	0.6
	불리한 작용	(308)	(295)	39.8	+4.0	35.8	24.4	
	영향 없음	(458)	(466)	17.4	-8.2	25.6	56.6	0.4
여성단체장수	부 족	(704)	(691)	40.8	+17.8	23.0	35.6	0.6
	적당함	(124)	(127)	10.9	-39.3	50.2	38.9	
	많 음	(54)	(53)	5.5	-62.3	67.8	24.9	1.8
성별동등비율인식	찬 성	(548)	(538)	46.0	+22.8	23.2	30.4	0.4
	반 대	(367)	(370)	13.1	-26.5	39.6	46.5	0.9
여성공천30%규정	찬 성	(563)	(564)	38.7	+10.7	28.0	32.9	0.5
	반 대	(339)	(341)	20.5	-13.4	33.9	45.0	0.6

<표-43> 응답자 특성별 여성후보 투표 이유

다음으로 여성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려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26.1%가 ‘약자해소, 차별해소에 앞장섬’을 꼽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치’를 21%가 그 이유로 들었다. 성실한 직무수행(14.2%), 높은 개혁의지(12.7%)가 그 뒤를 이었다.

② 여성 후보에게 투표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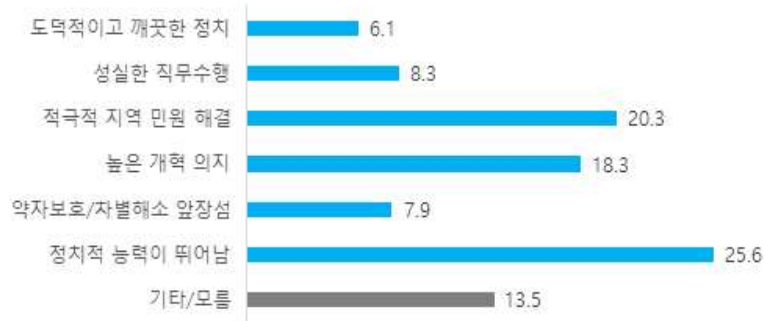


‘약자보호/차별해소 앞장’은 20대 이하(41.7%), 사무/관리직(34.0%)에서, ‘도덕적/깨끗한 정치’는 남성(27.3%), 50대(27.1%), 60대 이상(27.4%)에서, ‘개혁의지 높음’은 30대(23.6%)에서, ‘적극적 지역민원 해결’은 주부(16.0%)에서, ‘여성의 정치적 능력 뛰어남’은 20대 이하(19.7%), 40대(13.0%)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 세부사항은 <표-43>과 같다.

구 분	조사 완료 사례 수	가중값 적용 사례 수	도덕적 / 깨끗한 정치	성실한 직무수행	적극적 지역민원 해결	높은 개혁의지	약자보호 차별해소	정치적 능력 뛰어남	기타/모름	
										(317)
성 별	남 성	(86)	(113)	27.3	16.2	6.5	17.1	21.4	4.8	6.7
	여 성	(231)	(193)	17.4	13.1	13.1	10.1	28.7	11.3	6.4
연 령	만18세~20대	(53)	(45)	7.2	6.7	3.4	10.5	41.7	19.7	10.8
	30대	(50)	(42)	8.2	11.5	5.9	23.6	20.3	8.8	21.6
	40대	(53)	(46)	22.7	14.9	9.0	7.7	26.8	13.0	5.9
	50대	(65)	(67)	27.1	15.3	13.9	11.6	26.4	3.4	2.3
	60세 이상	(96)	(106)	27.4	17.6	14.2	12.0	21.1	6.1	1.7
지 역	서 울	(63)	(52)	18.4	16.2	6.0	14.2	28.1	11.6	5.6
	경기/인천	(101)	(93)	21.3	20.1	6.7	12.1	23.8	7.6	8.4
	대전/충청	(30)	(33)	11.4	6.3	14.3	24.7	23.2	12.6	7.4
	광주/전라	(36)	(32)	34.8	17.4	4.7	6.2	29.0	3.9	4.0
	대구/경북	(23)	(25)	17.4		24.1	16.4	30.2	6.6	5.3
	부산/울산/경남	(52)	(55)	21.0	16.0	15.2	9.3	25.2	11.1	2.2
	강원/제주	(12)	(16)	26.3		16.1	4.7	27.5	6.3	19.0
직 업	사무/관리직	(56)	(52)	20.0	17.4	7.0	6.3	34.0	8.1	7.2
	전문직	(75)	(65)	17.9	17.1	14.3	11.4	24.5	8.6	6.2
	생산직/기술직	(23)	(25)	21.4	9.0	6.4	27.9	26.0	9.2	
	서비스/영업직	(20)	(23)	22.6	9.5	4.3	18.8	24.3	17.8	2.8
	자영업	(44)	(49)	25.3	15.1	12.0	12.9	23.3	3.7	7.8
	전업주부	(56)	(50)	22.9	14.8	16.0	7.1	20.6	10.4	8.2
	학 생	(17)	(12)	6.4	6.4	6.1	11.5	58.0		11.6
	기타/무직	(26)	(29)	24.1	11.5	8.4	18.1	16.7	13.7	7.5
여성후보당선영향	유리한 작용	(83)	(90)	27.7	22.9	6.1	12.7	15.4	11.0	4.2
	불리한 작용	(129)	(117)	16.7	13.2	15.8	12.8	28.8	7.6	5.2
	영향 없음	(85)	(81)	21.6	6.3	9.6	13.4	31.5	8.5	9.1
여성단체장수	부 족	(297)	(282)	21.8	13.9	11.2	13.1	26.2	9.7	4.1
	적당함	(11)	(14)	10.9	27.6		12.1	21.4		28.1
	많 음	(3)	(3)							100
성별동등비율공천	찬 성	(258)	(247)	22.0	13.1	12.5	13.0	26.6	9.3	3.5
	반 대	(47)	(48)	19.2	18.5	1.4	10.8	23.1	5.5	21.5
여성공천 30% 규정	찬 성	(224)	(218)	23.4	13.5	11.4	12.6	26.9	8.0	4.3
	반 대	(73)	(70)	17.3	14.4	8.7	13.2	21.2	14.1	11.1

다음은 남성후보에게 투표하려고 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남성 후보에게 투표 하려는 이유는 ‘남성의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므로’(25.6%), ‘적극적으로 지역민원을 해결할 것이므로’(20.3%), ‘정치·경제·사회 개혁의지가 높으므로’(18.3%)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③ 남성 후보에게 투표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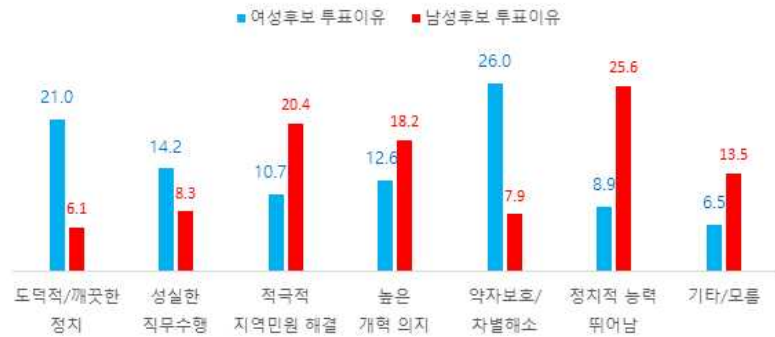
남성의 정치적 능력이 뛰어남'은 30대를 제외한 모든 성/연령에서 1순위 비율을 보였다. '적극적 지역 민원 해결'은 자영업(32.4%)에서, '개혁의지 높음'은 50대(21.5%)와 60대 이상(21.9%)에서, '성실한 직무수행'은 40대(15.5%)에서 전체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4>를 통해 응답자 특성별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표-44> 응답자 특성별 남성후보 투표 이유

구 분	조사 완료 사례 수	가중값 적용 사례 수	도덕적 / 깨끗한 정치	성실한 직무수행	적극적 지역민원 해결	높은 개혁의지	약자보호 차별해소	정치적 능력이 뛰어남	기타/모름	
	(277)	(290)	6.1	8.3	20.4	18.2	7.9	25.6	13.5	
성 별	남 성	(141)	(165)	4.6	9.5	23.3	16.3	7.0	27.4	11.9
	여 성	(136)	(124)	8.1	6.8	16.5	20.8	9.1	23.2	15.6
연 령	만18세~20대	(33)	(33)	5.7	3.1	21.7	12.6	8.2	32.1	16.7
	30대	(48)	(43)	2.3	8.2	23.6	12.4	7.5	23.3	22.7
	40대	(48)	(46)	3.1	15.5	23.0	14.8	4.7	23.9	15.0
	50대	(48)	(54)	4.2	10.6	10.0	21.5	10.1	29.9	13.7
	60세 이상	(100)	(114)	9.8	6.0	22.6	21.9	8.2	23.2	8.4
지 역	서 울	(54)	(51)	6.9	4.6	27.8	18.9	3.7	30.8	7.4
	경기/인천	(74)	(72)	6.4	8.4	20.6	16.0	10.4	26.4	11.7
	대전/세종/충청	(33)	(34)	6.7	6.9	16.6	17.1	6.1	13.4	33.3
	광주/전라	(29)	(31)	6.0	1.6	10.1	22.3	18.2	25.2	16.5
	대구/경북	(28)	(34)	3.1	13.8	22.7	14.8	3.1	35.6	6.9
	부산/울산/경남	(47)	(51)	3.7	8.7	26.2	17.7	9.2	24.6	9.9
	강원/제주	(12)	(16)	15.8	23.3		29.5		13.2	18.2
직 업	사무/관리직	(45)	(45)		1.5	24.8	20.8	4.3	29.6	19.0
	전문직	(65)	(67)	6.9	12.1	21.6	11.0	11.0	31.8	5.6
	생산직/기술직	(26)	(27)		17.2	27.5	24.1	14.1	13.4	3.6
	서비스/영업직	(23)	(23)	3.7		11.3	23.3	6.8	18.3	36.5
	자영업	(43)	(52)	8.9	10.8	32.4	11.9	6.5	21.3	8.3
	전업주부	(44)	(43)	9.1	8.3	8.7	19.0	7.5	26.6	20.7
	학 생	(8)	(7)			14.2	14.2		42.0	29.6
	기타/무직	(23)	(28)	13.7	6.3	8.1	33.2	6.4	23.8	8.6
여성후보영향	유리한 작용	(33)	(36)	5.1	6.1	24.5	11.1	14.4	29.4	9.3
	불리한 작용	(102)	(106)	3.5	5.3	20.4	16.8	8.4	33.4	12.2
	영향 없음	(114)	(119)	8.4	10.1	20.1	21.6	5.8	17.8	16.2
여성단체장수	부 족	(149)	(159)	7.3	6.7	18.0	19.7	8.8	23.4	16.1
	적당함	(63)	(64)	3.7	9.4	30.4	17.0	10.5	25.7	3.3
	많 음	(36)	(36)	8.0	1.9	14.7	18.9	6.0	41.0	9.5
성별비율공천	찬 성	(116)	(125)	5.8	7.0	14.1	22.4	14.5	21.4	14.8
	반 대	(143)	(146)	6.5	10.2	25.3	16.1	3.2	28.4	10.3
여성공천30%규정	찬 성	(147)	(158)	5.4	7.8	17.0	22.8	8.9	25.0	13.1
	반 대	(115)	(115)	7.0	8.9	23.5	11.9	7.7	27.0	14.0

여성후보와 남성후보를 투표하고자 하는 이유를 비교해 보았다. 남성후보의 경우, 정치능력 뛰어남, '약자보호/차별해소', '도덕적/깨끗한 정치'의 항목에서 성별 선택비율의 차이가 두드러게 나타났다. 여성후보는 '약자보호/차별해소'가 26.1%로 1순위였으나 남성후보는 7.9%에 그쳤으며, '정치능력 뛰어남'은 남성후보가 25.6%로 1순위인 반면 여성후보는 8.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덕적/깨끗한 정치'는 여성후보에서 21.0%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남성후보는 6.1%로 가장 낮아 성별 차이가 보이는 항목이었다.

④ 여성후보/남성후보 투표 이유 비교(%)



다음은 기초단체장 후보가 여성이라는 점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기초단체장 후보가 여성이라는 점이 당선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았으며, '불리하게 작용할 것'(29.5%)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15.0%)이라는 응답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⑤ 기초단체장 후보가 여성이라는 점이 당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리하게 작용'은 모든 성·연령·지역·직업에서 '유리하게 작용'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 가운데, 30대(37.3%), 사무·관리직·전문직·생산/기술직(35%~36%)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았다. '유리하게 작용'은 60대 이상(22.0%), 자영업(20.9%)에서, '영향 없음'은 40대(58.6%), 학생(60.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에서는 '유리하게 작용' 29.4%, '불리하게 작용' 38.3%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 세부사항은 <표-45> 와 같다.

<표-45> 응답자 특성별 여성후보가 당선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가중값 적용 사례수	①유리하게 작용	편차 (①-②)	②불리하게 작용	영향 없음	잘 모름	
	1005	1000	15.0	-14.5	29.5	46.6	9.0	
성 별	남 성	(406)	(498)	18.1	-7.9	26.0	49.7	6.2
	여 성	(599)	(502)	11.9	-21.0	32.9	43.4	11.7
연 령	만18세~20대	(182)	(174)	15.6	-15.6	31.2	43.8	9.3
	30대	(184)	(152)	14.6	-22.7	37.3	41.6	6.5
	40대	(196)	(186)	5.3	-25.2	30.5	58.6	5.6
	50대	(178)	(194)	13.1	-16.2	29.3	49.6	8.0
	60세 이상	(265)	(294)	22.0	-1.8	23.8	41.2	13.0
지 역	서 울	(219)	(190)	21.1	-3.9	25.0	46.4	7.5
	경기/인천	(332)	(315)	13.5	-16.1	29.6	48.1	8.7
	대전/세종/충청	(97)	(105)	6.8	-22.9	29.7	56.3	7.2
	광주/전라	(103)	(97)	13.9	-22.5	36.4	33.9	15.8
대구/경북	(85)	(98)	17.6	-13.1	30.7	45.2	6.5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가중값 적용 사례수	①유리하 게 작용	편차 (①-②)	②불리하 게 작용	영향 없음	잘 모름	
	1005	1000	15.0	-14.5	29.5	46.6	9.0	
	부산/울산/경남	(136)	(151)	14.5	-15.4	29.9	47.4	8.3
	강원/제주	(33)	(44)	16.3	-11.4	27.7	41.2	14.8
직 업	사무/관리직	(181)	(170)	12.2	-24.0	36.2	46.3	5.3
	전문직	(227)	(217)	13.7	-22.9	36.6	43.0	6.7
	생산직/기술직	(88)	(93)	15.7	-19.5	35.2	42.1	7.0
	서비스/영업직	(67)	(68)	19.8	-2.2	22.0	52.0	6.2
	자영업	(132)	(150)	20.9	-5.4	26.3	44.2	8.6
	전업주부	(163)	(149)	11.0	-9.1	20.1	52.3	16.5
	학 생	(64)	(58)	10.5	-8.9	19.4	60.2	9.9
	기타/무직	(83)	(95)	18.2	-8.3	26.5	42.1	13.2
투표후보성 별	여성후보	(317)	(306)	29.4	-8.9	38.3	26.5	5.8
	남성후보	(277)	(290)	12.6	-23.8	36.4	41.2	9.8
	성별과 무관	(401)	(397)	5.6	-12.5	18.1	66.4	9.8
여성 단체장 수	부 족	(704)	(691)	16.5	-16.0	32.5	43.0	8.0
	적당함	(124)	(127)	18.5	-8.3	26.8	45.1	9.6
	많 음	(54)	(53)	16.1	-17.3	33.4	40.6	9.8
성별동등비 율공천	찬 성	(548)	(538)	20.0	-9.0	29.0	41.4	9.6
	반 대	(367)	(370)	9.9	-22.5	32.4	51.5	6.2
여성공천 30% 규정	찬 성	(563)	(564)	17.6	-13.5	31.1	42.4	8.9
	반 대	(339)	(341)	13.0	-16.8	29.8	51.1	6.1



‘부족하다’는 모든 성/연령/지역/직업별로 59%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여성(77.4%), 50대(79.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성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여성후보가 부족하다’ (55.0%), 성별 동등비율 공천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여성후보가 부족하다’ (45.2%), 정당의 여성공천 30% 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여성후보가 부족하다’ (47.6%) 로 나타나 ‘많다’거나 ‘적당하다’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응답자 특성별 세부내용은 <표-46> 과 같다.

<표-46> 응답자 특성별 여성 기초단체장 수 인식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가중값 적용 사례수	①	편차	②	적당하다	잘 모름	
			부족하다	(①-②)	많다			
	1005	1000	69.1	+63.8	5.3	12.7	12.9	
성 별	남 성	(406)	(498)	60.8	+53.5	7.3	16.9	15.0
	여 성	(599)	(502)	77.4	+74.1	3.3	8.6	10.8
연 령	만18세~20대	(182)	(174)	61.4	+53.5	7.9	14.4	16.3
	30대	(184)	(152)	61.0	+53.9	7.1	19.7	12.2
	40대	(196)	(186)	67.6	+62.1	5.5	10.2	16.7
	50대	(178)	(194)	79.9	+76.0	3.9	5.4	10.8
	60세 이상	(265)	(294)	71.7	+68.1	3.6	14.5	10.1
지 역	서 울	(219)	(190)	70.8	+65.1	5.7	13.1	10.3
	경기/인천	(332)	(315)	68.8	+64.4	4.4	13.1	13.7
	대전/세종/충청	(97)	(105)	68.2	+58.9	9.3	12.7	9.8
	광주/전라	(103)	(97)	67.6	+60.3	7.3	8.1	17.1
	대구/경북	(85)	(98)	62.0	+57.2	4.8	17.4	15.8
	부산/울산/경남	(136)	(151)	74.8	+70.5	4.3	10.1	10.8
직 업	강원/제주	(33)	(44)	65.8	+65.8		17.5	16.7
	사무/관리직	(181)	(170)	66.2	+58.6	7.6	17.3	8.8
	전문직	(227)	(217)	73.6	+69.6	4.0	11.3	11.1

다음은 현 기초단체장의 여성 수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현재 여성 기초단체장 수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69.1%로 매우 높았으며, 이중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과반 비율에 가까운 46.2%에 달했다.

⑥ 우리나라 기초단체장은 226명입니다. 이중 여성은 9명으로 전체의 4%를 차지합니다.

선생님께서도 현재의 여성 기초단체장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가중값 적용 사례수	①	편차	②	적당하다	잘 모름
			부족하다	(①-②)	많다		
	1005	1000	69.1	+63.8	5.3	12.7	12.9
	생산직/기술직 (88)	(93)	64.4	+58.5	5.9	14.1	15.6
	서비스/영업직 (67)	(68)	71.2	+65.1	6.1	14.8	8.0
	자영업 (132)	(150)	68.4	+62.7	5.7	10.2	15.7
	전업주부 (163)	(149)	71.3	+68.0	3.3	11.1	14.4
	학생 (64)	(58)	59.0	+53.4	5.6	20.7	14.7
	기타/무직 (83)	(95)	71.0	+65.8	5.2	6.6	17.2
투표후보 성별	여성후보 (317)	(306)	92.2	+91.2	1.0	4.5	2.3
	남성후보 (277)	(290)	55.0	+42.6	12.4	22.1	10.6
	성별과 무관 (401)	(397)	62.0	+58.7	3.3	12.5	22.2
여성후보당 선영향	유리한 작용 (143)	(150)	76.5	+70.8	5.7	15.8	2.0
	불리한 작용 (308)	(295)	76.2	+70.2	6.0	11.6	6.2
	영향 없음 (458)	(466)	63.8	+59.2	4.6	12.3	19.3
성별동등비 율공천	찬 성 (548)	(538)	88.4	+87.4	1.0	5.7	4.9
	반 대 (367)	(370)	45.2	+33.6	11.6	24.1	19.0
여성공천 30% 규정	찬 성 (563)	(564)	85.4	+83.7	1.7	6.8	6.0
	반 대 (339)	(341)	47.6	+36.4	11.2	22.6	18.6

다음은 여성기초단체장이 왜 부족한가를 질문하였다. 여성 기초단체장 수가 '부족하다'는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남성 중심적 정치문화 때문에'라는 응답이 54.2%로 과반 비율을 넘었다.

⑦ 여성 기초단체장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남성 중심 정치문화'는 모든 성/연령/지역/직업에서 1순위 비율을 나타냈으며, 여성(60.9%), 20대 이하(65.0%), 30대(63.3%)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았다. '여성

정치지망생 적음'은 남성(19.7%), 생산/기술직(20.9%), 학생(20.3%)에서, '정당공천 받기 어려움'은 전문직(19.5%), 주부(18.2%)에서, '조직력/자금 부족'은 60대 이상(15.1%), 주부(13.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응답자별 특성은 <표-47>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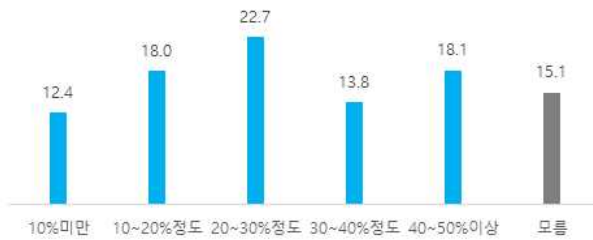
<표-47> 응답자 특성별 여성 기초단체장 부족한 이유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가중값 적용 사례수	남성중심 적 정치문화	능력이 부족	조직력/ 자금부족	공천받기 어려움	정치 지망생 적음	기타/ 모름	
			(704)	(691)	54.2	2.9	8.4	13.4	14.6
성 별	남 성	(238)	(303)	45.6	3.2	10.0	13.2	19.7	8.2
	여 성	(466)	(388)	60.9	2.6	7.1	13.6	10.6	5.2
연 령	만18세~20대	(117)	(107)	65.0	3.2	2.3	7.3	17.0	5.2
	30대	(116)	(93)	63.3	1.8	3.8	10.6	15.6	4.9
	40대	(139)	(126)	53.6	2.6	3.3	13.7	16.2	10.6
	50대	(141)	(155)	53.7	3.0	10.3	14.9	12.8	5.2
	60세 이상	(191)	(211)	45.4	3.3	15.1	16.5	13.2	6.4
지 역	서 울	(156)	(135)	59.2	2.7	10.9	5.6	15.6	6.0
	경기/인천	(228)	(217)	57.2	1.5	6.2	16.3	13.0	5.8
	대전/세종/충청	(64)	(72)	45.2	5.4	10.0	10.3	19.4	9.6
	광주/전라	(76)	(66)	50.4	3.6	9.9	16.4	11.3	8.4
	대구/경북	(52)	(61)	43.9	2.7	8.4	17.4	27.6	
	부산/울산/경남	(103)	(113)	50.6	3.9	9.9	18.9	9.8	6.9
	강원/제주	(25)	(29)	75.4	2.8			8.1	13.8
직 업	사무/관리직	(123)	(113)	60.5	0.9	6.8	8.7	18.1	5.1
	전문직	(170)	(160)	50.4	2.0	8.1	19.5	17.1	2.8
	생산직/기술직	(57)	(60)	48.2	3.3	8.6	10.6	20.9	8.4
	서비스/영업직	(46)	(48)	60.0	5.1	4.2	12.2	8.6	9.9
	자영업	(92)	(103)	58.2	1.0	7.8	12.3	12.0	8.6
	전업주부	(117)	(106)	52.2	3.5	13.2	18.2	8.2	4.8
	학 생	(38)	(34)	49.8	4.9	3.4	11.5	20.3	10.1
	기타/무직	(61)	(67)	53.2	7.3	10.6	5.5	12.4	11.1
투 표 후 보 성 별	여성후보	(297)	(282)	64.5	1.5	6.6	18.1	7.3	2.0
	남성후보	(149)	(159)	39.4	6.3	10.6	11.0	24.6	8.0
	성별과 무관	(253)	(246)	52.3	2.3	8.8	9.9	16.3	10.4
여 성 후 보 당 선 영 향	유리한 작용	(108)	(114)	50.7	1.4	7.7	22.2	14.3	3.7
	불리한 작용	(242)	(225)	58.2	3.8	7.0	15.2	12.2	3.7
	영향 없음	(294)	(297)	52.4	2.9	9.0	11.0	17.1	7.6
성 별 동 등 비 율 공 천	찬 성	(488)	(475)	58.0	2.8	7.5	15.7	10.5	5.6
	반 대	(166)	(167)	47.6	4.0	9.9	8.3	25.6	4.5
여 성 공 천 30% 규 정	찬 성	(485)	(482)	54.4	2.6	8.8	15.6	13.8	4.9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가중값 적용 사례수	남성중심적 정치문화	능력이 부족	조직력/자금부족	공천받기 어려움	정치 지망생 적음	기타/모름
		(704)	(691)	54.2	2.9	8.4	13.4	14.6	6.5
30% 규정	반 대	(168)	(162)	57.0	4.6	4.2	9.6	17.6	7.1

다음은 여성 기초단체장의 걱정 비율에 대한 의견이다. 걱정 여성 기초단체장 수 비율은 '20~30% 정도'가 22.7%로 가장 높았으며, '40~50% 이상'도 18.1%로 두 번째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10% 미만은 12.4%로 가장 낮았다.

⑧ 기초단체장 중 여성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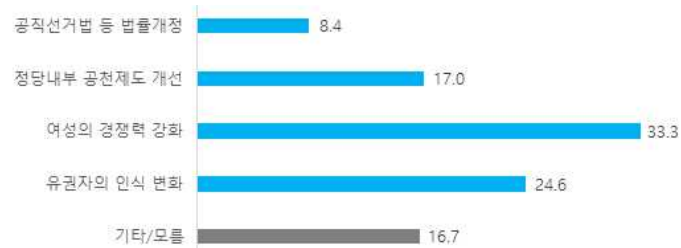
성별로는 남성은 '20~30% 정도'(21.9%), 여성은 '40~50% 이상'(25.8%)이 1순위였으며, '10% 미만'은 남성이 18.3%로 전체평균 보다 높았던 반면, 여성은 6.5%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의 '40~50% 이상'이 1순위(20대 이하 31.9%, 30대 20.5%, 40대 22.3%)였으며, 50대 이상은 '20~30% 정도'가 1순위(50대 27.6%, 60대 이상 34.5%)였다. 성별 동등비율 공천을 법제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20~30% 정도'(29.2%)와 '40~50% 이상'(27.5%)이 1,2순위였으나,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0% 미만'이 25.9%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 특성은 <표-48> 과 같다.

<표-48> 응답자 특성별 여성 기초단체장 걱정 비율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가중값 적용 사례수	10% 미만	10~20% 정도	20~30% 정도	30~40% 정도	40~50% 이상	모름
		(1005)	(1000)	12.4	18.0	22.7	13.8	18.1	15.1
성 별	남 성	(406)	(498)	18.3	18.4	21.9	12.3	10.3	18.8
	여 성	(599)	(502)	6.5	17.6	23.5	15.2	25.8	11.4
연 령	만18세~20대	(182)	(174)	14.0	11.1	6.0	10.0	31.9	27.0
	30대	(184)	(152)	16.8	9.5	17.5	12.8	20.5	22.9
	40대	(196)	(186)	11.6	14.6	18.7	14.6	22.3	18.1
	50대	(178)	(194)	8.7	23.3	27.6	20.7	12.3	7.3
	60세 이상	(265)	(294)	12.0	25.1	34.5	11.3	9.9	7.2
지 역	서 울	(219)	(190)	12.2	14.3	21.8	16.4	18.4	16.9
	경기/인천	(332)	(315)	8.6	18.2	21.5	14.6	19.2	18.0
	대전/세종/충청	(97)	(105)	17.5	23.4	20.8	12.8	17.7	7.8
	광주/전라	(103)	(97)	16.3	13.3	29.2	13.5	17.7	10.0
	대구/경북	(85)	(98)	20.6	16.4	24.7	12.3	14.6	11.4
	부산/울산/경남	(136)	(151)	8.9	23.4	23.5	9.3	20.5	14.5
직 업	강원/제주	(33)	(44)	12.6	15.8	18.1	17.5	11.1	24.8
	사무/관리직	(181)	(170)	16.9	11.7	16.1	14.9	25.4	14.9
	전문직	(227)	(217)	11.6	15.7	21.7	13.6	22.0	15.5
	생산직/기술직	(88)	(93)	13.0	24.2	15.6	15.0	15.0	17.3
	서비스/영업직	(67)	(68)	6.8	21.4	31.0	12.8	15.3	12.7
	자영업	(132)	(150)	13.6	20.0	31.8	12.9	11.8	10.0
	전업주부	(163)	(149)	7.6	25.1	30.0	12.0	12.0	13.3
	학 생	(64)	(58)	13.0	11.7	10.7	9.7	24.2	30.6
	기타/무직	(83)	(95)	14.4	15.8	19.0	18.3	17.2	15.3
투표후보성	여성후보	(317)	(306)	5.0	11.9	27.6	18.1	34.7	2.7
	남성후보	(277)	(290)	27.6	30.4	21.9	6.1	4.5	9.5
	성별과 무관	(401)	(397)	7.0	14.0	19.7	15.7	15.5	28.1
여성후보당선영향	유리한 작용	(143)	(150)	16.8	18.7	28.2	9.5	20.0	6.9
	불리한 작용	(308)	(295)	15.9	18.0	18.4	18.3	24.4	5.1
	영향 없음	(458)	(466)	9.6	18.2	23.1	13.2	15.3	20.7
여성단체장수	부 족	(704)	(691)	3.0	19.4	28.0	18.7	24.5	6.4
	적당함	(124)	(127)	45.0	20.3	15.3	0.3	3.7	15.4
	많 음	(54)	(53)	71.4	4.3	6.2	2.5	5.5	10.1
성별동등비율공천	찬 성	(548)	(538)	3.7	17.3	29.2	18.5	27.5	3.8
	반 대	(367)	(370)	25.9	20.6	12.9	8.0	6.8	25.8
여성공천30% 규정	찬 성	(563)	(564)	5.1	22.9	31.9	18.3	17.3	4.4
	반 대	(339)	(341)	24.9	12.0	9.1	8.1	20.1	25.8

다음은 여성 기초단체장 비율 상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여성 기초단체장 비율 상향을 위한 방법은 ‘여성 경쟁력 강화’(33.3%)와 ‘유권자 인식 변화’(24.6%)를 선택한 비율이 법·제도 개선(‘정당내부 공천제도 개선’ 17.0%, 공직선거법 등 법률개정 8.4%) 보다 높았다.

⑨ 여성 기초단체장의 비율을 높인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유권자 인식 변화’(31.5%), ‘정당공천제도 개선’(25.2%), ‘선거법 등 개정’(13.3%)을 선택한 비율이 전체평균 보다 높았다. ‘성별 동등비율 공천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자와 ‘여성공천 30% 정당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여성 경쟁력 강화’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49.1%, 41.5%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법·제도 개선을 선택한 비율은 전체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 특성은 <표-49>와 같다.

<표-49> 응답자 특성별 여성 기초단체장 비율 상향 방법

구 분		조사 원료 사례 수	가중값 적용 사례 수	선거법 등법률 개정	정당공천 제도개선	여성의 경쟁력 강화	유권자의 인식 변화	기타/ 모름
		1005	1000	8.4	17.0	33.3	24.6	16.7
성 별	남 성	(406)	(498)	6.4	15.9	38.7	22.8	16.1
	여 성	(599)	(502)	10.4	18.1	27.9	26.4	17.2
연 령	만18세~20대	(182)	(174)	7.3	14.9	34.9	23.2	19.7
	30대	(184)	(152)	7.3	17.1	46.1	18.7	10.9

구 분		조사 원료 사례 수	가중값 적용 사례 수	선거법 등법률 개정	정당공천 제도개선	여성의 경쟁력 강화	유권자의 인식 변화	기타/ 모름	
		1005	1000	8.4	17.0	33.3	24.6	16.7	
	40대	(196)	(186)	7.9	13.2	34.8	25.3	18.8	
	50대	(178)	(194)	11.8	19.9	30.3	26.4	11.5	
	60세 이상	(265)	(294)	7.7	18.7	26.7	27.0	19.9	
지 역	서 울	(219)	(190)	9.2	11.8	39.5	23.2	16.4	
	경기/인천	(332)	(315)	6.4	17.8	34.4	23.7	17.7	
	대전/세종/충청	(97)	(105)	9.8	18.5	37.2	20.2	14.3	
	광주/전라	(103)	(97)	7.6	19.1	20.8	33.6	18.9	
	대구/경북	(85)	(98)	8.0	22.3	27.4	26.9	15.4	
	부산/울산/경남	(136)	(151)	12.3	16.6	33.8	23.5	13.8	
	강원/제주	(33)	(44)	5.8	15.6	27.8	27.3	23.5	
직 업	사무/관리직	(181)	(170)	10.8	13.1	42.9	22.4	10.8	
	전문직	(227)	(217)	6.4	20.6	33.2	28.0	11.7	
	생산직/기술직	(88)	(93)	8.7	15.4	36.2	23.5	16.2	
	서비스/영업직	(67)	(68)	16.1	17.1	23.1	29.9	13.9	
	자영업	(132)	(150)	7.1	21.1	32.9	20.2	18.7	
	전업주부	(163)	(149)	8.9	11.1	26.7	30.8	22.4	
	학 생	(64)	(58)	5.3	14.0	43.0	11.5	26.2	
	기타/무직	(83)	(95)	6.2	21.9	25.6	23.5	22.8	
	투표후보 성별	여성후보	(317)	(306)	13.3	25.2	24.5	31.5	5.4
		남성후보	(277)	(290)	7.5	13.3	35.0	23.7	20.5
성별과 무관		(401)	(397)	5.2	13.6	39.2	20.2	21.8	
여성후보 당선영향	유리한 작용	(143)	(150)	12.2	20.5	31.2	27.0	9.1	
	불리한 작용	(308)	(295)	9.6	18.7	32.6	27.5	11.5	
	영향 없음	(458)	(466)	7.0	15.7	36.7	22.5	18.1	
여성 단체장 수	부 족	(704)	(691)	9.7	21.5	30.1	29.2	9.5	
	적당함	(124)	(127)	8.4	9.8	43.2	15.7	22.8	
	많 음	(54)	(53)	3.8	8.4	36.4	13.5	37.9	
성별동등 비율공천	찬 성	(548)	(538)	13.4	21.8	22.9	31.0	10.9	
	반 대	(367)	(370)	2.1	10.4	49.1	18.0	20.4	
여성공천 30% 규정	찬 성	(563)	(564)	10.7	20.6	30.1	26.8	11.9	
	반 대	(339)	(341)	5.4	13.9	41.5	21.0	18.3	

지방선거에서 공천시 성별을 동등하게 하는 것을 법제화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지방선거 공천 시 성별 동등비율을 법률로 정하는 것을 ‘찬성한다’가 53.8%로 ‘반대한다’(37.0%) 보다 16.8%p 높았다.

⑩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를 공천할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별로는 여성에서 찬성(66.8%)이 반대(25.6%) 보다 높았던 반면, 남성은 반대(48.5%)가 찬성(40.6%) 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반대 51.0%)>찬성 36.9%)를 비롯한 20대 이하(반대 44.1%)와 40대(반대 41.3%)는 반대 의견이 전체평균 보다 높았으나, 50대 이상은 찬성 의견(50대 61.8%, 60대 이상 65.5%)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장 수가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법제화 찬성이 68.7%로 전체평균 보다 높았으나, '적당하다'와 '많다'는 응답자는 법제화 반대가 각각 70.2%, 81.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응답자별 특성은 <표-50> 과 같다.

<표-50> 응답자 특성별 지방선거 성별 동등비율 법제화 인식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가중값 적용 사례수	①찬성	편차 (①-②)	②반대	기타/ 모름	
							1005
성 별	남 성	(406)	(498)	40.6	-7.9	48.5	10.8
	여 성	(599)	(502)	66.8	+41.2	25.6	7.6
연 령	만18세~20대	(182)	(174)	46.6	+2.5	44.1	9.3
	30대	(184)	(152)	36.9	-14.1	51.0	12.1
	40대	(196)	(186)	47.3	+6.0	41.3	11.4
	50대	(178)	(194)	61.8	+31.1	30.7	7.5
	60세 이상	(265)	(294)	65.5	+38.5	27.0	7.5
지 역	서 울	(219)	(190)	52.2	+11.3	40.9	6.9
	경기/인천	(332)	(315)	53.8	+15.6	38.2	8.0
	대전/세종/충청	(97)	(105)	53.6	+16.0	37.6	8.8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가중값 적용 사례수	①찬성	편차 (①-②)	②반대	기타/ 모름	
							1005
	광주/전라	(103)	(97)	60.4	+34.5	25.9	13.7
	대구/경북	(85)	(98)	48.6	+5.0	43.6	7.8
	부산/울산/경남	(136)	(151)	52.3	+15.7	36.6	11.2
	강원/제주	(33)	(44)	62.2	+40.2	22.0	15.8
직 업	사무/관리직	(181)	(170)	45.8	-2.7	48.5	5.6
	전문직	(227)	(217)	53.6	+14.2	39.4	7.0
	생산직/기술직	(88)	(93)	47.5	+11.9	35.6	16.9
	서비스/영업직	(67)	(68)	60.6	+31.4	29.2	10.2
	자영업	(132)	(150)	56.5	+24.6	31.9	11.6
	전업주부	(163)	(149)	65.3	+38.7	26.6	8.1
	학 생	(64)	(58)	35.3	-17.7	53.0	11.7
	기타/무직	(83)	(95)	58.3	+25.7	32.6	9.1
투표후 보성별	여성후보	(317)	(306)	80.8	+65.0	15.8	3.4
	남성후보	(277)	(290)	43.2	-7.4	50.6	6.3
	성별과 무관	(401)	(397)	41.2	-2.2	43.4	15.4
여성후 보당선 영향	유리한 작용	(143)	(150)	71.9	+47.4	24.5	3.6
	불리한 작용	(308)	(295)	52.9	+12.2	40.7	6.4
	영향 없음	(458)	(466)	47.8	+6.9	40.9	11.3
여성단 체장수	부 족	(704)	(691)	68.7	+44.5	24.2	7.1
	적당함	(124)	(127)	24.2	-46.0	70.2	5.6
	많 음	(54)	(53)	10.7	-70.7	81.4	7.9
여성공 천30% 규정	찬 성	(563)	(564)	72.7	+51.5	21.2	6.1
	반 대	(339)	(341)	29.7	-33.2	62.9	7.4

다음으로 성별 동등의 법제화 찬성 이유를 물었다. 성별 동등비율 공천 법제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남성 중심 정치 해소' 27.3%, '여성 차별철폐' 23.6%, '여성/약자 위한 정책 확대' 21.6%, '여성 대표성 확보' 16.5%, '남녀동수가 세계적 추세' 6.9% 순으로 나타났다.

⑪ 정당의 후보자 공천에서 남녀비율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법안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성 중심 정치 해소’는 여성(27.2%), 남성(27.6%), 20대 이하(32.5%), 40대(32.2%), 50대(25.0%)에서, ‘여성 차별철폐’는 60대 이상(25.5%)에서, ‘여성/약자 정책 확대’는 30대(27.5%)에서 1순위 비율을 나타냈다. 응답자별 특성은 <표-5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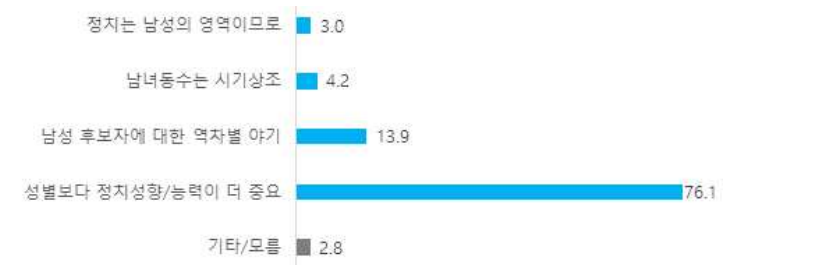
<표-51> 응답자 특성별 성별 동등비율 공천 법제화 찬성 이유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가중값 적용 사례수	여성 대표성 확보	여성차별 철폐	남성중심 정치 해소	남녀동수 세계적 추세	여성/약자 위한 정책 확대	기타/모름	
	(548)	(538)	16.5	23.6	27.3	6.9	21.6	4.1	
성 별	남 성	(157)	(202)	12.7	24.6	27.6	8.3	22.0	4.8
	여 성	(391)	(335)	18.8	23.0	27.2	6.1	21.3	3.6
연 령	만18세~20대	(88)	(81)	20.1	19.2	32.5	4.2	18.1	5.8
	30대	(71)	(56)	12.1	20.1	25.9	10.0	27.5	4.4
	40대	(100)	(88)	13.6	24.2	32.2	4.3	22.3	3.3
	50대	(114)	(120)	16.8	24.8	25.0	7.1	20.8	5.6
	60세 이상	(175)	(192)	17.4	25.5	24.8	8.2	21.4	2.6
지 역	서 울	(117)	(99)	20.1	22.5	28.7	3.9	23.0	1.7
	경기/인천	(180)	(169)	12.9	24.7	30.0	5.1	21.4	5.7
	대전/세종/충청	(52)	(56)	18.8	18.0	28.8	12.6	17.4	4.4
	광주/전라	(64)	(59)	20.4	22.5	17.9	7.5	29.0	2.7
	대구/경북	(38)	(48)	10.0	28.5	32.2	5.1	19.8	4.3
	부산/울산/경남	(74)	(79)	22.5	25.0	18.3	8.2	20.6	5.4
	강원/제주	(23)	(27)	6.4	22.2	40.4	15.3	15.7	
직 업	사무/관리직	(87)	(78)	20.4	22.2	25.4	3.1	26.7	2.2
	전문직	(127)	(117)	9.6	22.3	36.6	7.7	19.0	4.8
	생산직/기술직	(43)	(44)	20.1	26.8	23.0	7.8	18.5	3.8
	서비스/영업직	(38)	(41)	20.2	27.2	30.6	7.5	7.5	6.9
	자영업	(76)	(85)	20.5	25.0	22.2	3.3	25.8	3.3
	전업주부	(104)	(97)	20.2	19.5	23.5	9.7	23.8	3.3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가중값 적용 사례수	여성 대표성 확보	여성차별 철폐	남성중심 정치 해소	남녀동수 세계적 추세	여성/약자 위한 정책 확대	기타/모름	
	(548)	(538)	16.5	23.6	27.3	6.9	21.6	4.1	
	학 생	(24)	(20)	9.4	18.4	28.1	16.4	19.4	8.3
	기타/무직	(49)	(55)	10.0	30.3	25.9	6.8	23.0	4.0
투 표 성 별	여성후보	(258)	(247)	20.0	20.4	32.0	4.2	20.9	2.4
	남성후보	(116)	(125)	8.5	27.9	19.8	11.5	26.4	5.9
	성별과 무관	(171)	(163)	17.0	24.9	26.3	7.7	18.9	5.2
여 성 연 령	유리한 작용	(99)	(107)	17.0	22.1	30.6	4.2	24.7	1.4
	불리한 작용	(172)	(156)	21.4	20.8	27.0	6.6	21.7	2.4
	영향 없음	(223)	(223)	14.1	24.9	27.1	8.0	20.0	5.8
여 성 단 체 장 수	부 족	(488)	(475)	17.1	23.0	28.3	6.3	22.0	3.4
	적당함	(29)	(31)	9.1	28.8	24.9	16.0	15.4	5.9
	많 음	(6)	(6)		46.1		15.0	23.7	15.3
여 성 공 천 30% 규 정	찬 성	(412)	(410)	15.1	23.4	26.5	7.5	23.8	3.7
	반 대	(107)	(101)	20.5	24.3	29.4	5.5	15.5	4.8

다음으로 법안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다. 성별 동등비율 공천 법제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성별보다 후보자의 정치성향과 능력이 더 중요하므로’가 76.1%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남성 후보자 역차별 야기’ 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⑫ 정당의 후보자 공천에서 남녀비율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법안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보자 정치성향/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모든 성/연령/지역/직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20대 이하(88.2%), 학생(91.9%)에서 전체평균 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 세부내용은 <표-52> 와 같다.

<표-52> 응답자 특성별 성별 동등비율 공천 법제화 반대 이유

구 분	조사 완료 사례 수	가중값 적용 사례수	정치는 남성의 영역	남녀 동수는 시기상조	남성에 대한 역차별 야기	성별보다 정치성향/ 능력 중요	기타/ 모름	
	(367)	(370)	3.0	4.2	13.9	76.1	2.8	
성 별	남 성	(205)	(242)	4.0	3.2	13.3	78.4	1.1
	여 성	(162)	(128)	1.2	6.0	15.1	71.7	6.0
연 령	만18세~20대	(77)	(77)	1.0	5.5	5.3	88.2	
	30대	(91)	(78)	2.0	1.9	20.7	75.4	
	40대	(77)	(77)	4.4	1.3	14.3	77.8	2.2
	50대	(52)	(59)	2.9	3.7	18.4	71.3	3.7
	60세 이상	(70)	(79)	4.8	8.2	11.8	66.9	8.1
지 역	서 울	(87)	(78)	5.2	1.0	19.6	74.3	
	경기/인천	(125)	(120)	1.1	6.0	15.5	76.2	1.2
	대전/세종/충청	(35)	(39)	3.8	4.7	13.8	77.7	
	광주/전라	(26)	(25)	11.0		21.7	56.9	10.5
	대구/경북	(40)	(43)	3.9	10.0	5.7	74.6	5.8
	부산/울산/경남	(48)	(55)		2.5	7.9	82.9	6.8
	강원/제주	(6)	(10)				100.0	
직 업	사무/관리직	(83)	(82)	6.4	1.9	22.4	69.3	
	전문직	(84)	(86)	2.4	5.7	12.6	77.2	2.1
	생산직/기술직	(33)	(33)	2.0	6.5	14.7	76.8	
	서비스/영업직	(22)	(20)	4.3	3.8	14.5	70.2	7.2
	자영업	(40)	(48)		3.9	12.0	77.1	7.1
	전업주부	(46)	(40)		4.8	14.1	74.4	6.6
	학 생	(33)	(31)	2.4		5.7	91.9	
	기타/무직	(26)	(31)	5.4	7.6	4.6	78.9	3.5
투표후 보성별	여성후보	(47)	(48)		3.8	24.3	70.2	1.7
	남성후보	(143)	(146)	7.7	7.7	16.6	62.7	5.3
	성별과 무관	(173)	(172)		1.3	9.0	89.1	.6
여성후 보당선 영향	유리한 작용	(38)	(37)	7.9	2.3	12.6	77.2	
	불리한 작용	(118)	(120)	5.8	7.7	22.8	59.2	4.6
	영향 없음	(187)	(191)	.7	1.2	9.6	86.9	1.5
여성 단체장 수	부 족	(166)	(167)	1.2	4.2	19.0	73.9	1.7
	적당함	(87)	(89)	2.2	7.4	13.0	73.6	3.7
	많 음	(44)	(43)	15.2	2.1	8.5	68.4	5.7
여성공 천30% 규정	찬 성	(118)	(120)	4.2	5.6	19.7	68.5	2.0
	반 대	(210)	(214)	2.9	3.7	12.2	78.9	2.3

다음으로 정당의 지역구 지역구 여성 공천 30%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았다. 주요 정당의 지역구 공천 시 여성 비율 30% 규정에 대해 ‘찬성한다’가 56.4%로 ‘반대한다’(34.1%) 보다 22.3%p 높았다.

⑬ 주요 정당에서 지역구 여성후보자 공천 비율을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별로는 여성에서 찬성 62.4%, 반대 26.9%, 남성에서 찬성 50.3%, 반대 41.4%로 여성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 보다 높았으며(반대 : 20대 이하 48.0%, 30대 49.6%), 40대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찬성 : 40대 48.8%, 50대 71.2%, 60대 이상 70.0%).

‘현재 여성 단체장 수가 부족하다’ 및 ‘성별 동등비율 공천에 찬성한다’는 응답자에서는 여성 30% 공천제도에 찬성하는 의견이 전체평균 보다 높았던 반면, 여성 단체장 수가 ‘적당하다’와 ‘많다’는 응답자 및 성별 동등비율 공천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여성 30% 공천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보다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 세부내용은 <표-53> 와 같다.

<표-53> 응답자 특성별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 30% 정당 규정 인식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가중값 적용 사례수	①찬성	편차 (①-②)	②반대	기타/ 모름	
	(1005)	(1000)	56.4	+22.3	34.1	9.5	
성 별	남 성	(406)	(498)	50.3	+8.9	41.4	8.3
	여 성	(599)	(502)	62.4	+35.5	26.9	10.7
연 령	만18세~20대	(182)	(174)	38.0	-10.0	48.0	14.0
	30대	(184)	(152)	41.4	-8.2	49.6	9.0
	40대	(196)	(186)	48.8	+7.9	40.9	10.3
	50대	(178)	(194)	71.2	+49.3	21.9	6.9
	60세 이상	(265)	(294)	70.0	+48.4	21.6	8.4
지 역	서 울	(219)	(190)	54.5	+17.6	36.9	8.6
	경기/인천	(332)	(315)	58.3	+26.4	31.9	9.8
	대전/세종/충청	(97)	(105)	54.6	+21.1	33.5	11.8
	광주/전라	(103)	(97)	62.1	+35.1	27.0	11.0
	대구/경북	(85)	(98)	49.8	+11.0	38.8	11.4
	부산/울산/경남	(136)	(151)	54.2	+16.1	38.1	7.7
	강원/제주	(33)	(44)	64.6	+34.1	30.5	4.8
직 업	사무/관리직	(181)	(170)	53.0	+12.1	40.9	6.1
	전문직	(227)	(217)	52.7	+15.0	37.7	9.6
	생산직/기술직	(88)	(93)	51.4	+9.9	41.5	7.1
	서비스/영업직	(67)	(68)	55.5	+27.1	28.4	16.1
	자영업	(132)	(150)	62.6	+29.7	32.9	4.5
	전업주부	(163)	(149)	70.4	+49.5	20.9	8.7
	학 생	(64)	(58)	38.2	-6.0	44.2	17.6
	기타/무직	(83)	(95)	55.5	+28.6	26.9	17.6
투표성별	여성후보	(317)	(306)	71.3	+48.4	22.9	5.9
	남성후보	(277)	(290)	54.5	+14.6	39.9	5.7
	성별과 무관	(401)	(397)	46.7	+8.0	38.7	14.6
여성후보당선영향	유리한 작용	(143)	(150)	66.4	+36.9	29.5	4.1
	불리한 작용	(308)	(295)	59.6	+25.1	34.5	5.9
	영향 없음	(458)	(466)	51.3	+13.9	37.4	11.3
여성단체장수	부 족	(704)	(691)	69.7	+46.2	23.5	6.8
	적당함	(124)	(127)	30.2	-30.4	60.6	9.2
	많 음	(54)	(53)	18.7	-53.4	72.1	9.3
성별비율에 따른 공천	찬 성	(548)	(538)	76.2	+57.4	18.8	4.9
	반 대	(367)	(370)	32.3	-25.6	57.9	9.7

제6장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 제1절.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제2절. 지역구 여성의무공천할당제 확대
- 제3절.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전략공천 의무
- 제4절. 위반시 제재 조항 개선
- 제5절. 정당별 여성후보자 기호 우선 게재 조항 마련
- 제6절. 정당 경선시 여성후보 가산점제의 법제화
- 제7절. 목적에 맞는 여성정치발전비 사용
- 제8절. 정당의 책무 조항 신설

제6장.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¹⁷⁾

제1절.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¹⁸⁾

현행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10%는 다양한 사회세력의 정치적 대표성 실현과 사표방지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섯 번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지방 의회의 비례대표는 여성으로 채워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지방의회 비례대표 당선 현황을 보면 시도 광역의회의 경우 1회에서 7회까지 전체 비례의원 545명 중 64.2%가 여성이었으며, 기초의회의 경우는 비례대표제도가 생긴 4회에서 7회까지 1,515명의 비례의석이 있었고, 이 중 93.5%로 나타나 사실상 지방의회의 비례대표는 여성에게 쏠려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의회내 비례대표 의석은 전체의석 중 10%에 불과해 전체 여성정치 비율을 확대하는데 제한이 있는 제도이다. 이는 전체 의석의 15.7%인 국회보다도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처럼 매우 적은 비례의석비율로도 제4회 선거부터는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한자리 수에서 두 자리로 확대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이후 6회부터는 광역과 기초 모두 지역구 당선자 수가 비례 당선자 수보다 약간씩 상회하게 되었으며, 7회에 들어서는 비례와 지역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역시 전체적 변화일 뿐 비례와 지역구 선출의 격차는 각 의회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무공천제 실시이후에도 제7회 선거결과 17개 시도의회에서는 인천광역

17) 본 장은 박진경 외. 2017 2018지방선거대비 여성대표성 확대 정치환경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전체적으로 인용하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재정리하였음을 밝힘

18) 박진경. 2015 한국의 비례대표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 p127~135를 참조하여 재정리한 박진경 외 2017에서 재인용

시가, 226개 구·시·군 기초의회 중 22.6%에 해당되는 51개의 의회가 지역구를 통해 당선된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이 비례대표로 당선된 여성만 있는 의회이다. 또한 51개 의회 중 43개가 전체의석수 10석 이하로 그중 비례대표 의석도 한 석에 불과한 지역이다¹⁹⁾. 결국 226개 의회 중 43개 의회에서 여성 의원이 비례로 한 명만 존재하는 의회로 나타났다. 51개 의회중 8개는 그나마 비례의석이 두 석이라도 있어 두 명의 여성 의원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렇듯 한명만 있는 여성 의원의 의회내 위상이나 활동에 대한 많은 한계가 예상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의무공천제가 도입된 이래에도 군의회 등 의무공천 예외를 두고 있어 비례에만 여성 의원이 있는 의회의 경우는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제도 시행 이후 치러진 세 차례 모두 이에 해당되는 의회가 34개나 되어 이를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선거결과를 보더라도 비례대표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데 여전히 유효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가 갖는 의미는 대의민주주의의 실현과 함께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다수대표제나 1인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의 출현 및 의회 권력의 배분을 통해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반적 비례대표제도의 목적에 기반하여 여성정치참여 확대와의 연관성을 보면 1차적으로는 남녀 인구 비례에 따라 절대적으로 열악한 대표성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적 대표성 확보에 대한 기대이며, 2차로는 나아가 차세대 정치인으로서의 여성정치인 발굴 및 의회 및 정치문화 변화, 교육적 효과 등 정치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역구 및 상급선거 등 다른 선거로의 확산효과를 기대하여 여성정치참여를 통한 권력배분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 현행 구시군의회 비례의석의 기준은 지역구의석이 10인미만의 경우 1명의 비례의석이 배정되고 지역구가 10석 이상~20석미만인 경우 2명의 비례의석을 배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3조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이러한 목적하에 그동안 여성정치참여가 열악한 지역내 의회에 비례대표를 통해 한명이라도 여성이 진출하도록 한 1차 목표는 충족하였다. 그러나 2차목표인 지역구 및 상급선거로의 확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면, 비례대표를 통해 진출한 여성들의 차기 출마 및 당선을 분석한 박진경(2015) 연구에서 보듯이 1회에서 6회까지 비례당선자들의 정치경력의 지속 현황이 시·도 광역의회는 10명중 한 두 명만이, 구·시·군 기초의회는 2~3명만이 차기 선거에서 당선되어 경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한 번의 비례대표로 그 경력이 단절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같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차기 선거 출마를 고려하지 않은 비례대표 당선자의 고연령화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보은 성격의 일회성 공천으로 보여지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소수정당 진출이라는 목적성을 보더라도, 지난 7회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초 비례대표 의석 385석 중 96.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구·시·군 기초의회인 각 시·군·구의회의 경우 전체 의석 중 비례의석이 대부분 2석 이하라 두 정당의 독석이 제도의 원천적 한계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광역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 두 정당이 87석 중 71석 81.6%를 차지하였다.

2018년 선거 당시 구·시·군 기초의회 평균 의석수는 12.9석이다. 이중 비례대표의석은 평균 1.7석, 지역구의석은 평균 11.2석이다. 이처럼 한, 두 석에 불과한 비례대표제로는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앞서 비례대표에만 여성의원이 당선된 경우는 제5회선거 103개, 6회 72개, 7회 51개 의회나 존재하며, 7회 51개 의회 중 이중 43개 의회는 비례대표 의석이 한 석에 불과해 결국 한 명의 여성이 남성중심적 의회에서 홀로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할당제를 논할 때 임계치의 수를 설정하는 이유는 어느 특정성이나 계층이 스스로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위치성을 넘어서는 임계치의 수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두 명도 아닌 한 명에게 홀로, 상징성을 넘어서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여성정치참여의 긍정성이 확대되어 비례만이 아닌 지역을 통해 여성의 진출

을 기대하긴 더욱 어렵다는 것도 실증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다. 따라서 최소한 10석 이하의 의석을 갖고 있는 의회의 경우 비례대표제 의석을 확대하여 두 석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여성정치참여의 지속성을 통해 여성의 진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당장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3조의 개정이 요구된다.

현행대로 100분의 10으로 하되 이 경우 기초의회의 경우만이라도 비례대표가 1석에 불과한 10석이하인 의회의 경우 해당의회의 비례의석은 2석이 되도록 조정한다. 앞서 제7회 선거 결과 비례의석에만 여성의원이 있는 51개의회 중 43개의회는 10석 이하 의회로 비례의석수 자체가 1석에 불과하다. 비례 의석이라도 2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통해 정당의 후보추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의정활동과정에서는 상호협력을 통해 비례대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오랫동안 비례 외에는 지역구를 통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어려운 군의회등 해당의회의 개선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

다만 본 개정안의 도입취지가 수차례의 선거에도 지역구 진출이 어려운 의회에 적어도 비례대표 의석으로 2명 이상의 여성이 당선되도록 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지역마다 한 정당이 비례 2번까지 당선되는 경우 그 2번이 남성일 경우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여 각 정당은 구시군 기초의회 비례대표 공천시 반드시 여성으로 공천할 것으로 적극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홀수 순번에 여성을 공천하고 있는 현행 강제할당이 있으나 홀수순번 외에도 자율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시 대부분 여성으로 공천하고 있어 본 개정안과 함께 이를 동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 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p> <p>②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p> <p>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산정되는 정수가 2인 미만인 때에는 2인으로 한다. 2인이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단수는 1로 본다.</p>

제2절. 지역구 여성의무공천할당제 확대

공직선거법 제47조제5항, ‘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강제규정을 2010년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바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치러진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는 각 정당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와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 후보추천과 관련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 후보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이 규정은 앞서 분석하였듯이 제4회까지의 선거와 비교해보면 제5회선거부터 여성후보자의 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제도에 힘입어 여성 지역 당선자결과를 보면 시·도 광역의회의 경우 제4회 4.9%에서 5회 8.1%, 6회 8.2%, 7회 13.3%로 각각 증가하였다. 구·시·군 기초의회는 그 증가세가 더 두드러져 제4회 4.4%에서 5회 10.9%와 6회 14.6%, 7회 20.7%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 도입 후 세 차례의 선거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지역구 30%에는 광역과 기초의회 모두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결과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7회 선거 후보자 명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국회의원 253개 지역구에서 시·도 광역의회와 구·시·군 기초의회를 합쳐 더불어민주당은 502명 평균 1.98명, 자유한국당은 357명으로 평균 1.4명을 공천하였다. 지난 6회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330명, 평균 1.3명을 공천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93명, 평균 1.2명을 공천한 것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다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2명이 안되는 결과이다.

현행	개정안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p>수) 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 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p> <p>②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p> <p>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p>	<p>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산정되는 정수가 2인 미만인 때에는 2인으로 한다. 2인이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단수는 1로 본다.</p>
--	---

또한 제7회 여성후보 등록현황을 확인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명도 여성후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여전히 13곳으로 5%나 나왔고, 자유한국당은 56곳으로 22%나 나왔다. 최소 인원인 한 명만 등록한 선거구의 경우도 더불어민주당 84개로 33%나 나타났고, 자유한국당 역시 한 명만 등록한 선거구는 99개로 39%로 나타나, 법규정상 한 명이상으로 되어있어 많은 선거구가 최소 인원인 한 명 의무공천만 겨우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이나 구·시·군 기초의회선거에 1인 이상만 공천하면 된다는 것이 한명만 공천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뽑는 구·시·군 기초의회의 경우 정당이 당선가능성이 후순위 기호로 배정하여 등록무효를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더욱 가관은 국회의원 선거구내 여성후보자 1인이 사전에 제출되는 정당 등록명부에는 포함되었어도, 해당 여성후보자의 자발적 선거 등록이 이루어져야 사실상 공천이 완성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몇몇 지역은 후보자의 확인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도 드러났다, 이런 경우 역시 그 정당의 전체 후보등록무효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는 제 5회부터 제 7회 선거까지 각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여성의무공천현황을, 모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국 여성후보자가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제5회에서는 전체 245개 선거구 중 한나라당은 47개(19%), 민주당은 96개(39.2%)로 나타났다.

제 6회 선거에서는 전체 246개 선거구 중 새누리당은 38개(15.4%), 새정치민주연합은 58개(23.6%)로 나타났다. 제 7회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56개(22%)와 더불어민주당 13개(5%)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무등록 선거구 수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반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47조5항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시·도 또는 구·시·군 의회에 1명이상으로 하고 있어, 주로 여성을 시·도 광역의회보다는 구·시·군 기초 의회에 공천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 제7회 선거결과 여성후보 공천을 많이 한 더불어민주당만 보더라도 전체 지역구 여성후보등록자 502명 중 광역의회 후보는 105명(20.9%)이고, 기초의회 후보는 397명(79.1%)로 구·시·군 기초의회 후보에 쏠려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의 한계가 결국 제5회 선거이후 구·시·군 기초의회는 여성의원 비율의 증가가 가시적 효과를 보인 반면, 시·도 광역의회는 구·시·군 기초의회 의 증가에 반해 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한계가 드러난 본 제도로는 지역구 30%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입이후 3차례의 선거를 치루면서 과거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이 증가세가 현행 제도만으로는 지역구 30%이상을 넘어 남녀동수로 증가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지역구 30%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공천제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1인이상 의무공천제로는 그 한계가 드러난 이상, 지역구 여성

30% 공천 권고조항인 공직선거법 제47조4항을 권고가 아닌 의무공천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30%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직도 유효한 이유는 여성의원 30%이상 의회와 30%미만 의회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그룹간 증가세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30%라는 임계치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이 여전히 유효한 전략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논의의 진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차선으로 1인이상 여성의무공천제의 적용을, 현재 시·도 광역의회나 구·시·군 기초의회 중에 한 명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 선거단위별로 각각 1명이상 공천의무화하는 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안>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①-③ 생략	①-③ 생략	①-③ 생략	①-③ 생략	①-③ 생략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 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u>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 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u>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 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u>추천하여야 한다.</u>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 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u>추천하여야 한다.</u>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 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u>추천하여야 한다.</u>
⑤ 삭제	⑤ 삭제	⑤ 삭제	⑤ 삭제	⑤ 삭제
<2안>				
제47조	제47조	제47조	제47조	제47조
①-④ 생략	①-④ 생략	①-④ 생략	①-④ 생략	①-④ 생략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각각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각각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각각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

제3절.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전략공천 의무

7회선거 결과 3.5%에 불과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여 10%로 별도 규정하여 단계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보듯,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비율이 매우 적다는 응답이 69%에 이르고, 적정비율로 20~30%를 꼽는 응답자가 많았음을 고려해 볼 때 현재 4%에 불과한 비율²⁰⁾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한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경력과 능력이 비슷하다면 투표에 있어 성별과 상관없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 39.7%와 여성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30.6%의 응답을 볼 때 여성 기초단체장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상당히 긍정적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은 여성후보에게, 남성은 남성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동일한 성별 후보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여성의 정치 대표성에 대한 의지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난 제6회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실시한 여성우선추천 지역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정당별로 전체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지역 중 10%를 의무적으로 여성우선공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여성우선공천지역이 정당별 불리한 지역에 공천하는 경우는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어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남성이 46.6%, 여성이 53.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54>. 결국 당선 가능성이 여성이라서 적다고 공천을 기피해온 명분은 이미 오래전에 불식되었다. 따라서 공천이라는 관문에서 많은 수의 여성을 입후보시키는 것이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 이어질 것이다. 앞서 여성지방의원 심층인터뷰에서도 여성정치 참여의 가장 효과적 방법은 전략공천을 꼽고 있듯이 이에 대한 적극적 도입이 요구된다.

20) 동시선거 당시 결과는 8명(3.5%)였으나 보궐선거로 1명의 여성단체장이 당선되어 현재는 9명(4%) 임

<표-54> 제7회 지방선거 성별 당선율 비교

구분	남성			여성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광역단체장	65	17	26.2	6	0	0.0	
기초단체장	714	218	30.5	35	8	22.9	
광역의원	지역구	1,612	639	39.6	274	98	35.8
	비례	86	25	29.1	209	62	29.7
기초의원	지역구	4,326	2,015	46.6	992	526	53.0
	비례	83	11	13.3	799	374	46.8

특히 정당별 유리한 지역구에 일정비율의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우세지역 여성후보 전략공천 비율 의무화가 요구된다. 우세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후보 전략공천이 의무화되면 광역, 기초 단체장 및 광역의원에서도 여성의 당선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기초단체장은 지난 6회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모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어 이를 모든 정당이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일정정도 확대될 때까지 정당의 의무공천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무적 비율과 함께 정당이 전 입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자치구·시·군에 추천하도록 하는 부가의무를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제6회선거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현황을 보면, 새누리당에서 여성우선추천지역-서울의 종로구, 용산구, 서초구, 부산의 중구, 대구의 중구, 경기도의 과천시, 인천시-을 선정하여 그 결과 서울의 서초구, 부산의 중구, 대구의 중구, 경기도의 과천시에서 여성당선자를 배출하였다. 그 외에도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부산 사상구에서도 여성기초단체장을 배출하여 11명의 여성후보공천과 그중 7명의 당선자 배출을 만들었다. 아래 <표-55>²¹⁾에서 보듯이 새누리당의 공천자

21) 출처: 김원홍·김인순·김은주(2014). 2014지방선거 결과분석을 통한 정치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수와 당선자수가 높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정당이 당선가능성이 높은 유리한 지역을 여성우선공천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55> 6회 선거결과 정당별 기초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및 당선 현황

정당	기초단체장		
	공천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새누리당	11	7	63.6
새정치민주연합	8	2	25.0
통합진보당	8	0	0.0
정의당	1	0	0.0
공화당	1	0	0.0
무소속	11	0	0.0
합계	40	9	22.5

한편 제7회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율이 높았던 선거이며 제6회 선거시 새누리당이 추진한 여성우선공천지역과 같은 노력을 별도로 하진 않았으나 기초단체장에 여성 11명을 공천하였고 이중 7명이 당선되었으나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9명의 여성 공천이 이루어졌으나 1명 당선에 그쳐 결국 9명의 여성기초단체장을 만들어 낸 6회에 비해 오히려 8명으로 줄어든 저조한 결과이다.

<표-56> 7회 선거결과 정당별 기초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및 당선 현황

정당	기초단체장		
	공천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자유한국당	9	1	11.1
더불어민주당	11	7	63.6
바른미래당	4	0	0.0
정의당	1	0	0.0
민주평화당	2	0	0.0
기타 무소속	8	0	0.0
합계	35	8	22.9

방안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한자리수에 불과한 현재의 수준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여성우선공천지역과 의무공천할당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선거결과 3.5%에 불과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여 10%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제6회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역대 선거결과 비교적 새누리당에게 유리했던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정하고 여성으로 전략공천한 결과 11명의 후보 중 7명의 여성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선출되었다. 이와 같은 효과성을 감안하여 정당별로 전체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지역 중 10%를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공천하되, 각 정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으로 한정하여 공천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①-⑤ 생략 <신설>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자치구·시·군의 장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당해 정당이 전임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자치구·시·군에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반수를 획득한 자치구·시·군의 수가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순위로 득표한 자치구·시·군의 순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4절. 위반시 제재 조항 개선

① 위반시 국고삭감 신설 (1안)

앞서 현행법상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 30% 권고 조항을 강제력있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고려한다면 이에 맞는 위반시 조치가 병행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동안 비례대표나 1인이상 여성공천의무제에 적용되어온 명부 등록무효 방식이 우선적 방안으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2010년 1인이상 여성공천의무제 도입시 등록무효 조항 신설(공직선거법 제52조2항)시 정개특위 회의록에서 보듯이 위헌적 요인에 대한 공방²²⁾이 있었다, 그럼에도 본 제도가 마련되었던 것은 후진적 여성정치참여 현실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컸고, 군의회 등 예외 경우를 넓게 마련하였고, 특히 공천받은 여성후보의 자발적 등록 철회의 경우 무효로 보지 않는 등 본 제도를 무력화하는 예외 경우가 함께 마련되었다. 결국 앞서 보았듯이 예외로 둔 군의회나 많은 의회가 여전히 여성의무공천은 물론 비례대표에만 여성의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등록무효조항이 지역구 30% 의무화와 함께 마련되기엔 많은 저항이 예상되는바, 앞서 1안으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47조4항으로 개정하는 경우 등록무효 방식 보다는 국고삭감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할당제 도입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무효처럼 위헌적 소지가 없고, 삭감 비율에 따라 실질적 효과성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후단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감액하는 방식이다. 그 감액비율은 20%에서 50%까지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 삭감 설계가 가능하며, 감액대상 보조금을 해당 선거 연도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할 수 있고, 매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으로 정할 수 있다. 효과성을 위해서는 해당 선거 임기 전체 기간으로 하게 되면 그 효력이 총선과 지방선거가 2년마다 사정에 따라 변

동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현행 여성추천보조금은 함께 존치시켜 위반시 정당한 격차를 더욱 증가시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57>에서 보듯이 이와 관련 20대 국회 말 총선을 앞두고 활발한 논의와 발의가 이루어졌다. 등록무효안도 있었으나 국고 삭감 안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다. 감액비율과 감액대상이 해당선거보조금이나 매년 경상보조금 등의 차이를 두고 제안되어있다.

<표-57> 제20대 공직선거법 국회 발의내용

구분 (발의)	남인순안 (2017.2.8.)	박영선안 (2019.1.25.)	김상희안 (2019.5.22.)	제윤경안 (2019.8.30.)	정유섭안 (2019.3.15.)
적용 범위	국회, 지방의회	국회,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국회, 지방의회	국회, 지방의회	국회, 지방의회
의무 공천 비율	전국지역구총수 의 30%	정당추천후보자 총수의 50%	정당추천후보 자 총수의 30%	정당추천후보 자 총수의 30%	전국선거구 총수의 30%
위반시 조치	후보자 등록 무효	광역, 기초의회 각각 50%여성공천 위반시 등록무효	해당 연도 선거보조금 20%감액	해당 선거 이후 임기 전체 기간 경상보조금 20% 감액	해당 연도 경상보조금 15%감액
기타	①비례의석확대 (국회 100명, 지방의회 30%) ②분구·신설 선거구 여성 후보 추천 ③여성발전기금 용도 명확	①여성가산점 의무 명시 ②여성후보 비율 공개 ③기초의회 여성 후보 가반(등록무효) ④여성발전기금 위반시 2배 회수, 감액			*비례대표제 폐지 ** 자유한국당 당론 발의

22) 여성의무공천과 등록무효 조항을 두고 여성의무공천을 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의 책임 문제임에도 해당 지역구내 기타 후보자 개인의 등록무효로 연결됨으로써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급 지원칙'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 ③ (생략)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전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 이후 시작되는 임기 전체 기간에 대해 「정치자금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등록무효조항 개선(2안)

2안으로 지방의회 등록무효제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제5회에서 7회까지 3차례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를 통해 두 주요정당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의무공천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성후보 등록자가 없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매회 상당히 많은 수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라면 여성후보 1명이상 공천자 중에 포함해야 선관위에 정당후보명부 접수가 가능하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이를 균지역이나 전체 50% 미만 공천 지역 등 예외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예외조건에 맞지 않는 지역구에서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원칙적으로라면 등록무효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당의 공천자 명부에는 여성후보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명부제출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정당이 제출한 후보 명부에서 개인이 직접 등록과정을 거쳐야함에도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전체 등록무효로 하는 것에

대한 타후보 위헌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결국 등록자에 여성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이상인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등록에서 해당 여성이 등록을 포기한 경우는 대부분 법률 위반을 고려하여 이름만 차용한 경우가 많다고 추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정확히 말하면, 정당별로는 국회의원선거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하여 공천자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였겠지만, 여성후보가 스스로 등록을 포기함으로써 1명 이상의 여성의무공천제가 강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이 등록무효의 조건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1인 이상 여성의 무공천제를 무력화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선관위 제출 후 여성후보가 등록을 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를 등록무효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개정안으로는 공직선거법 제 50조 1항 후보자 추천의 취소와 변경 금지 예외 조항에서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여 등록 무효가 된 경우에 이 경우 제47조5항에 따라 추천한 여성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새로운 후보자는 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및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동법 제52조2항의 등록무효 예외에 해당되는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를 삭제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①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① (본문은 현행과 같음)

제5절. 정당별 여성후보자 기호 우선 게재 조항 마련²³⁾

시·군·구 기초의회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제4회에서 7회까지 기호별 정당공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하에서는 기호 게재 순위에 따라 당선가능성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회 선거 결과를 보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다. 즉 단독번호 및 가변 등 우선순위 기호가 사실상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당선가능성 높은 기호로 여성을 공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 제4회 선거부터 제7회 선거까지 주요 정당의 여성공천 현황을 기호별로 살펴본 결과 여성의무공천제가 없던 제4회 선거에서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단독번호나 가변을 받은 여성비율이 전체 여성공천 평균 비율보다 큰 차이가 없어 의도적으로 여성을 당선가능성이 높은 기호로 배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후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된 제5회선거부터는 당선 가능성 높은 번호배정이 전체 남녀 일반 공천 평균보다는 여성에게 다소 높게 나타나 많게는 가능성 높은 번호 공천비율이 10%에서 30%까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제5회선거에서부터 마련된 여성의무공천제가 당선가능성 높은 기호 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7회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의 기호배정 현황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후보추천시 여성 30% 공천을 지켜 처음으로 여성추천보조금제 총액을 한 정당이 모두 가져간 사례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여성추천보조금제는 2005년 지역구 여성공천 30% 권고조항을 마련하면서 인센티브로 함께 마련된 제도로, 정당이 30% 이상 여성추천을 실천할 경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 이후 어느 정당도 이를 지킨 정당이 없어 보조금액 중 일부금액을 공천비율에

따라 정당들이 배분해갔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의회 후보 추천시 여성을 38% 공천하여 해당 조성금액을 모두 지원받게 된 것이다. 다른 어떤 선거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2018년 지방의회 선거결과 기초의회의 여성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게 된 원인이 여성의무공천제와 함께 여성추천보조금이 처음으로 취지에 맞게 활용되면서, 사문화되었던 제도들의 조합이 이뤄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당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여성의무공천제가 지방의회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성후보자의 추천시 기호 게재순위를 남성후보자보다 여성을 우선하도록 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중대선거구제하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고 의무공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충적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47조5항에 따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여성을 추천하는 경우 여성후보자의 게재순위는 남성후보자보다 우선순위로 하되, 여성후보자 간의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하도록 해야 한다.²⁴⁾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50조(투표용지의 게재순위 등) ① ~ ⑦ (생략)	정당·후보자의	제150조(투표용지의 게재순위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정당·후보자의	제150조(투표용지의 게재순위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제47조제5항에 따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여성을 추천하는 경우 여성후보자의 게재순위는 남성후보자보다 우선 순위로 하되, 여성후보자 간의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다.
⑧ ~ ⑩ (생략)				⑨ ~ ⑪ (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23) 본 개선방안부터 김은주 외(2016) 연구에서 이미 마련한 개선안을 본 연구 결과를 보충적으로 설명하면서 인용하였다.

24) 2016년8월3일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370)로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2017.8.17)되어 있는 개정안이다.

제6절. 정당 경선시 여성후보 가산점제의 법제화

우리나라에 일반화되어 있는 용어인 ‘상향식 공천’은 민주적인 방식이지만 당내 계파 및 세력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내 민주화를 담보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당내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나 여론조사의 한계로 조직적 동원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에게는 불리하다는 의견이 오히려 팽배하다.

유럽과 같이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하고 정당내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상향식 공천제도가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김민정 2012; 김은주, 2014), 경험이 적고 세력화가 되지 않은 여성들이 권력내부로 침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발견되듯이, 여성공천을 위해 성별 동등비율 공천의 법제화에 대한 찬성(53.8%)과 정당 30% 의무 규정에 대한 찬성 56.4%로 높게 나타나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우선적 도입이 일반 국민인식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여성지방의원 조사에서도 경선 가산점제도의 한계를 인정함에도 여전히 여성들의 정치진출을 돕는 제도로 본 제도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에게 일정비율 가산점을 부여하여 정치 진출의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여성후보가산점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는 대부분의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가산점의 비율을 10%에서 20%내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이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²⁵⁾ 이때 해당선거구 동급 선거에 당선된 경험이 없는 경선후보자의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25)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10%~25%, 신인 20%를 가산, 국민의힘은 신인과 여성, 청년 20%, (검색일 2021.10.4.).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 2(당내경선의 실시) ①-③ 생략 <신설>	제57조의 2(당내경선의 실시) ①-③현행과 같음 <u>④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여성으로서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험이 없는 경선후보자에게는 정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여야한다. 가산점이 부여된 당내경선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내경선으로 본다.</u>

제7절. 목적에 맞는 여성정치발전비 사용

정당 내에서 여성정치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작업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2004년 정치자금법에 도입되었다.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10%를 여성정치발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시 위반금액의 2배를 감액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마련함으로써 의무적 집행의 강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조항만 있을 뿐 자세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성정치발전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여성조직 운영 인건비가 여성정치발전비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²⁶⁾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발견되듯이 여성 기초단체장을 확대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은 응답으로 “여성의 경쟁력 강화(33.3%)”를 꼽은 점을 볼 때, 여성 정치인 발굴과 육성에 여성정치발전비를 집중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성정치발전비의 용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향인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용도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법 제28조2항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보조금은 정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시 근로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여성정책 공모 및 정책연구용역, 성별분리당직자통계개발 등 정책개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여성후보자 선거 지원에 사용하도록 명시한다. 또한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경비로 구체적으로는 여성정치인 위탁교육장학금, 예비 정치인장학금 지급 및 인턴제운영 등을 명시한다. 또한 당원 성평등의식 등 이에 필요한 교육경비 및 여성의원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8조4항 신설>

26) 본 내용은 박진경 외(2017) 연구를 참조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③ 생략 <신 설>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보조금은 정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시 근로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고,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정책개발비(여성정책공모 및 정책연구용역, 성별분리당직자통계개발 등) 2. 여성후보자 선거 지원 3.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경비(여성정치인 위탁교육장학금, 예비 정치인장학금 지급 및 인턴제운영 등) 4. 당원 성평등의식 등 교육 5. 여성의원 지역 활동 지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여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활동비
④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절. 정당의 책무 조항 신설²⁷⁾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이자 대의민주주의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 헌법 제8조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당은 당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고 그 전제로서 민주적 당원 양성에 필요한 교육, 윤리 교육 기타 당원 자질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당헌과 당규를 스스로 지키도록 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일반 평등원칙으로써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의 평등과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의원연맹(IPU)에서도 “각 국의 의회는 여성의원의 수를 확대하고 의회 내에서 여성의원 지도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²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은 성평등한 사회와 정치발전을 위해 성인지적 정당문화 조성 및 운영과 더불어 의회내의 여성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 조치와 이를 구체화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여성정치인의 적극 발굴과 교육, 지원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정당의 책무로써 정당법에 규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미 여성 정치참여율이 30%를 넘어 남녀동수에 도달한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결국 정당이 여성 공천 할당제를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후보 발굴에서부터 양성과정에 대한 노력을 함께 병행하고 있기에 가능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할당제 규정과 더불어 여성후보 발굴 및 양성등의 실질적 노력을 함께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후보가 없어 공천이 어렵다는 변명이 불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의 책무를 위해 당헌과 세부적인 운영규칙인 당규를 제정하여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에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7) 김은주·박진경·권병진(2016)에서 그대로 인용.

28) 2012년 제127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Gender-Sensitive Parliaments)’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정당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의 2 (정당의 책무) <u>①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②정당은 당원이 정당의 조직과 활동, 특히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질향상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의 윤리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u> <u>③정당은 정치발전을 위하여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
제28조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 생략 ②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11(생략) <신 설> ③ 생략 <신 설>	제28조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1-11 현행과 같음 12.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당은 당헌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1개월 내에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
<신 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

현행	개정안
<p>④ 제3항에 따른 강령 당헌의 보존 및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p>에 따라 보고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제62조 (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3 생략</p> <p><신설></p>	<p>제62조(과태료)</p> <p>①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14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각 정당에서 제출한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p>

<참고문헌>

- 김민정, 2012;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의 대표성” 아시아여성연구 51(1).37-70
- 김원홍·김인순·김은주. 2014; “2014 지방선거 결과 분석을 통한 정치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 모색”.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주, 2014; “남녀동수 정치참여 확대방안” 제87차 여성정책포럼 ‘6.4지방선거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평가와 향후과제’.
- 김은주·박진경·권병진. 2016; “여성대표성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연구”. (사)한국여성의정
- 박진경 외. 2017; “2018지방선거대비 여성대표성 확대 정치환경개선 방안 연구”. (사) 한국여성의정

<부록>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후보 등록현황

① 제 5회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전체			54	194	42	153
서울 특별시	강남구	강남갑	-	1	1	-
		강남을	-	1	-	1
	강동구	강동갑	-	1	-	1
		강동을	-	1	1	1
	강북구	강북갑	-	1	1	-
		강북을	-	1	-	1
	강서구	강서갑	-	1	-	1
		강서를	-	1	-	1
	관악구	관악갑	1	1	-	1
		관악을	-	2	1	1
	광진구	광진갑	-	1	-	1
		광진을	-	1	-	1
	구로구	구로갑	-	1	-	1
		구로를	-	1	1	1
	금천구	금천	-	1	-	-
	노원구	노원갑	-	1	-	1
		노원을	-	1	-	1
		노원병	-	1	-	-
	도봉구	도봉갑	1	1	-	1
		도봉을	1	-	-	1
	동대문구	동대문갑	-	1	-	-
		동대문을	-	1	-	-
	동작구	동작갑	-	1	-	1
		동작을	-	1	-	1
	마포구	마포갑	1	-	-	3
		마포을	-	1	-	1
서대문구	서대문갑	1	-	-	1	
	서대문을	-	1	1	1	
서초구	서초갑	1	-	-	2	
	서초을	1	1	-	1	
종구	종구	-	1	1	-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성동구	성동갑	-	1	-	1	
		성동을	1	-	1	-	
	성북구	성북갑	-	1	-	4	
		성북을	-	1	2	-	
	송파구	송파갑	-	1	-	1	
		송파을	-	1	1	-	
		송파병	-	1	-	2	
	양천구	양천갑	1	1	1	1	
		양천을	-	1	-	-	
	영등포구	영등포갑	-	2	-	1	
		영등포을	-	1	-	-	
	용산구	용산구	-	1	-	1	
	은평구	은평갑	1	-	1	-	
		은평을	1	1	-	2	
	종로구	종로구	-	2	-	1	
	중랑구	중랑갑	-	1	-	1	
		중랑을	-	4	1	1	
	소계	48개	11	48	14	43	
	부산 광역시	강서구	북구강서갑	-	1	-	-
		북구	북구강서을	-	1	-	1
금정구		금정구	-	1	-	2	
		남구	남구갑	1	1	-	-
		남구을	-	-	-	-	
동구		중구동구	-	2	-	-	
중구			-	-	-	-	
동래구		동래구	-	1	-	-	
부산진구		부산진구갑	-	2	-	1	
		부산진구을	-	-	-	-	
사상구		사상구	-	1	1	-	
사하구		사하갑		1	-		
		사하을	1	1	-	1	
서구		서구	-	1	-	-	
수영구		수영구	-	2	-	-	
연제구		연제구	-	2	-	-	
영도구	영도구	-	1	-	1		
기장군	해운대기장갑	-	1	-	-		
해운대구	해운대기장을	-	1	-	-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소계	18개	2	20	1	6
대구 광역시	남구	중구남구	-	1	-	-
	중구		1	-	-	
	달서구	달서갑	1	-	1	-
		달서을	-	1	-	-
		달서병	1	1	-	-
	달성군	달성군	-	-	-	-
	동구	동구갑	-	1	-	-
		동구을	-	1	-	-
	북구	북구갑	-	1	-	-
		북구을	-	1	-	-
	서구	서구	1	-	-	-
	수성구	수성갑	1	2	-	-
		수성을	1	-	-	-
소계	12개	5	10	0	1	
대전 광역시	대덕구	대덕구	-	1	-	-
	동구	동구	1	1	-	1
	서구	서구갑	-	2	1	1
		서구을	-	1	-	-
	유성구	유성구	2	-	-	-
	중구	중구	-	1	-	1
소계	6개	3	6	1	3	
광주 광역시	광산구	광산갑	-	-	-	2
		광산을	-	-	-	-
	동구	동구	-	-	-	1
	남구	남구	-	-	-	2
	북구	북구갑	-	-	-	2
		북구을	-	-	1	2
		서구갑	-	-	-	2
	서구	서구을	-	-	-	1
소계		8개	0	0	1	12
인천 광역시	강화군	서구강화갑	-	-	-	-
	서구	서구강화를	-	1	-	1
	계양구	계양갑	-	1	-	1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울산 광역시	남구	계양을	-	1	-	1
		남구갑	1	1	-	1
		남구을	-	1	1	1
	남동구	남동갑	-	1	1	1
		남동을	1	1	-	-
	부평구	부평갑	-	1	-	1
		부평을	-	1	-	1
	연수구	연수구	-	1	-	1
		용진군	-	-	-	-
	중구	중구동구용진	-	1	-	1
	동구		-	1	-	1
	소계	12개	2	12	2	11
	울주군	남구	남구갑	-	-	-
동구		남구을	1	1	-	-
		동구	-	1	-	-
북구		북구	-	1	-	-
울주군		울주군	-	-	-	-
중구		중구	1	1	-	-
소계	6개	2	4	0	0	
강원도	강릉시	강릉	1	-	-	-
	동해시	동해삼척	-	-	-	-
	삼척시		-	1	-	-
	속초시	-	1	-	-	
	고성군	속초고성양양	-	-	-	-
	양양군		-	-	-	-
	춘천시	춘천	-	2	-	2
	원주시	원주	1	1	2	1
		철원군	-	-	-	-
	화천군	철원화천양구 인제	-	-	-	-
	양구군		-	1	-	-
	인제군		-	-	-	-
	태백시	-	1	-	-	-
영월군	태백영월평창 정선	-	1	-	-	
평창군		-	-	-	-	
정선군		-	1	-	-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홍천군	홍천횡성	-	-	-	2
	횡성군		-	-	-	-
	소계		8개	2	9	2
경기도	고양시	고양덕양갑	-	1	-	1
		고양덕양을	1	-	-	1
		고양일산동구	1	-	1	2
		고양일산서구	-	1	-	2
	과천시	과천의왕	-	1	1	-
	의왕시		-	-	-	-
	광명시	광명갑	-	1	-	1
		광명을	-	1	-	1
	광주시	광주	-	1	-	1
	구리시	구리	-	1	-	1
	군포시	군포	-	1	-	1
	김포시	김포	-	1	1	-
	남양주시	남양주갑	-	1	1	-
		남양주을	-	2	-	1
	부천시	부천원미갑	2	1	-	1
		부천원미을	-	2	-	1
		부천소사구	-	-	-	1
		부천오정구	-	1	-	1
	성남시	성남수정구	1	-	1	-
		성남중원구	-	1	1	-
		성남분당갑	1	1	1	-
		성남분당을	-	1	1	1
	수원시	수원장안	1	-	-	1
		수원권선	-	1	-	1
수원팔달		-	1	-	1	
수원영통		1	1	1	-	
시흥시	시흥갑	-	2	-	1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충청남도	안산시	시흥을	-	1	-	1
		안산상록갑	1	-	-	1
		안산상록을	-	1	-	1
		안산단원갑	1	-	-	1
	안성시	안성	-	1	-	1
	안양시	안양동안갑	1	-	-	1
		안양동안을	1	-	-	1
	안양시	안양만안구	-	1	-	1
	양주시	양주동두천	-	-	-	-
		양주동두천	-	1	-	1
	양평군	여주양평	-	-	-	-
		여주시	-	-	-	-
	연천군	포천연천	-	-	-	-
		포천시	-	1	-	1
	오산시	오산	-	1	-	1
	용인시	용인처인	1	-	1	-
		용인기흥	-	1	-	1
		용인수지	1	1	1	-
	의정부시	의정부갑	-	1	-	1
		의정부을	-	1	-	1
	이천시	이천	-	1	1	-
	파주시	파주	-	1	-	-
	평택시	평택갑	-	1	1	-
평택을		-	1	-	1	
하남시	하남	-	1	-	1	
화성시	화성갑	1	-	-	-	
	화성을	-	1	-	1	
소계	51개	15	41	14	3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연기	1	-	-	-
	연기군					
	부여군	부여청양	-	-	-	-
		청양군	-	-	-	1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논산시	논산계룡금산	-	-	-	1
	계룡시		-	1	-	-
	금산군		-	-	-	-
	당진시	당진	-	1	-	-
	보령시	보령서천	-	1	-	-
	서천군		-	-	-	-
	서산시	서산태안	-	1	-	-
	태안군		-	-	-	-
	홍성군	홍성예산	-	-	-	1
	예산군		-	1	-	-
	아산시	아산	-	1	-	1
	천안시	천안갑	-	1	1	-
		천안을	-	1	-	1
	소계	10개	1	8	1	5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진천괴산 음성	-	-	-	-
	진천군		-	1	-	-
	괴산군		-	-	-	-
	음성군		-	-	-	-
	제천시	제천단양	-	1	-	2
	단양군		-	-	-	-
	보은군	보은옥천영동	-	-	-	-
	영동군		-	-	-	-
	옥천군		-	-	-	-
	청주시	청주상당구	-	1	-	-
		청주흥덕갑	-	1	-	-
청주흥덕을		1	2	1	1	
청원군		청원군	-	1	-	-
충주시	충주	-	2	-	2	
소계	8개	1	9	1	5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	-	1	-	-
	통영시	통영고성	-	1	-	-
	고성군		-	-	-	-
	김해시	김해갑	-	2	-	1
		김해을	-	-	-	-
	밀양시	밀양창녕	-	1	-	-
	창녕군		-	-	-	-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사천시	사천	-	1	-	-
	남해군	남해하동	-	-	-	-
	하동군		-	1	-	-
	산청군	산청함양거창	-	-	1	-
	함양군		-	-	-	-
	거창군		-	-	-	-
	의령군		-	-	-	-
	함안군	의령함안합천	-	-	-	-
	합천군		-	-	-	-
	양산시	양산	-	1	-	-
		진주시	진주갑	-	2	-
	창원시	창원갑	1	-	-	-
		창원을	1	-	-	-
	마산시	마산갑	1	-	-	-
		마산을	-	1	-	-
	진해시	진해	-	1	-	1
	소계	17개	3	12	1	2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청도	-	1	-	-
	청도군		-	-	-	-
	영천시	영천	1	-	-	-
	경주시	경주	-	2	-	-
	고령군	고령성주칠곡	-	-	-	-
	성주군		-	-	-	-
	칠곡군		-	1	-	-
	구미시	구미갑	-	1	-	-
		구미을	-	1	-	-
	상주시	상주	-	1	-	-
	군위군	군위의성청송	-	-	-	-
	의성군		1	-	-	1
	청송군		-	1	-	-
	김천시	김천	1	1	-	-
영주시	영주	-	1	-	-	
문경시	문경예천	-	-	-	-	
		-	1	-	-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안동시	안동	-	1	-	-
	양양군	영양영덕봉화 울진	-	-	-	-
	영덕군		-	-	-	-
	봉화군		-	-	-	-
	울진군		-	1	-	-
	포항시		포항북구	1	1	-
	울릉군	포항남구울릉	-	-	-	-
	소계	15개	4	14	0	1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시	세종시	-	-	-
소계		1개	0	0	0	0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보성	-	-	-	-
	보성군		-	1	-	-
	장흥군	장흥강진영암	-	-	-	1
	강진군		-	-	-	-
	영암군		-	-	-	-
	순천시		순천	-	-	1
	담양군	담양곡성구례	-	-	-	-
	곡성군		-	-	-	-
	구례군		-	-	-	-
	광양시	광양	-	-	-	1
	나주시	나주화순	-	-	-	1
	화순군		-	-	-	-
	함평군	함평영광장성	-	-	-	-
	영광군		-	-	-	-
	장성군		-	-	-	-
	목포시	목포	-	-	-	2
	무안군	무안신안	-	-	-	-
	신안군		-	-	-	-
	해남군	해남완도진도	-	-	-	-
	완도군		-	-	-	-
진도군	-		-	-	-	
여수시	여수갑	-	-	-	2	
	여수을	-	-	-	-	
소계	12개	0	1	1	8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	-	-	-	1
	고창군	고창부안	-	-	-	-
	부안군		-	-	-	-
	군산시	군산시	-	-	-	2
	김제시	김제완주	-	-	-	1
	완주군		-	-	-	-
	남원시	남원순창	-	-	-	1
	순창군		-	-	-	1
	진안군	진안무주장수 임실	-	-	-	1
	무주군		-	-	-	-
	장수군		-	-	-	-
	임실군		-	-	-	-
	익산시	익산갑	-	-	-	2
		익산을	-	-	-	-
전주시	전주완산갑	-	-	-	4	
	전주완산을	-	-	-	-	
	전주덕진구	-	-	-	-	
소계	11개	0	0	0	13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제주갑	1	-	1	-
		제주을	1	-	1	-
	서귀포시	서귀포	1	-	1	-
	소계	3개	3	0	3	0

② 제 6회

구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전체			46	284	69	224
서울 특별시	강남구	강남갑	-	2	1	1
		강남을	-	2	-	1
	강동구	강동갑	-	1	-	1
		강동을	-	1	-	1
	강북구	강북갑	-	3	1	1
		강북을	-	1	-	1
	강서구	강서갑	1	1	-	1

구분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강서을	-	1	2	-
	관악구	관악갑	-	2	1	3
		관악을	-	1	-	2
	광진구	광진갑	1	1	-	1
		광진을	1	2	-	1
	구로구	구로갑	-	2	-	1
		구로을	-	1	1	-
	금천구	금천	-	1	-	2
	노원구	노원갑	-	1	-	2
		노원을	-	2	-	2
		노원병	-	1	-	1
	도봉구	도봉갑	-	1	-	1
		도봉을	-	2	-	2
	동대문구	동대문갑	-	3	-	-
		동대문을	-	1	-	-
	동작구	동작갑	-	1	1	1
		동작을	-	1	-	2
	마포구	마포갑	1	1	-	1
		마포을	-	2	-	1
	서대문구	서대문갑	-	2	-	2
		서대문을	-	1	1	-
	서초구	서초갑	1	1	-	2
		서초을	1	-	2	1
	중구	중구	1	1	-	1
	성동구	성동갑	-	1	-	1
		성동을	-	1	1	1
	성북구	성북갑	-	2	1	3
		성북을	-	2	-	1
	송파구	송파갑	-	2	-	1
		송파을	-	2	1	1
		송파병	-	1	1	2
	양천구	양천갑	1	-	1	-
양천을		-	2	-	1	
영등포구	영등포갑	-	2	-	2	
	영등포을	-	1	-	1	
용산구	용산구	-	2	1	1	

구분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부산 광역시	은평구	은평갑	-	1	2	-
		은평을	-	3	1	2
	중로구	중로구	-	2	-	2
	중랑구	중랑갑	-	-	-	2
		중랑을	-	2	-	1
	소계	48개	8	69	19	58
	강서구	북구강서갑	-	1	-	1
	북구	북구강서을	-	2	1	2
	금정구	금정구	-	1	-	3
	남구	남구갑	-	1	1	-
		남구을	-	1	1	-
	동구	중구동구	-	3	-	-
	중구		-	-	-	-
	동래구	동래구	-	1	-	-
	부산진구	부산진구갑	-	2	2	-
		부산진구을	-	1	-	1
	사상구	사상구	-	2	1	1
	사하구	사하갑	-	1	-	-
		사하을	-	1	-	1
	서구	서구	-	1	-	1
수영구	수영구	-	2	-	1	
연제구	연제구	-	2	-	-	
영도구	영도구	1	1	-	1	
기장군	해운대기장갑	1	1	-	1	
해운대구	해운대기장을	-	4	-	-	
소계	18개	2	28	6	13	
대구 광역시	남구	중구남구	-	1	-	-
		중구	-	-	-	-
	달서구	달서갑	-	1	-	1
		달서을	-	1	-	-
	달성군	달서병	1	2	-	1
		달성군	-	-	-	-
	동구	동구갑	-	2	-	-
		동구을	-	2	-	-
북구	북구갑	-	1	-	-	

시도	구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북구을	1	1	-	-
		서구	1	1	-	-
	수성구	수성갑	1	2	-	1
		수성을	-	3	-	-
	소계	12개	4	17	0	3
대전 광역시	대덕구	대덕구	-	2	-	1
	동구	동구	-	1	-	2
	서구	서구갑	-	1	2	1
		서구을	-	1	1	1
	유성구	유성구	-	1	-	2
	중구	중구	-	1	-	1
	소계	6개	0	7	3	8
	광주 광역시	광산구	광산갑	-	-	-
광산을			-	-	1	2
동구		동구	-	-	-	2
남구		남구	-	-	1	1
북구		북구갑	-	-	-	2
		북구을	-	-	1	1
서구		서구갑	-	-	-	1
	서구을	-	-	1	-	
소계	8개	0	0	4	12	
인천 광역시	강화군	서구강화갑	1	1	-	1
	서구	서구강화을	-	-	-	-
	계양구	계양갑	-	-	1	-
		계양을	-	-	-	1
	남구	남구갑	-	1	-	-
		남구을	-	1	1	1
	남동구	남동갑	-	1	1	1
		남동을	-	1	-	-
	부평구	부평갑	-	1	-	1
	부평구	부평을	-	1	-	-
		연수구	연수구	-	1	-
	옹진군	중구동구옹 진	-	-	-	-
	중구		-	-	-	1

시도	구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동구		-	1	-	2
	소계	12개	1	9	3	10
울산 광역시	남구	남구갑	1	-	-	-
		남구을	-	1	-	-
	동구	동구	1	1	-	1
	북구	북구	-	-	-	1
	울주군	울주군	-	-	-	-
	중구	중구	-	2	-	-
	소계	6개	2	4	0	2
강원도	강릉시	강릉	1	-	1	-
	동해시	동해삼척	-	2	-	1
	삼척시		-	1	-	-
	속초시	속초고성양 양	-	1	-	-
	고성군		-	-	-	-
	양양군		-	1	-	-
	춘천시	춘천	2	3	-	2
	원주시	원주갑	-	2	1	1
		원주을	-	1	-	1
	철원군	철원화천양 구인제	-	-	-	-
	화천군		-	-	-	-
	양구군		-	2	1	-
	인제군		-	1	-	-
	태백시	태백영월평 창정선	-	1	-	1
	영월군		-	1	-	1
	평창군		-	-	-	-
	정선군		-	1	-	-
홍천군	홍천횡성	-	-	1	-	
횡성군		-	1	-	-	
소계	9개	3	18	4	7	
경기도	고양시	고양덕양갑	-	2	-	1
		고양덕양을	1	-	1	1
		고양일산동 구	-	1	1	2
		고양일산서 구	-	1	-	2
	과천시	과천의왕	-	3	-	1
	의왕시		-	-	-	1
광명시	광명갑	-	1	-	1	

구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광주시	광명읍	-	1	-	1
		광주	-	1	-	1
	구리시	구리	-	2	-	1
	군포시	군포	1	-	1	1
	김포시	김포	1	-	-	1
	남양주시	남양주갑	-	1	1	1
		남양주을	-	1	2	-
	부천시	부천원미갑	-	1	-	1
		부천원미을	-	2	-	2
		부천소사구	1	1	-	1
		부천오정구	-	1	-	1
	성남시	성남수정구	1	-	1	-
		성남중원구	1	1	1	-
		성남분당갑	-	1	1	-
		성남분당을	1	2	1	1
	수원시	수원갑	1	2	-	1
		수원을	-	1	-	2
		수원병	-	1	-	1
		수원정	-	2	1	1
	시흥시	시흥갑	-	1	-	2
		시흥을	-	1	-	1
	안산시	안산상록갑	-	-	1	-
		안산상록을	-	1	-	1
		안산단원갑	-	1	-	1
		안산단원을	-	1	1	1
	안성시	안성	-	1	-	1
	안양시	안양동안갑	-	1	-	1
		안양동안을	-	1	-	1
안양만안구		1	1	-	4	
양주시	양주동두천	-	-	-	-	
동두천시		-	1	1	-	
양평군	여주양평	-	1	-	-	

구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충청남도	여주시		-	1	-	-
	연천군	포천연천	-	1	-	-
	포천시		-	1	-	-
	오산시	오산	-	1	-	1
	용인시	용인갑	-	1	-	1
		용인을	1	2	-	2
		용인병	1	3	1	1
	의정부시	의정부갑	1	1	-	1
		의정부을	1	-	-	1
	이천시	이천	-	2	1	-
	파주시	파주갑	-	1	-	1
		파주을	-	1	1	-
	평택시	평택갑	-	1	1	-
		평택을	-	1	-	1
	하남시	하남	-	1	-	1
	화성시	화성갑	-	1	-	1
		화성을	-	2	-	1
	소계	52개	13	61	18	51
	공주시	공주	-	1	-	-
	부여군	부여청양	-	1	-	-
	청양군		-	2	-	-
	논산시	논산계룡금 산	-	-	-	-
	계룡시		-	1	-	1
	금산군		-	-	-	-
	당진시	당진	-	1	-	-
	보령시	보령서천	-	3	-	-
서천군	-		-	-	1	
서산시	서산태안	-	1	-	1	
태안군		-	1	-	-	
홍성군	홍성예산	-	-	-	1	
예산군		-	-	-	-	
아산시	아산	-	1	-	1	

구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천안시	천안갑	-	1	1	1
		천안을	1	1	-	1
	소계	10개	1	14	1	7
충청북도	괴산군	진천괴산증 평음성	-	-	-	1
	진천군		-	-	-	-
	증평군		-	1	-	1
	음성군		-	-	-	-
	제천시	제천단양	-	3	-	2
	단양군		-	1	-	1
	보은군	보은옥천영 동	-	1	-	1
	영동군		-	-	-	-
	옥천군		-	-	-	-
	청주시	청주상당구	1	-	-	-
		청주흥덕갑	1	-	-	1
		청주흥덕을	-	2	-	-
	청원군	청원군	-	1	-	-
	충주시	충주	-	2	-	3
	소계	8개	2	11	0	1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	-	1	-	1
	고성군	통영고성	-	-	-	-
			-	2	-	-
	김해시	김해갑	-	1	-	1
		김해을	1	1	1	-
	밀양시	밀양창녕	-	1	-	1
	창녕군		-	-	-	-
	사천시	사천남해하 동	-	1	-	-
	남해군		-	1	-	-
	하동군		-	2	-	-
	산청군	산청함양거 창	-	1	-	-
	함양군		-	-	-	-
	거창군		-	1	-	-
	의령군	의령함안합 천	-	1	-	-
	함안군		-	1	-	-
	합천군		-	-	-	-
	양산시	양산	-	1	1	-
진주시	진주갑	1	1	-	-	

구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창원시	진주을	-	2	-	-	
		창원의창구	1	-	-	-	
		창원성산구	1	1	-	-	
		창원마산합 포구	-	1	-	-	
		창원마산회 원구	-	1	-	-	
		창원진해구	-	1	-	-	
	소계	16개	4	22	2	3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청도	-	1	-	-	
	청도군		-	-	-	-	
	영천시	영천	1	1	-	-	
	경주시	경주	-	2	-	-	
	고령군	고령성주칠 곡	-	2	-	-	
			성주군	-	-	-	-
			칠곡군	-	-	-	-
	구미시	구미갑	-	1	-	1	
		구미을	-	1	-	1	
	상주시	상주	-	3	-	-	
	군위군	군위의성청 송	-	1	-	-	
	의성군		-	-	-	-	
	창송군		-	-	-	-	
	김천시	김천	-	1	-	-	
	영주시	영주	-	1	-	-	
	문경시	문경예천	-	1	-	-	
	예천군		-	1	-	-	
	안동시	안동	-	2	-	-	
	영덕군	영양영덕봉 화울진	-	-	-	-	
영양군	-		1	-	-		
봉화군	-		-	-	-		
울진군	-		2	-	-		
포항시	포항북구남 구	-	1	-	-		
울릉군	포항울릉	-	1	-	-		
	소계	15개	1	23	0	2	
세종특별	세종시	세종시	1	-	2	-	

구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자치시	소계	1개	1	0	2	0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보성	-	-	-	1	
	보성군		-	-	-	1	
	강진군	장흥강진영 암	-	-	-	2	
	장흥군		-	-	-	1	
	영암군		-	-	-	-	
	순천시	순천곡성	-	-	-	1	
	곡성군		-	-	-	-	
	광양시	광양구례	-	-	-	1	
	구례군		-	-	-	-	
	나주시	나주화순	-	-	-	1	
	화순군		-	-	-	-	
	담양군	담양함평영 광장성	-	-	-	-	
	함평군		-	-	-	2	
	영광군		-	-	-	-	
	장성군		-	-	-	-	
	목포시	목포	-	-	-	3	
	무안군	무안신안	-	-	-	-	
	신안군		-	-	-	-	
	해남군	해남완도진 도	-	-	-	1	
	완도군		-	-	-	1	
	진도군		-	-	-	-	
	여수시	여수갑	-	-	-	1	
		여수을	-	-	1	-	
		소계	11개	0	0	1	16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	-	-	-	1
		고창군	고창부안	-	-	-	1
		부안군		-	-	-	2
군산시		군산시	-	-	-	4	
김제시		김제완주	-	-	-	1	
완주군			-	-	-	1	
남원시		남원순창	-	-	-	2	
순창군			-	-	-	1	
무주군		진안무주장 수임실	-	-	-	-	
임실군			-	-	-	-	
진안군			-	-	-	-	
장수군			-	-	-	1	

구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익산시	익산갑	-	-	-	1
		익산을	-	-	-	2
	전주시	전주완산갑	-	-	-	1
		전주완산을	-	-	1	2
		전주덕진구	-	1	1	2
		소계	11개	0	1	2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제주갑	1	-	2	-
		제주을	1	-	1	-
	서귀포시	서귀포	2	-	1	-
		소계	3개	4	0	4

③ 제 7회

구분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전체			78	279	105	397
서울 특별시	강남구	강남갑	1	-	-	2
		강남을	-	1	-	2
		강남병	-	2	-	1
	강동구	강동갑	-	1	-	3
		강동을	-	-	1	2
	강북구	강북갑	-	1	-	1
		강북을	1	-	1	-
	강서구	강서갑	-	-	-	1
		강서을	-	1	-	2
		강서병	1	-	-	1
	관악구	관악갑	1	1	-	2
		관악을	1	4	1	2
	광진구	광진갑	-	-	1	1
		광진을	-	3	-	3
	구로구	구로갑	-	1	-	1
		구로을	-	2	-	1
	금천구	금천	-	1	-	1
	노원구	노원갑	1	-	2	2
		노원을	-	-	1	2
		노원병	-	1	1	1
	도봉구	도봉갑	-	1	-	1
		도봉을	-	2	-	2
	동대문구	동대문갑	-	2	-	1
		동대문을	1	1	-	2
	동작구	동작갑	-	1	1	2
		동작을	-	3	-	2
	마포구	마포갑	1	-	-	1
		마포을	-	1	-	2
	서대문구	서대문갑	-	1	-	2
		서대문을	1	1	1	-
	서초구	서초갑	-	1	2	2
		서초을	1	1	-	2
중구	중구	1	1	-	3	
성동구	성동갑	-	2	-	2	
	중구성동을	-	1	-	2	
성북구	성북갑	-	2	2	3	
	성북을	-	1	1	1	
송파구	송파갑	-	1	-	2	
	송파을	-	2	-	1	
	송파병	2	-	1	1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부산 광역시	양천구	양천갑	-	1	-	1
		양천을	-	1	-	2
	영등포구	영등포갑	-	1	-	3
		영등포을	-	1	-	1
	용산구	용산구	1	2	-	2
	은평구	은평갑	-	1	-	3
		은평을	-	-	1	2
	종로구	종로구	-	2	-	2
	중랑구	중랑갑	-	-	1	3
		중랑을	-	3	-	1
	소계	49개	14	56	18	85
	강서구	북구강서갑	-	-	-	1
	북구	북구강서을	-	4	1	3
	금정구	금정구	-	1	1	3
	남구	남구갑	1	-	-	1
		남구을	-	2	-	1
	중구	중구영도구	-	2	-	1
	영도구		-	-	-	-
동래구	동래구	-	2	-	1	
부산진구	부산진구갑	-	2	-	1	
	부산진구을	-	1	1	-	
사상구	사상구	-	1	-	1	
사하구	사하갑	-	2	1	1	
	사하을	-	1	-	1	
서구		-	-	-	2	
동구	서구동구	-	2	1	2	
수영구	수영구	-	1	1	1	
연제구	연제구	-	1	-	2	
기장군	기장	-	2	2	2	
해운대구	해운대갑	1	4	-	4	
	해운대을	-	-	-	1	
소계	18개	2	28	8	29	
대구 광역시	중구	중구남구	-	2	-	1
	남구		1	2	-	1
	달서구	달서갑	1	2	-	-
		달서을	1	-	-	2
		달서병	1	1	1	1
	달성군	달성군	-	-	-	-
	동구	동구갑	-	2	-	-
		동구을	-	1	-	3
	북구	북구갑	-	1	1	1
		북구을	-	2	2	1

시도	구분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서구	서구	-	1	-	-	
	수성구	수성갑	-	2	-	1	
		수성을	-	3	-	1	
	소계	12개	4	19	4	12	
대전 광역시	대덕구	대덕구	1	-	-	2	
	동구	동구	-	2	-	3	
		서구갑	-	2	2	2	
	서구	서구을	-	1	1	1	
		유성갑	-	1	-	2	
	유성구	유성을	1	-	-	2	
		중구	-	3	-	2	
	소계	7개	2	9	3	14	
광주 광역시	광산구	광산갑	-	-	-	1	
		광산을	-	-	1	2	
	동구	동구남구갑	-	-	1	3	
		동구남구을	-	-	-	1	
	남구	북구갑	-	-	1	2	
		북구을	-	-	1	1	
	서구	서구갑	-	-	1	-	
		서구을	-	-	-	2	
	소계	8개	0	0	6	13	
	인천 광역시	서구	서구갑	1	3	-	1
			서구을	-	-	-	1
		계양구	계양갑	-	1	-	1
계양을			-	-	-	1	
남구		남구갑	-	-	-	2	
		남구을	-	1	-	1	
남동구		남동갑	-	1	-	2	
		남동을	1	1	-	3	
부평구		부평갑	-	1	-	3	
		부평을	1	1	-	3	
연수구		연수갑	-	-	-	2	
		연수를	-	1	-	3	
용진군			-	1	-	-	
중구		중구·동구·강 화중신	1	-	-	2	
강화군			-	-	-	-	
동구	-		1	-	2		
소계	13개	4	12	0	27		
울산	남구	남구갑	1	1	2	-	

시도	구분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광역시		남구을	-	-	1	1
	동구	동구	1	1	2	-
		북구	-	1	-	1
	울주군	울주군	-	-	-	1
	중구	중구	-	1	1	1
	소계	6개	2	4	6	4
강원도	강릉시	강릉	1	-	-	1
	동해시	동해삼척	-	1	-	1
			-	1	-	-
	삼척시		-	-	-	1
	속초시	속초·고성·양양	-	-	-	1
	고성군		-	-	-	-
	양양군		-	-	-	-
	춘천시	춘천	1	2	2	5
	원주시	원주갑	-	1	-	1
		원주을	-	2	1	2
	홍천군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	-	-	-
			-	-	-	-
	철원군		-	1	-	-
	화천군		-	1	-	-
	양구군		-	1	-	-
	인제군		-	1	-	-
	태백시		-	1	-	1
	횡성군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	2	-	-
	영월군		-	1	1	1
평창군	-		-	-	-	
정선군	-		1	-	-	
소계	8개	2	15	4	14	
경기도	고양시	고양갑	1	2	1	2
		고양을	1	-	-	1
		고양병	-	1	1	3
		고양정	1	2	1	2
	의왕시	의왕·과천	1	-	-	3
			1	1	-	1
	광명시	광명갑	-	-	-	2
		광명을	-	-	-	1
	광주시	광주갑	1	1	-	2
		광주을	1	2	-	1
구리시	구리	-	2	-	2	
군포시	군포갑	1	1	1	1	
	군포을	1	-	1	-	

구분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김포시		김포갑	-	1	1	1
		김포을	-	1	-	1
남양주시		남양주갑	1	-	2	1
		남양주을	-	1	-	3
		남양주병	-	-	-	-
부천시		부천원미갑	-	1	-	2
		부천원미을	1	1	1	3
		부천소사구	1	-	1	2
		부천오정구	-	1	1	2
성남시		성남수정구	1	-	-	1
		성남중원구	-	1	-	1
		성남분당갑	-	1	-	1
		성남분당을	1	1	1	-
수원시		수원갑	2	-	1	1
		수원을	1	1	1	1
		수원병	-	1	-	1
		수원정	-	1	1	1
		수원무	-	1	-	3
시흥시		시흥갑	-	2	-	2
		시흥을	-	1	-	1
안산시		안산상록갑	1	-	1	-
		안산상록을	-	1	-	1
		안산단원갑	-	-	-	1
		안산단원을	-	-	1	1
안성시		안성	-	-	-	1
안양시		안양동안갑	-	1	1	1
		안양동안을	-	1	-	3
		안양만안구	-	1	-	3
양주시		양주	-	1	-	1
동두천시		동두천연천	1	1	-	1
연천군			-	3	-	1
여주시		여주양평	-	2	-	2
양평군			1	1	-	-
포천시		포천가평	-	-	-	1
가평군			-	-	-	-
오산시		오산	1	1	-	1
용인시		용인갑	-	2	-	2
		용인을	1	-	-	3
		용인병	2	1	-	1
		용인정	1	1	-	2
의정부시		의정부갑	-	1	1	1

구분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충청남도		의정부을	1	1	-	2		
		이천시	이천	-	-	-	2	
		파주시	파주갑	-	1	1	-	
			파주을	1	-	-	1	
		평택시	평택갑	1	-	-	1	
			평택을	1	1	2	1	
		하남시	하남	-	2	-	3	
		화성시	화성갑	-	1	1	2	
			화성을	-	2	-	2	
			화성병	1	-	1	-	
		소계	60개	30	54	24	90	
		공주시			-	1	-	1
		부여군	공주부여청 양		-	1	-	1
				청양군	-	2	1	1
논산시	-			1	-	2		
계룡시	논산계룡금 산	-	1	-	-			
금산군		-	1	-	-			
당진시	당진	-	2	-	2			
보령시	보령서천	-	4	-	1			
서천군		-	-	1	-			
서산시	서산태안	1	-	-	1			
태안군		-	1	-	-			
홍성군	홍성예산	-	1	1	-			
예산군		-	-	-	1			
아산시		아산갑	1	1	-	2		
		아산을	1	-	-	2		
		천안갑	-	1	1	2		
천안시		천안을	1	1	1	2		
		천안병	-	1	1	2		
소계	11개	4	19	6	20			
충청북도		증평군	-	1	-	-		
		진천군	-	2	-	-		
		음성군	-	-	-	-		
		제천시	-	2	-	1		
		단양군	-	1	-	-		
		보은군	1	-	1	-		
		영동군	-	-	-	-		
		옥천군	-	-	-	-		
		괴산군	-	1	1	-		
		청주시		청주상당구	-	-	1	1
청주서원구	1			1	1	2		
청주흥덕구				2	-	2		

구분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경상남도		청주청원구	1	1	-	-
	충주시	충주	-	2	-	4
	소계	8개	3	13	4	10
	거제시	거제	-	1	1	1
	고성군	통영고성	-	-	-	-
	통영시		-	3	-	1
	김해시	김해갑	-	1	-	1
		김해을	-	-	-	2
	밀양시		-	1	1	-
	의령군	밀양의령함 안장영	-	1	-	-
	함안군		-	1	-	-
	창녕군		-	-	-	1
	사천시	사천남해하 동	-	2	-	1
	남해군		-	1	-	-
	하동군		-	1	1	1
	산청군		-	-	-	1
	함양군	산청함양거 정합천	-	-	-	-
	거창군		-	1	-	-
	합천군		-	2	-	-
	양산시	양산갑		1		2
		양산을	1	-	-	1
	진주시	진주갑	1	2	-	3
		진주을	-	2	-	1
	창원시	창원의창구	1	1	1	1
		창원성산구	1		-	1
		창원마산합 포구	1	1	1	1
		창원마산회 원구	-	1	1	1
		창원진해구	-	1	-	1
	소계	16개	5	24	6	21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	-	3	-	-
	영천시	영천청도	-	1	-	-
	청도군		-	-	-	-
	경주시	경주	1	2	-	-
	고령군	고령성주칠 곡	-	-	-	-
	성주군		-	-	-	1
	칠곡군		-	1	-	-
	구미시	구미갑	-	1	1	1
		구미을	-	-	-	2
	상주시	상주군위의	1	3	-	-

구분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세종특별 자치시	군위군		-	1	-	-	
	의성군	성청송	-	-	1	-	
	청송군		-	1	-	-	
	김천시	김천	-	1	1	-	
	영주시	영주문경예 천	-	-	-	1	
	문경시		-	-	-	-	
	예천군		-	1	-	-	
	안동시	안동	-	2	-	1	
	영양군		-	1	-	-	
	영덕군	영양영덕봉 화울진	-	1	-	-	
	봉화군		-	2	-	-	
	울진군		-	1	-	-	
	포항시	포항북구	-	3	-	1	
		포항남구	-	1	-	-	
	울릉군	울릉군	-	-	-	-	
	소계	13개	2	26	3	7	
	세종시	세종시	세종시	2	-	2	-
		소계	1개	2	0	2	0
	전라남도	고흥군		-	-	-	1
		보성군	고흥보성장 흥강진	-	-	-	-
		장흥군		-	-	-	1
		강진군		-	-	-	2
		순천시	순천	-	-	-	5
광양시		광양곡성구 례	-	-	-	2	
곡성군			-	-	-	1	
구례군			-	-	-	1	
나주시		나주화순	-	-	-	1	
화순군			-	-	-	-	
담양군			-	-	-	1	
함평군		담양함평영 광장성	-	-	-	2	
영광군			-	-	-	-	
장성군			-	-	-	-	
목포시		목포	-	-	-	1	
영암군		영암무안신 안	-	-	-	-	
무안군			-	-	1	-	
신안군			-	-	-	-	
해남군		해남완도진 도	-	-	-	3	
완도군	-		-	-	1		
진도군	-		-	-	1		
여수시	여수갑	-	-	-	3		
	여수을	-	-	1	1		
소계	10개	0	0	2	27		

구분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시도	구·시·군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고창	-	-	-	2
	고창군		-	-	-	1
	군산시	군산시	-	-	-	2
	김제시	김제부안	-	-	-	1
	부안군		-	-	-	1
	남원시	남원임실순 창	-	-	-	2
	임실군		-	-	-	-
	순창군		-	-	-	2
	완주군	완주진안무 주장수	-	-	-	1
	진안군		-	-	-	1
	무주군		-	-	-	1
	장수군		-	-	1	-
	익산시	익산갑	-	-	-	1
		익산을	-	-	-	2
	전주시	전주갑	-	-	-	1
		전주을	-	-	1	5
전주병		-	-	1	1	
소계	10개	0	0	3	24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제주갑	1	-	2	-
		제주을	1	-	3	-
	서귀포시	서귀포	-	-	1	-
	소계	3개	2	0	6	0

일련번호_자료집 2021-9
발행부서_조직혁신정책국 성평등운동

04538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명동 1가) 4층
Tel. 02-774-9702~7 Fax. 02-774-9724
E-mail. koreaywca@ywca.or.kr